정책연구 2017_05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김 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정책연구 2017-05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김 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김　　면(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정 보 람(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한 건 수(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 준 호(경희대 지리학 석사)

서 문

오늘날 사회는 이주민의 증가, 고령화 저출산, 지역갈등, 청년실업, 국제결혼의 증가, 소득양극화, 예술의 독립성 등 여러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 가야할 많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글로벌 영역에서도 사회전반에 다원화되는 환경변화를 맞아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통하는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회 내 소수집단의 보호 및 증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문화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17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위원국으로 선출되어 국제사회에서 문화다양성정책에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강력히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양한 가치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되는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보다 인식하고 사회공존과 통합을 이끌어낼 문화다양성 정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문화다양성의 현황과 성과를 파악하고 기존의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면서, 한국사회의 구성원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시한 뜻있는 문화다양성 활성화 방안이 중앙부처는 물론 많은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과 다양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0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김 정 만**

연구개요

1. 서 론

가. 연구 배경

○ 이주민 200만 명시대가 도래하고 사회 내 인적구성이 다원화되고 국내외에서 개인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순혈주의와 집단문화의 단일한 가치를 강조해온 사회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

○ 문화다양성 정책이 주로 이주민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사업으로 운영되고 한국사회로의 문화적응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양한 소수자집단의 특성들을 수렴하지 못해왔기에, 우리사회 전반의 다양한 소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각전환이 요구됨

○ 문화다양성은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다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철폐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사회구성원 모두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공리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나. 연구 목적

○ 문화다양성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바, 현재의 정책내용을 파악하고 그 적절성을 평가하여 향후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과 실천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유네스코 정책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검토함

○ 정확한 현장분석을 위해 관련 각계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세부 사업의 발전전략과 방향을 제시함

다. 연구 범위

○ 중앙 11개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17개 관련사업을 파악함
-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률'제정이후 2017년 현재까지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을 주요연구범위로 설정함

○ 문화다양성 정책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를 만들어 내는 주요요인들로 민족, 국적, 성별, 신체능력(장애), 성적 지향, 세대 및 종교, 혼인, 소득, 전통, 지역, 예술취향에 따른 영역을 구분하여 검토함

○ 국외 사례조사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문화다양성의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라. 연구 방법

○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정책사업 중 문화다양성 추진 현황 및 성과를 분석 조사하고, 국외 문화다양성 사례분석을 통하여 성공요인 판별, 정책적 활용도를 고려한 시사점을 도출

○ 설문조사를 통해 광역시, 지자체 공무원 및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현황인식 파악 및 정책적 개선점을 도출함

○ 전문가 조사는 문화다양성의 추진체계, 사업운영평가, 다양성 정책 제도 개선방향 및 전략, 계획수립 시 부문별 정책 중요도 등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설문 및 의견을 수렴함

구 분	정책사업 내부 인식조사	외부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 공무원 및 사업 담당자 대상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 관련 전문가 심층 인터뷰
조사 내용	문화다양성 사업 기본 정보, 참가자 만족도 및 효과성 반영, 담당자 미션 및 기능 수행에 대한 인식, 발전 방향 의견 등	문화다양성 정책 기대 및 현황 파악, 만족도, 효과성, 향후 사업추진 의견, 정책수요, 발전정책안 의견 등

2. 국내외 정책 환경 분석

가. 한국사회의 환경변화와 특성

○ 한국사회는 국제이주와 변화된 사회 환경,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성적 지향에 대한 인권문제 대두, 젠더문제와 여권의식, 장애인과 평등한 사회문제, 연령차별문제와 세대갈등, 지역 전통문화의 위기와 같은 사회 환경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정책 실태 및 기본방향의 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문화다양성 확대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모색함

○ 다문화정책이 외국인 이주민, 결혼 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을 국내사회 내 새로운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동화정책에 초점이 맞춰진 것인 반면에, 문화다양성 정책은 사회 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문화가치들을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

나.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의미

○ 획일적 집단정체성에 묶여있는 관습에서 벗어나 사회 내 다양성을 인지하는 자세는 한국사회에 새로운 문화생태학적 풍성함의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기에, 시간변화와 사회 변동 속에 기존의 좁은 전통의 틀을 깨는 문화정책의 확장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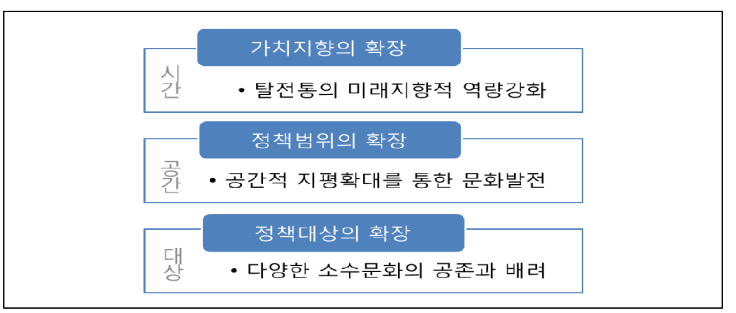

○ 문화다양성 정책은 정태적인 이념의 틀로부터 벗어나서 동시대 사회 환경조건 속에서 생성, 대체하고 끊임없이 지속하는 문화의 생산력을 주목하는 정책적 안목이 요구됨

다. 주요 국가별 정책 환경 분석

지역	환경 분석	정책 특성
독일	· 초청노동자, 독일실향민, 난민들의 이주민이 전체국민의 약20% · 동서독통일이후 내적통합정책 지원 · 혈통주의, 자민족 우선 vs 다문화정책 논쟁	· 연방 및 주정부 내 부처 간 협력과 재정투입을 통한 문화다양성 정책운영 · 구동독 연방지역의 문화통합을 위한 문화등대 운영 · BKM산하 세계문화의 집을 통한 국제문화교류활동
프랑스	· 미국주도 세계화와 문화 획일화에 맞선 '문화적 예외' 정책 제시 · 전통적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자 증대를 지향 문화부정책과 연계됨 · 유럽계와 아프리카계 주민갈등문제에 대응필요	· 문화통신부와 지역문화사업국(DRAC) - 문화다양성 장려, 문화향유자증대, 문화 창작지원 정책총괄 · 알리앙스 프랑세즈와 프랑스문화진흥원을 통한 국제교류 진행 ·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처(2006)-도시정책 및 이민자통합정책관련 재정문제 총괄
캐나다	· 다인종· 다민족 문화, 이민자에 대한 평등한 대우추구 · 공존과 조화를 기반 · 이주정책에서 다문화주의정책 선택 - 노동력 확보 - 유색인종 아시아계이민자 증가 - 영·불 이중언어정책	· 백인위주 동화정책에서 이민자 고유민족성과 다양성 인정 · 상호문화 교류증진정책 · 다문화사회의 모범국 · 연방정부의 확고한 정책방향제시와 기금지원 · 퀘벡 문화아젠다 21정책 · 시민단체의 문화다양성 활동
네덜란드	· 네덜란드식 다문화주의(서구인/비서구인 구분) · 80년대 다문화주의적 소수자 정책에서 이후 현재 동화주의로 선회 · 최초 동성결혼합법화(2001) · 국민90%이상 동성결혼찬성 및 성소수자친화성	· 진정한 다문화주의- 다양한 문화공존 속에서 서로의 다양성 인정 추구함 · 현재 정부는 공동의 언어와 가치를 갖는 시민공동체를 추구하고,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을 특별정책에서 일반정책으로 분류 · 성소수자 친화적 정책운영 · 동성부부권리, 성전환권리 합법화
스웨덴	· 1975년 의회 다원, 다문화사회통합법,정책 제정 · WEF 세계 성격차지수 최상위권 지위유지 · 1980~2006이주민 100만명 유입	· 극우 성향 특정 그룹(이슬람인, 유태인, 아프리카인, 집시 등) 적대 성향 퇴치 노력 · 1988년 양성평등기회진흥 5개년 계획수립으로 여성노동자 가치를 높임 · 보편주의 복지혜택모델 · 여성인력의 사회참여유도 및 '노동과 여가'의 균등 정책 추구 · 외국이주민에게 내국민과 동일한 복지혜택

3. 정책 현황분석

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 중앙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많은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기본권 신장', '국제문화교류', '가치확산',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개발', '정책추진체계 구축' 순으로 정책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지자체 조사결과, 부산시가 가장 많은 사업을 진행하였고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울산시 순이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문화기본권 신장 사업이 가장 많이 추진되었고, 대상별로 청소년 대상 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 다문화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았던 반면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업은 18건, 성소수자 대상 사업은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나. 관련 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인식조사

항 목	설문 내용
목적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대상	지역별 관련 공무원 및 무지개다리사업 담당자
기간	2017년 7월 1일~9월 15일
내용	문화다양성 사업 평가 및 추진방향 •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인식 (3문항) • 기존 정책 · 사업 평가 (13문항) • 향후 정책 · 사업 추진방향 (7문항)
방법	이메일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	55명

○ 문화다양성 관련 공무원 및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사업 현황 및 기초정보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정책관련 인식, 기존 정책사업의 정합성, 정책연계성, 실효성 및 향후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였음

○ 특이사항으로 특정소수자에 대한 편중 없는 정책에 대해 결혼여성 혹은 다문화가정, 이주민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사업추진조직과 담당자의 적절한 구성 및 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34%)이 많았고, 사업 추진 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련해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정책추진의 어려움 및 담당고정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자체 예산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다. 전문가 설문조사

항 목	내 용
목적	문화다양성 정책방안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수집
대상	문화다양성 정책관련 전문가
기간	2017년 7월 1일~7월 31일
내용	문화다양성 정책 목적 및 추진체계, 사업운영평가, 향후 개발 전략, 문화다양성 실행과제
방법	방문 및 이메일 조사
응답자	41명

○ 문화정책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의 목적 및 추진체계, 사업운영평가, 개발전략, 실행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특이사항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의 장애 요인에 “현 국내의 수용성 수준과 문화다양성 정책 간 간극”(88%)을 꼽았고,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단기간 내 사업성과 요구”(32%)를 답했음. 문화다양성 가치 중 집중해야할 분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이해도 증진”(46%)를 답했고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한 설문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적 활동”(37%)을 선택했음

라. 전문가 심층 면접조사

○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의 운영현황, 개선측면, 문화다양성 효과, 문화다양성 발전전략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음

항 목	내 용
목적	문화다양성정책 현황조사 및 향후 추진안 자문
대상	정책관련전문가(교수,정책연구원,문화기획가,공무원,현장전문가)
기간	2017년 3월 18일~9월 15일
내용	문화다양성 평가 및 향후 발전정책안 논의
방법	심층 인터뷰 및 자문회의 (7차)
응답자	28명

○ 강조된 내용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제고를 통해 국민과의 공감을 얻는 정책방향, 유사사업진행, 잦은 인사이동과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획일적인 정책 대신에 참여 지향의 정책 모색 필요성, 각 부처 간 협업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이 언급되었고, 기존 다문화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음

4. 정책 활성화 방안

가.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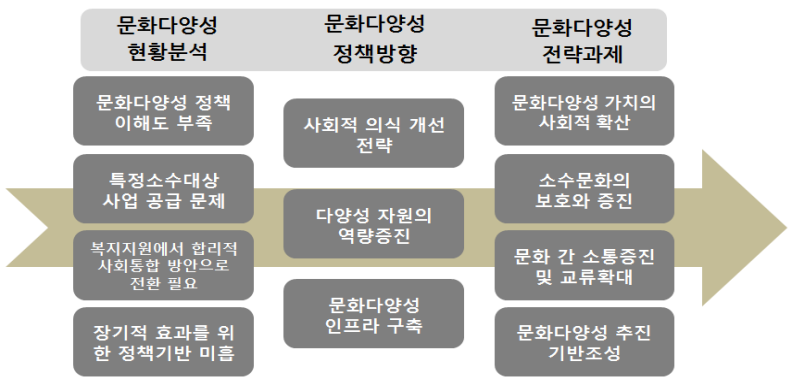

나. 문화다양성 정책 단계별 실행방안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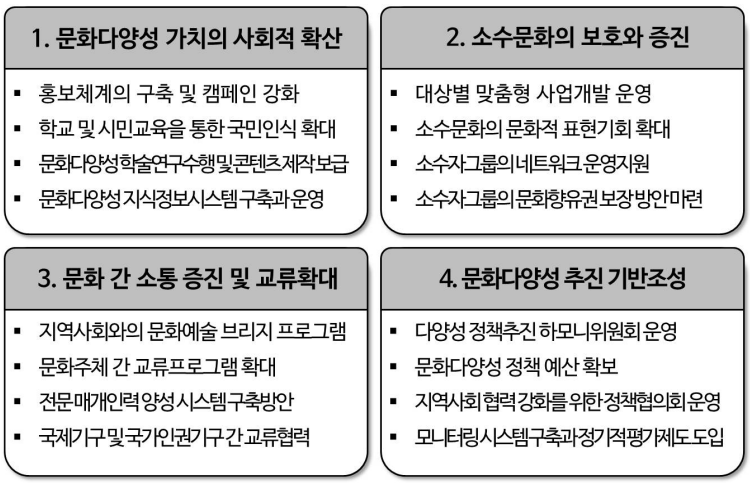

○ 문화다양성 가치의 사회적 확산

- 홍보체계의 구축 및 캠페인 강화
- 학교 및 시민교육을 통한 국민인식 확대
- 문화다양성 학술연구수행 및 콘텐츠제작보급
- 문화다양성 지식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 소수문화의 보호와 증진

- 대상별 맞춤형 사업개발 운영
- 소수문화의 문화적 표현기회 확대
- 소수자 그룹의 네트워크 운영지원
- 소수자그룹의 문화향유권 보장 방안 마련

○ 문화 간 소통 증진 및 교류확대

- 지역사회와의 문화예술 브리지 프로그램
- 문화주체 간 교류프로그램 확대
- 전문매개인력 양성시스템 구축방안
- 국제기구 및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 문화다양성 추진 기반조성
- 다양성정책추진 하모니위원회 운영
- 문화다양성 정책예산 확보
- 지역사회협력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정기적 평가제도 도입

5. 결론

○ 본 연구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이후 국내 정책의 방향과 문화다양성 현황, 사업의 성격에 대해 조사하였고, 향후 보다나은 문화 간 이질감 해소와 문화통합의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내재되어있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편견과 배타적 태도를 돌아보고 우리와 다소 다른 이들의 문화고유성을 인정하고 이를 사회 내 풍부한 문화적 자산으로 존중하기 위한 기존 인식의 틀을 확장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은 문화적 경계선을 지니고 있으며 불안정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에, 열린 문화다양성 정책을 통해서 문화적 간극과 정서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제안코자 하였음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 배경 ····· 3
2. 연구목적 ·····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8
1. 연구범위 ····· 8
2. 연구내용 ····· 10
3. 연구방법 ····· 11

제2장 국내외 정책환경 분석 ····· 13

제1절 한국사회의 환경변화와 특성 ····· 15
1. 한국사회의 다원화 현상 ····· 15
2. 다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정책 ····· 25

제2절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의미 ····· 32
1. 소수자 문제의 쟁점과 과제 ····· 32
2. 문화다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 ····· 35

제3절 문화다양성 관련 국제환경 분석 ····· 43
1. 문화다양성 개념의 발전과 확산:
유네스코와 소수자 문화권 운동 ····· 44
2.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문화다양성 협약 ····· 46
3.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의 의무 규정 ····· 47

제4절 주요 국가별 정책 현황분석 ····· 49
1. 국외 주요국 정책종합분석 ····· 49
2. 정책적 함의 ····· 65

제3장 정책 현황분석 ····· 69

제1절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전개과정 ····· 71
1. 문화다양성 정책의 유형 ····· 72
2.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요 특징 및 변화 ····· 73

제2절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 82
1.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정책 ····· 82
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정책 ····· 86
3. 문화다양성 사업의 성과와 진단 ····· 89

제3절 관련 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인식조사 ····· 95
1. 문화다양성 정책운영 평가 ····· 95
2. 사업 및 프로그램 담당자 분석 ····· 111
3. 의견종합과 시사점 ····· 112

제4절 전문가 의견조사 ····· 117
1. 설문조사 ····· 117
2. 심층인터뷰(FGI) ····· 132
3. 의견종합과 시사점 ····· 138

제4장 정책 활성화 방안 ····· 145

제1절 분석결과의 종합 ····· 147

제2절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 148
1. 사회적 의식개선 ····· 149
2. 다양성자원의 역량증진 ····· 150
3. 제도적 기반마련 ····· 151

제3절 문화다양성 정책 단계별 실행 방안 구상 ····· 152
1. 문화다양성 가치의 사회적 확산 ····· 153
2. 소수문화의 보호와 증진 ····· 159
3. 문화 간 소통 증진 및 교류 확대 ····· 163
4. 문화다양성 추진 기반조성 ····· 169

제5장 결론 ····· 175

참고문헌 ····· 180

ABSTRACT ····· 187

부록 ····· 189

표 목차

〈표 1-1〉 문화다양성 정책연구 수행 ····· 6
〈표 1-2〉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의견조사 계획 ····· 12
〈표 2-1〉 2016년 외국인주민 현황 ····· 15
〈표 2-2〉 한국의 다문화적 태도 수준: 세계가치관조사 분석결과 ····· 16
〈표 2-3〉 북한이탈주민 포용 정도 통계조사 ····· 16
〈표 2-4〉 성소수자, 출처: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지침서 ····· 17
〈표 2-5〉 2016 성격차지수(GGI) ····· 19
〈표 2-6〉 별 시간당 임금총액 ····· 19
〈표 2-7〉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 21
〈표 2-8〉 2012년과 2014년 지역문화 종합지수 평균 ····· 24
〈표 2-9〉 인종적 다문화정책과 사회적 다문화정책 비교 ····· 26
〈표 2-10〉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 34
〈표 2-11〉 문화다양성 분류체계(Dimensions of Cultural Diversity) 및 내용구성 ····· 42
〈표 2-12〉 독일 정책사례 ····· 53
〈표 2-13〉 프랑스 정책사례 ····· 56
〈표 2-14〉 캐나다 다문화정책의 시기별 변화 ····· 58
〈표 2-15〉 캐나다 정책사례 ····· 60
〈표 2-16〉 네덜란드 정책사례 ····· 62
〈표 2-17〉 스웨덴 정책사례 ····· 65
〈표 3-1〉 국내 문화다양성 법률과 유네스코 협약에서 문화다양성 정의 ····· 71
〈표 3-2〉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 발전 국면 ····· 73
〈표 3-3〉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유 ····· 75
〈표 3-4〉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교(1차, 2차) ····· 76
〈표 3-5〉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78
〈표 3-6〉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법적근거 정비 내용 ····· 80
〈표 3-7〉 2016년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 82
〈표 3-8〉 중앙부처 문화기본권 신장 유형 정책 사업 수 ····· 85
〈표 3-9〉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 86
〈표 3-10〉 문화다양성 담당자들의 상이한 사업 분류 ····· 89
〈표 3-11〉 지방자치단체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유사 사례 ····· 92

〈표 3-12〉 전라남도 문화다양성 신규사업 수(3년 이내) ····· 93
〈표 3-13〉 2016년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자료에 따른
문화다양성 정책 예산 현황 ····· 93
〈표 3-14〉 문화다양성 설문조사 개요 ····· 95
〈표 3-15〉 기존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 105
〈표 3-16〉 설문응답자별 담당 기관(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112
〈표 3-17〉 문화다양성 설문조사 개요 ····· 117
〈표 3-18〉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과 목표 ····· 119
〈표 3-19〉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의 적합도와 중요 집단 ····· 121
〈표 3-20〉 문화다양성 장애요인의 문제 정도 ····· 124
〈표 3-21〉 전문가 자문조사 개요 ····· 133
〈표 3-22〉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 133
〈표 3-23〉 무지개다리 사업 성과추이 ····· 138
〈표 4-1〉 문화다양성 문제점 진단과 정책 개선방향 ····· 147
〈표 4-2〉 독일사례: 이주민을 위한 협의회 ····· 154
〈표 4-3〉 문화다양성법 제13조 ····· 155
〈표 4-4〉 문화다양성법 제14조 ····· 166
〈표 4-5〉 문화다양성법 제10조 ····· 168
〈표 4-6〉 문화다양성법 제7조 ····· 169
〈표 4-7〉 문화다양성 하모니타워의 협력체계 ····· 170
〈표 4-8〉 문화다양성법 제8조 ····· 173

그림 목차

[그림 1-1] 문화다양성 정책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10
[그림 2-1] 등록 장애인 추이 ····· 20
[그림 2-2] 향후 한국사회 세대갈등 전망 ····· 22
[그림 2-3] 균형잡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 30
[그림 2-4] 문화다양성 정책대상의 범주 ····· 31
[그림 2-5] 문화다양성 정책의 확장 ····· 41
[그림 2-6] 외국 태생 캐나다 이주민들의 인구 수 및 비율 ····· 57
[그림 3-1]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과정 ····· 81
[그림 3-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수
(2015년과 2016년 비교) ····· 83
[그림 3-3] 지방자치단체 문화기본권 신장사업 ····· 87
[그림 3-4] 서울특별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사업 성격에 따른 분류 ····· 88
[그림 3-5] (중요성)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 96
[그림 3-6] (가능성) 문화다양성 정책적 ····· 96
[그림 3-7] (차별성) 현재의 문화다양성 정책과 기존 다문화 정책
차이의 인지도 ····· 97
[그림 3-8] (목표) 각 사업 및 프로그램 ····· 98
[그림 3-9] (가능성) 문화다양성 정책적 ····· 98
[그림 3-10] (균형) 특정 소수자에 대한 ····· 99
[그림 3-11] (체계) 사업 추진조직과 ····· 99
[그림 3-12] (주체)사업 추진기관(혹은 조직) ····· 100
[그림 3-13] (사업)개별 사업끼리 긴밀하게 ····· 100
[그림 3-14] (계획)각각의 사업이 중장기 ····· 102
[그림 3-15] (예산)지속가능한 사업 ····· 102
[그림 3-16] (이해)사업 추진 결과 ····· 103
[그림 3-17] (소통)사업 추진 결과 ····· 103
[그림 3-18] (인식)사업 추진 결과 문화다양성 ····· 104
[그림 3-19] (활동)사업 추진 결과 ····· 104
[그림 3-20] (가치)국내 차별과 배제의 대상 ····· 106
[그림 3-21] (현실)문화다양성 사업이 부족한 대상 ····· 106
[그림 3-22] (가치)문화다양성 가치 구현을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 ·· 107

[그림 3-23] (현실)기존의 문화다양성 사업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야 ····· 108
[그림 3-24] 기존의 문화다양성 정책 및 사업이 지닌 문제점 ····· 108
[그림 3-25] 국내 문화다양성 수준 및 관련 정책의 가치에 대한 응답 ····· 118
[그림 3-26] 문화다양성 정책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응답 ····· 120
[그림 3-27]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주력해야할 중요 집단 ····· 121
[그림 3-28]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에 따른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 ···· 122
[그림 3-29]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역할 ····· 123
[그림 3-30]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이슈 ····· 124
[그림 3-31] 현장에서 문화다양성사업 추진 시 가장 큰 어려움 ····· 125
[그림 3-32] 다문화 사업과 문화다양성 사업의 향후 관계 ····· 126
[그림 3-33] 한국사회가 문화다양성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 ····· 128
[그림 3-34]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인식확대를 위한 필요한 활동 ····· 129
[그림 3-35] 문화다양성 가치확산을 위해 가장 주력해야 할 전략 ····· 129
[그림 3-36] 소수자의 사회적 영향력 증진을 위한 필요 사항 ····· 130
[그림 3-37]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 131
[그림 3-38]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화다양성 인프라 ····· 131
[그림 3-39] 문화다양성 정책의 궁극적 목표 ····· 139
[그림 3-40]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 대상 집단 ····· 140
[그림 3-41]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 ····· 141
[그림 4-1]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방향 ····· 148
[그림 4-2]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 152
[그림 4-3] 문화다양성 정책대상 분류체계 개선(안) ····· 160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확산의 필요성 대두

우리사회는 오랫동안 순수혈통과 단일민족을 고집하여 왔다. 글로벌화 진전과 함께 국가 간 인력이동 증대로 외국인 이주자와 결혼 이민자가 급증하였고,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새로운 변화를 초래했다. 이주민 200만 명시대가 도래하고 사회 내 인적구성이 다원화됨으로 인해 다문화사회로의 진행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에 비해 사회적으로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이 향상되어 예전보다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소수자들이 권위주의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억압되어왔던 개인적 취향 및 문화의 내적 욕구를 표출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소수문화에 대해 새로운 문화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기존 우리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집단은 강력한 문화적 동질화의 압력에 의해 차별을 받기도 하고 주변화 되는 문제점을 보여 왔다. 국내외에서 개인의 문화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순혈주의와 집단문화의 단일한 가치를 강조해온 사회의 패러다임은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고, 문화다양성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여 보다 열린사회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들을 모색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이주민 복지정책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권리 증진 정책으로 확대

현재 문화다양성 관련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여성 가족 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자부 등 10여개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로 국내에 들어온 이주민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다문화사업이 대부분이었다. 여러 정책사업이 제공되고 있으나, 세부 프로그램들은 방향성 측면에서 한국사회로의 문화적응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소수자집단의 특성들을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하여 소수자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되는 바, 향후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다양한 소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시각전환이 요구된다.

문화다양성정책은 출신국가, 인종 및 민족에 의한 사회적 갈등만이 아니라, 사회 내 세대, 젠더, 성적 지향, 종교, 혼인, 소득, 지역, 전통, 예술 취향으로 범주를 확장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통합방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수자는 신체적 혹은 문화적 특징으로 주류사회로부터 불평등한 차별을 받으며 그들만의 집단의식을 가지게 되는 그룹을 의미한다. 과거 권위주의적 행정운영과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사회는 소수자를 배려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 국가의 문화정책에서도 소수자의 문화 권리는 주요 대상이 아니었다.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의 소수자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려웠으며 오히려 이들 존재에 대해 편견과 차별이 재생산되기도 했다. 이제 우리사회는 문화다양성정책에 대한 이념적 지향점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다양한 구성원의 창조성 발현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틀 마련

문화다양성 정책은 특정집단만을 분리하여 배려하는 지원 사업을 지양해야 한다. 소수자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전체 사회구성원으로서 문제라는 인식의 확산과, 사회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적 역량을 표출할 수 있도록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이 지닌 문화적 특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자세는 소수자들의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사회풍토를 만들기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 안에서 소수자 집단들이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낯선 문화에 대해 열린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류 문화로 획일화하거나 독점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치들이 차별되지 않고 존중되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정책은 문화 간 갈등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소수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열린 환경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문화자산의 발전에 토대가 되는 것이다.

문화다양성은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다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철폐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사회구성원 모두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공리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정체성사이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자연스럽게 타문화를 이해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것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인류공동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표 1-1〉 문화다양성 정책연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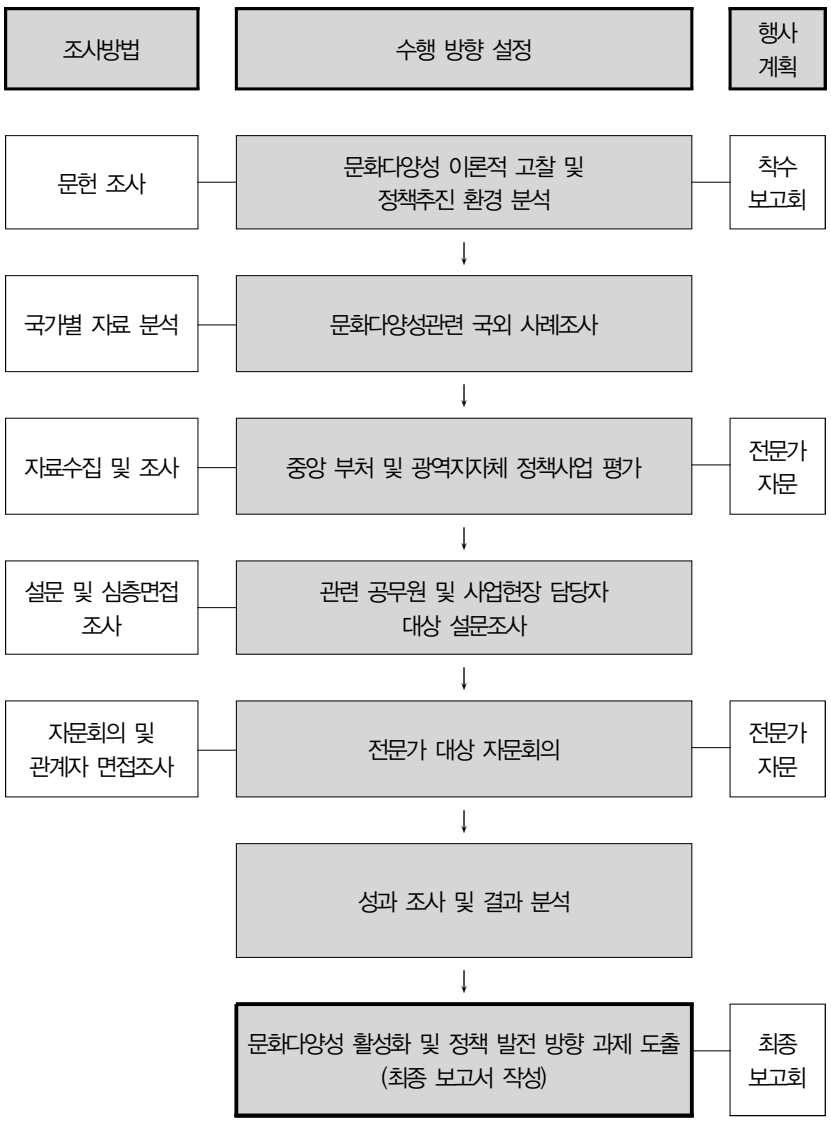

2. 연구목적

2014년 5월 국내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후 제9조에 따라 본격적으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바, 현재의 정책내용을 파악하고 그 적절성을 평가하여 향후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과 실천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 문화다양성 정책은 외국인이주민의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책방향도 이주민 지원정책에 집중되어온 측면이 강하였다. 다원화되는 사회현상 추이에 맞추어 실증적인 진단을 기초로 문화다양성 정책 개념 및 범위를 재정립하고, 정책의 목적과 역할, 대상을 분명히 설정하며 정책방향을 새로이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7년 6월 제6차 유네스코 협약 당사국 총회 정부간 위원회에서 2017~21년까지 위원국으로 선출되었고, 국제사회 아시아 태평양 그룹을 대표하여 문화다양성 증진정책에서 선도적인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유네스코 정책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여, 주요국가의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적 상황 및 특징을 파악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확한 현장분석을 위해 관련 공무원 및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인식을 조사하고, 학계, 국책기관 연구원, 문화기획자 등의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실천적인 문화다양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실증적인 진단을 기초로 국내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세부 사업의 발전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범위

가.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중앙부처 내 문화다양성 관련 담당사업 및 정책현황을 수집 · 분석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부처를 대상으로 관련 정책 자료를 수집하고 문화다양성 관련 업무에서 세부사업, 단위사업 및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추진 실태를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의 경우, 광역지자체인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을 포함한 17개 지역별로 수행 혹은 지원되는 개별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문화다양성 현황을 조사하였다.

외국사례의 경우 독일,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등 문화다양성의 성공적인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외 사례고찰을 통해 의미 있는 선례와 경험을 참고하여 사업경쟁력을 위한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내의 적용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이를 통해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효과와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나. 시간적 범위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률'제정 및 시행이후 2017년도 현재 까지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을 주요한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문화다양성 협약이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2005년부터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기간은 글로벌 환경 분석

및 일련의 국내정책 전개의 흐름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고자 하였다.

다. 내용적 범위

기존 문화다양성 관련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 각 부처별로 수행 혹은 지원되는 개별 사업의 현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중심으로 기타부처 및 소속 산하기관의 전달체계, 단위산업의 개별적 업무를 고찰하였다. 특히 한국사회 내 소수문화제반 영역에 걸쳐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넓히는 정책업무들을 포괄적으로 대상화하여 정책현황과 운영양상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화다양성 정책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를 만들어 내는 주요요인들 즉, 민족, 국적, 성별, 신체능력(장애), 성적 지향, 세대와, 그 외 종교, 혼인, 전통, 지역, 예술취향에 따른 영역을 구분하여 문화다양성의 연구내용을 검토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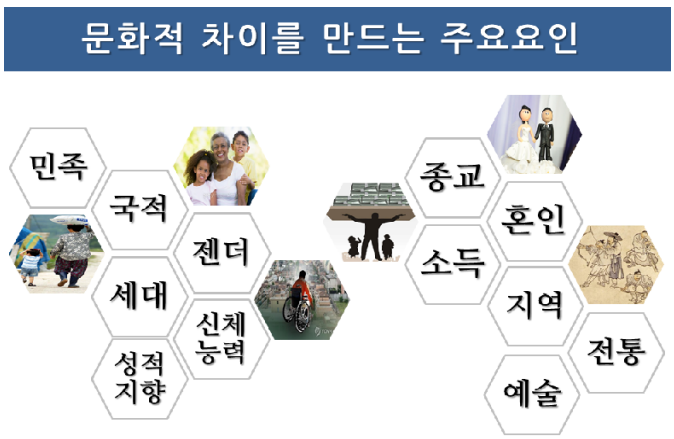

2. 연구내용

첫째, 국내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정책 추진환경 분석 및 정책 동향을 조사하였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국제사회 문제의식을 분석하고 최근 국내외 정책운영 추세를 살펴보았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문화다양성의 현황과 수준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둘째, 중앙정부 부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문화다양성 사업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에 맞는 문화다양성 정책방향과 세부사업안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셋째, 국외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근거로 국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수립에 있어 기초토대가 되는 구체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넷째,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공무원 및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내부 인식을 조사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및 FGI를 통해 정책현황을 분석하여 필요 전략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책 시사점 도출하고자 했다.

[그림 1-1] 문화다양성 정책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롯한 국내외 관련 정책 · 연구보고서, 선행된 이론 및 통계·DB등 분석 자료를 참조하였다.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정책사업 중 문화다양성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조사 정리하며,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하였다. 국외 문화다양성 사례분석을 통하여 성공요인 판별, 문화다양성의 강약점 파악 및 정책적 활용도를 고려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 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정책 인식조사

구조화된 설문지조사를 통해 광역시, 지자체 공무원 및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사업현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조사내용은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체계, 업무 분장에 관한 실태파악, 문제 진단, 정책사업의 적절성 등 인식도를 진단할 수 있는 문항을 포함하여 업무수행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의견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문화다양성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문화정책 인지도, 현장프로그램, 관리 운영실태, 네트워크 협력체계, 수탁기관 지원정책 만족도, 향후 개선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다. 전문가 설문조사, 심층인터뷰조사 및 자문회의

설문조사는 문화다양성의 추진체계, 사업운영평가, 다양성 정책 제도 개선방향 및 전략, 계획수립 시 부문별 정책 중요도 등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심층면접(FGI) 및 자문조사에서는 문화다양성 관련학계 인사 및 교수, 관련학회 회원, 연구기관 업무 담당자, 문화기획사 관계자, 관련 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설문 및 의견조사에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문화다양성 현황인식 및 정책적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표 1-2〉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의견조사 계획

구 분	정책사업 내부 인식조사	외부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대상	관련 공무원 및 사업 담당관계자	문화정책 분야 전문가
조사인원	55명	41명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 공무원 및 사업 담당자 대상	•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 관련 전문가 심층 인터뷰
조사내용	문화다양성 사업 기본 정보, 참가자 만족도 및 효과성 반영, 담당자 미션 및 기능 수행에 대한 인식, 발전 방향 의견 등	문화다양성 정책 기대 및 현황 파악, 만족도, 효과성, 향후 사업추진 의견, 정책수요, 발전정책안 의견 등
조사기간	2017. 7. 1 ~ 9. 15	2017. 3. 18 ~ 9. 15
조사설계 및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팀	

제2장

국내외 정책환경 분석

제1절

한국사회의 환경변화와 특성

1. 한국사회의 다원화 현상

가. 국제 이주와 변화된 사회 환경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연평균 14.4%가 증가하여 171만 명을 기록하였고, 통일적인 단일문화에서 다양한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이주자 비율은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유학생 순으로 높으며, 결혼이민자는 2004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로 전체결혼의 1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2-1〉 2016년 외국인주민 현황

국적미취득자(1,363,712명, 79.7%)					국적취득자 (149,751명, 8.8%)		자녀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의 미성년 자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 타 (기업투자, 취재 등)	혼인귀화	기 타 (일반귀화, 입양 등)	
573,378명 (33.5%)	144,912명 (8.5%)	82,181명 (4.8%)	216,213명 (12.6%)	347,028명 (20.3%)	93,249명 (5.4%)	56,502명 (3.3%)	197,550명 (11.5%)

자료: 행정안전부(2017),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정보통계담당관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현실적인 문제에 기인하기 보다는 막연한 차별과 편견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한국사회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의견에 76%가 동의하고 있다. (2010 여성가족부 조사) 세계가치관조사 6차 데이터(2010-2014)에서 타인종의 이웃 거부감은 59개국 중 51위, 외국인 근로자의 이웃거부감은 59개국 중 54위, 타 언어 사용자에

대한 거부감은 60위중 56위를 기록하고 있다.

〈표 2-2〉 한국의 다문화적 태도 수준: 세계가치관조사 분석결과

조사내용	전체 평균	한국	순위
1. 다른 인종의 이웃에 대한 거부감	.19	.34	51/59
2. 외국인 근로자/이민자 이웃에 대한 거부감	.25	.44	54/59
3.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웃에 대한 거부감	.17	.33	56/60

자료: WORLD VALUES SURVEY Wave 6(2010-2014) (www.worldvaluessurvey.org)

나.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2017년 3월까지 북한이탈주민은 3만490명에 이르고 있다. 2005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였고, 2012년 이후 연간 약 1,500명으로 입국인원이 감소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418명이 입국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혈연적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체제로 인한 생활양식과 문화의 차이로 남한사회에서 이질적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표 2-3〉 북한이탈주민 포용 정도 통계조사

구분(1)	구분(2)	2016				
		① 받아들일 수 없음 (%)	② 나의 이웃이 되는 것 (%)	③ 나의 직장 동료가 되는 것(%)	④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	⑤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
2014년	2014년	15.2	44.2	22.2	14.9	3.5
2015년	2015년	12.7	39.5	24.8	18.5	4.5
2016년	2016년	12.1	40.8	30.5	14.0	2.5

자로: 사회조사센터(2016),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북한이탈주민 포용정도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웃으로서 받아들인다는 응답률이 10명중 4명을 약간 웃도는 값으로 측정되었으며,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거리감은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쌓인

편견과 차별경험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교육에 관한 필요성은 있지만 교육의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2016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응답자의 45.4%는 남한에서 출신 때문에 차별당한 적이 있으며, 인권침해와 차별을 가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 이라는 답변이 20.6%로 가장 많았고 '직장 상사' (17.9%), '직장 동료' (16.5%) 순이었음. 하지만 응답자의 27.7%는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해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음

윤인진(2016)[1]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남 또는 남에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0년에 28.4%에서 2015년에는 32.9%로 증가하였고, 한국국민 또는 한국 국민에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70.6%에서 67.1%로 감소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편견을 극복하는 사회인식 확산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권과 관용에 대한 개방적, 수용적인 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다. 성(性)적 지향에 대한 인권문제 대두

전세계 LGBT 활동가들은 '어느 국가에나 약 3~5%의 성소수자가 존재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 약 150만~250만 명 사이의 국내 성소수자가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2]

〈표 2-4〉 성소수자, 출처: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지침서

용 어	의 미
레즈비언	여성동성애자를 말함
게이	남성동성애자를 지칭하는 말
바이섹슈얼	특정한 성별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적 취향을 지닌 양성애자를 뜻함

1) 윤인진(2016),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인식의 지형과 변화", 『디아스포라연구』 제10권 제1호, p.144,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2) 한국일보(2017.05.03), "대선 토론회 '동성애'이슈 후폭풍"

용 어	의 미
트랜스젠더	자기가 타고난 육체적 성과 스스로 인식하는 성이 다른 사람. 성전환수술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여성/남성이라 생각함
퀴어	성적소수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1989년 미국에서 퀴어네이션이라는 급진적 단체가 결성되면서부터 사용한 용어
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
호모	19세기중반 이후 동성애를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병리학적 용어. 호모섹슈얼의 줄임말로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의미
이반	한국동성애자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로 성적 소수자를 포괄하는 말. 일반적인 이성애로 구별하여 이반이라 부르는 데서 유래
커밍아웃	동성애자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밝히는 것을 말하는 것
아웃팅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자신이 성적 소수자임이 밝혀지는 것

여러 사회적 소수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차별과 편견에 직면하고 있어 '소수자 중의 소수자'에 해당하며, 전통적인 사회의 일탈자로서 취급되며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해왔다. 동성애자들은 주류문화에 의해 병적이고 일탈적이고 범죄적이라고 규정되어 영원한 아웃사이더와 같은 소수집단으로 여겨져 왔다.[3)]

【2015 아산정책연구원 조사】
성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9.6%로 조사대상 중 가장 낮았다. 여성, 노인,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63.1%, 54%, 52.5%로 절반을 넘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였다.

유엔인권사무소(UN Human Rights Office)는 전세계가 국제인권법을 따라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양성애자들을 고문, 차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하며,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인권문제로 규정하고 그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명시하였다.

성소수자들의 일상적인 차별과 폭력의 경험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도 나타나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중 약 10%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관하여

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문화다양성교육매뉴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p.69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와 이해, 수용과 공존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좀 더 공평하고 보편적인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노력과 태도가 필요하다.

라. 젠더문제와 여권(女權)의식

국내에서 양성평등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들에 따르면[4] 한국은 여전히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다. 교육, 고용, 임금, 소득의 영역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례들이 여전히 나타난다.

〈표 2-5〉 2016 성격차지수(GGI)

연도	순위	점수	경제참여 및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부여
2016	**116/144**	**0.649**	**0.537(123위)**	**0.964(102위)**	**0.973(76위)**	**0.120(92위)**
2015	115/145	0.651	0.557(125위)	0.965(102위)	0.973(79위)	0.107(101위)
2014	117/142	0.640	0.512(124위)	0.965(103위)	0.973(74위)	0.112(93위)

자료: 세계경제포럼(WEF)(2016), 「세계 성격차지수(GGI) 보고서」

〈표 2-6〉 별 시간당 임금총액

(단위: 원, %)

구 분	전 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16,709	18,212	12,067	(66.3)
남성	19,476 [100.0]	20,008 [100.0]	14,189 [100.0]	(68.2)
여성	12,573 [64.6]	13,719 [65.9]	10,008 [70.5]	(72.9)

* [ ]는 남성대비 수준,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자료: 고용노동부(2017), 201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분석

실제 평균임금과 관련하여 남성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전체는 64.6%, 정규직은 65.9%, 비정규직은 70.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일부 지표 산정에 사용된 통계가 우리나라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2016년 10월 여성가족부는 성격차지수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함. 예를 들어, 중등학교 취학률 2013년 기준 통계 활용, 2008년도 기준 문해율 통계 등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여성지위를 보여주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으나, 남녀 격차에 따른 성평등 수준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자료로 인용함

빈곤의 여성화는 낮은 노동시장 참여율,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 및 차별임금, 자녀양육 및 가사책임으로 인한 이중제약, 여성의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와 사회보장에서의 불평등한 지위에 의해 구조화되고 있다. 가족의 해체 이후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과 일,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인하여 여성가구주의 빈곤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으로 표출된다. 여성가구주의 항상빈곤율은 36%를 상회하므로 여성가구주의 3분 1이상이 항구적인 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 장애인과 평등한 사회 문제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016년 기준으로 약 251만 명으로 총인구대비 4.9%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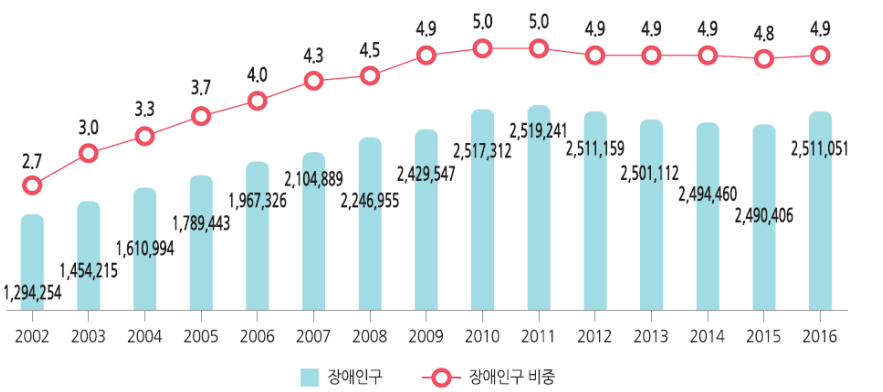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7), 「한 눈에 보는 2017 장애인통계」, p.4

[그림 2-1] 등록 장애인 추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0여 년 동안 인권위에 진정된 총 23,419건의 차별사건에서 '장애차별'은 46.9%로 가장 높게 기록되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차별 진정사건은 '장애차별'이 10,993건이었으며, 성희롱(2,188건), 사회적 신분(1,904건), 나이(10,993건), 성별(739건), 학벌/학력(584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사회제도와 조건들이 비장애인들 중심으로 구조화되어있기 때문에 제도적 혜택으로부터 배제되고 동정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다. 사회에서 의존적이거나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정체성을 지닌 동등한 사회의 권리주체로 평가돼야 함에도,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 의료, 교육 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다.

〈표 2-7〉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단위: %)

	계	전혀없음	별로없음	조금심함	매우심함
2013년	100.0	2.9	30.6	51.3	15.2
2015년	100.0	2.7	31.5	51.9	13.9
장애인	100.0	4.7	32.8	48.6	13.8
비장애인	100.0	2.6	31.4	52.0	13.9

자료: 통계청(2015), 『2015 사회조사결과』

문화다양성의 시각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받고 생활하고 자립적으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장애인을 의존적인 존재,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로만 묘사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바. 연령차별문제(Ageism)과 세대갈등

2017년 8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7,257,2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10년 전인 2008년 507만 명에 비해 약 220만 명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세대갈등 또한 증가되고 있다.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편견은 노인에 대한 차별과 거부감으로 이어지며, 소통부재의 고립감, 일자리에서의 제외, 무시하는 태도, 타인과의 교재부족 등을 겪게 된다.

또한, 한국의 노인들은 노후생활을 위해서가 아닌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빈곤 상황으로 1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67.1%로 나타난다. 55~79세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1.2%로 지난해에 비해 0.2%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바, 특히 생활비 마련을 장래 취업 이유로 든 이들은 2014년에는 54.0%, 2015년 57.0%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여전히 생계비 등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자는 증거에 기초하지 않은 수많은 편견과 싸워야 했는데, 이러한 근거없는 믿음은 고용기회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개혁 노력을 훼손시키고 고령자친화적 고용관행 조성을 저해하고 있다. "고령자 일자리가 더 적어질수록 청년들 일자리가 더 많아진다"는 주장은 발견되지 않았고, "일하는 능력이 나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악화된다"는 주장은 OECD 연구에서 지지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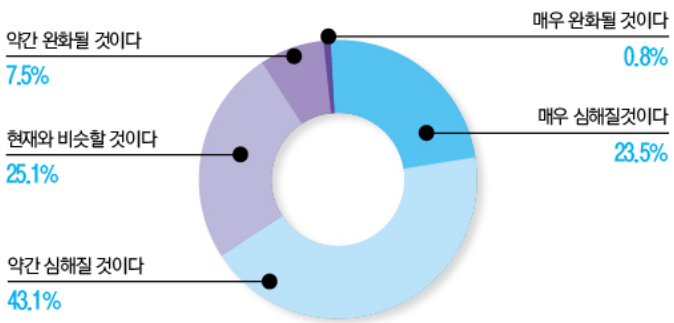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청소년의 세대문제인식 실태조사』

[그림 2-2] 향후 한국사회 세대갈등 전망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1%가 우리 사회에서 세대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대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지역갈등(57.6%)이나 다문화갈등(71.9%)이 심각하다고 답한 청소년의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5] 향후 한국사회 세대갈등 전망에서도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청소년의 세대문제인식 실태조사』

‘매우 심해질 것이다’(23.5%), ‘약간 심해질 것이다’(43.1%)로 절반 이상이 세대갈등이 더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고도의 압축성장으로 인해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변하여 세대 사이의 사회경험의 차이가 매우 크기에, 세대에 따라 경험과 환경이 크게 다르면 다른 경험과 환경에 영향을 받아 사고, 취향, 행동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두되는 노령화의 문제와 청년 세대의 고용불안문제는 세대 간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를 가속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다. 문화다양성 정책은 세대 간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거나 축소시키고 서로의 문화가 가진 다양성과 창조성을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줌으로써 세대 간 문화적 차이의 이해와 갈등 해소에 근본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 지역·전통문화의 위기

전통문화, 지방문화는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후 지역문화정책의 증가에 따라 지역의 고유문화를 발굴하고 전승하는 등의 사업들이 활발해졌다. 전통문화가 지닌 미래적 가치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지만 여전히 전승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 전통문화의 보호 및 증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통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전통문화산업의 침체 원인을 ‘사회적 요구와 개인 욕구의 간극’, ‘가격중심의 소비 양극화’, ‘특정 계층 의존형 소비구조’, ‘가수요와 실수요 간의 큰 간극’ 등으로 응답했다.

실제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는 2012년 기준 조사 대비 완화되었지만, ‘수도권(0.140) 〉 비수도권(-0.057)’로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문화격차의 해소를 위해 지역 문화예술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표 2-8〉 2012년과 2014년 지역문화 종합지수 평균

(단위: 억 원, %)

연도	수도권비수도권 종합지수		도농별 종합지수		
	수도권	비수도권	도시	도농통합	농촌
2012	0.140	-0.057	0.414	0.134	-0.116
2014	0.028	-0.011	0.187	0.098	-0.04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분석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책임: 노영순), p.154

- 1000년이 넘는 오랜 원형을 간직한 '제주 목축문화'는 제주인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중산간에서는 밭농업과 함께 삶을 영위하는 근간이 돼 왔음
- 하지만 국내 축산업 시장 개방, 목축업의 현대화, 말 사육자들의 고령화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사양화의 길을 걷게 되는 동시에 관련된 문화도 함께 소멸할 위기에 처해있음

자료: 제민일보(2015.05.18.), "천년 이어온 제주목축문화 전승 '우리 세대의 의무'", 한라일보(2014.09.18.), "제주 목축문화 소멸위기 보존 필요"

민속놀이의 경우, 1989년 자료 기준 200여 종이지만 일부는 민속놀이의 원형 전승이 중단되고 소멸하고 있다.[6] 민속놀이는 농경문화를 토대로 형성된 것이 다수이므로 도시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소멸과 쇠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역·전통문화는 각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화자산으로 원형 활용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 뿐 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6) 경남일보(2017.02.08.), "민속놀이 원형 지키고 현대적 발전 꾀해야"

지역 문화예술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되어야 한다.

2. 다문화정책과 문화다양성정책

본 장에서는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정책 실태 및 기본방향의 현황을 검토하여 향후 문화다양성 확대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 다문화정책의 의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문화정책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 바 없는 상황에서 여러 방식의 개념정의가 시도되어왔다. '다문화주의'는 사전적 의미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다문화주의의 목표는 공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동질화를 유도하지 않는 다문화사회이다. 여러 인종그룹이나 문화그룹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각 소수집단의 성원들은 상호 간 이해, 존중, 관용을 보이고 서로 동등한 권리를 배려할 수 있는 기본원리에 전형을 보여준다."[7] 또 다른 개념정의는 "여성문화, 소수파문화, 비서양문화 등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의 주변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을 이르는 말"로 설명한다.(두산백과사전)

1) 다양한 개념 정의

■ 협의의 다문화정책: 국내에 상이한 인종 또는 민족이 유입된 결과로

7) Ziel des Multikulturalismus ist die multikulturelle Gesellschaft, in der es keinen staatlichen oder auch nichtstaatlichen Anreiz oder "Druck" zur Assimilation geben soll. Die ethnischen und kulturellen Gruppen sollen hingegen einzeln existieren. Dabei beruht dieses Modell auf dem Postulat, dass die (Angehörigen der) jeweiligen Ethnien sich gegenseitig Verständnis, Respekt, Toleranz entgegenbringen und einander als gleichberechtigt ansehen können. (출처) 위키피디아 https://de.wikipedia.org/wiki/Multikulturalismus

서 문화적 다양성이 발생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며, 일반적으로 다문화정책이 이민정책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8)]

■ 광의의 다문화정책: 사회에는 민족, 성별, 장애, 세대, 종교, 지역, 전통, 예술 등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며, 일명 사회적 다문화정책으로 불린다.

〈표 2-9〉 인종적 다문화정책과 사회적 다문화정책 비교

구분	인종적 다문화정책	사회적 다문화정책
분석범위	좁은 의미의 다문화정책	넓은 의미의 다문화정책
분석단위	개인, 집단	지역사회, 국가
분석수준	미시수준, 중위수준	거시수준
다문화현상 원인	상이한 인종 또는 민족의 유입	사회속성
주요 정책대상	외국출신 이주민	소수자 집단
주요 정책관점	복지, 평등, 인권	문화적 차이의 존중 및 긍정
국내 관련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자료: 차용호(2015),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p.53.

국내에서 다문화정책을 논의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해외 이주민 유입에 따라 발생한 다문화현상에 초점을 두고, 이주민 문화 유입에 대응하는 협의의 다문화정책에 대해 논의되어왔다. 결혼이주배우자, 외국국적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문화권에서 유입된 소수자들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한다. 반면에, 광의의 다문화정책은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자들(장애, 소수인종, 동성애자, 여성 등)이 표출하는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포함한 보호와 증진정책을 의미한다고 구분한다.[9)]

2) 개념의 모호성

서구와 비교할 때 한국 다문화사회는 역사가 매우 짧으며, 2006년부터

8) 참조, 차용호(2015),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p.52.
9) 참조, 김효정(2012),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 방안, 문화관광연구원, p.36.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다문화'를 앞세운 정책을 결혼이주민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였고, 국내에서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는 이주민의 한국사회의 적응 및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정책 유형을 지칭하였으며, 이민정책, 외국인정책과 명확한 개념규정 없이 혼용되어왔다. 일반인들은 일상에서 이민정책이나 외국인정책보다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를 보다 많이 사용하였다. 국내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족정책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법률적 정의, 정부부처 간 개념정의가 달라[10] 정책추진 대상이 모호하거나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정책의 대상은 전체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재외동포와 난민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실제 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이주자에 치중하는 편이며, 국내 문화다양성의 소수그룹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각 정책의 방향, 성격이 구분되지 못하고, 관리 지원에서도 정책상 혼선을 가져오게 한다.

오늘날 국내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자집단들은 각기 문화적 특성을 발현시키며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정책이 내포하는 의미성은 국내로 이주한 사회집단과 함께 그동안 소외되고 억압되어왔던 다양한 소수자그룹들을 대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회주체로서 이들을 포괄하는 문화다양성 정책방안이 진전되어야 한다고 본다.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인지 또는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와 국적법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한다. 이 경우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이 배제된다. 최근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국제결혼, 이중문화가정, 혼혈인가족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는 법무부 경우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 행정자치부는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정책대상 범위도 조금씩 다르다.

나. 국내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1) 정책대상과 성격의 문제

국내 다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 위주의 다문화 가족 정책,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인력정책을 주요한 대상으로 역할을 나누어 시행하였다. 각 부서와 정책 간 낮은 연계성은 정책적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하였다. 또한 국내 다문화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관점에서 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오늘날 상호문화주의에 기반 한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국민 중심의 동화주의적 시각에 의해서 이들의 한국 내 사회정착과 문화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국내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으로 하여금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사회로 융합하기를 유도한다. 이들의 아이덴티티를 인정하며 이주민의 동등한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거나 다른 문화를 공존시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은 주류사회의 담론이자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다문화프로그램 성격을 분석한 전경옥의 연구[11]에 의하면 분석대상 프로그램 2750개 중 동화프로그램이 54.4%, 한국문화체험 16.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12] 여전히 다문화이해내지 공존보다는 이주자들의 한국화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2) 민족문화의 서열화와 담론의 폐쇄성

외국이주민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자신의 문화권리를 누리지 못했고, 한국사회에 흡수되지 못한 채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의 2012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언어

11) 전경옥외(2013)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12) 김현숙(2017), 한국의 다문화공존인가? 배제인가?, 문화예술지식DB 문화돋보기 49호, p.6.

(21%), 경제적 어려움(20%), 외로움(14%), 편견과 차별(7%) 등의 순으로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의 28만 명의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중 41.3%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였다.[13] 결혼이민자들의 상당수가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 출신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새로운 사회구성원이 되었지만, 주류사회로 진입이 쉽지 않고 배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차별경험자로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파키스탄 출신이 50%이상 인데 비해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 출신은 30% 이하로 드러난다.[14]한국인의 태도는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을 자의적인 잣대로 평가하고 서열화하기도 한다. 선진국 출신자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후진국 출신 외국인에게는 우월감을 누리고, 민족문화 간 상하관계를 조장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나 시민사회 모두에서 다분히 서열화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면서 외국인 이주민 문제를 출신국가에 따라 차등적으로 바라보도록 한 부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가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려면 국가 및 민족 간 관계에서 위계적 구조를 이루지 않고, 각 국가의 문화권을 존중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는 다양성이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3) 다문화정책에서 문화다양성정책으로

제도권에서 다문화사회의 담론을 촉발시킨 정책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으로 2006년 4월『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된다. 2007년 5월 법무부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고, 2008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는『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다문화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초기 외국인이주민에 대한 문화적

13) 오재호(2015), 다문화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이슈&진단 No.209, p.9.
14) 같은 글, p.10.

지원을 실시했으며, 2009년부터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사업'을 지원하면서 본격적으로 다문화사회 문화교류 및 소통을 강화하였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일반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다문화정책이 유입된 외국인 이주민, 결혼 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을 한국사회 내 새로운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동화정책에 초점을 맞춰진 것인 반면에, 문화다양성 정책은 사회 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문화가치들을 서로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문화다양성은 문화 간 다양성에 중심을 두었던 기존의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였던 문화의 내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증진하는 노력을 취한다.[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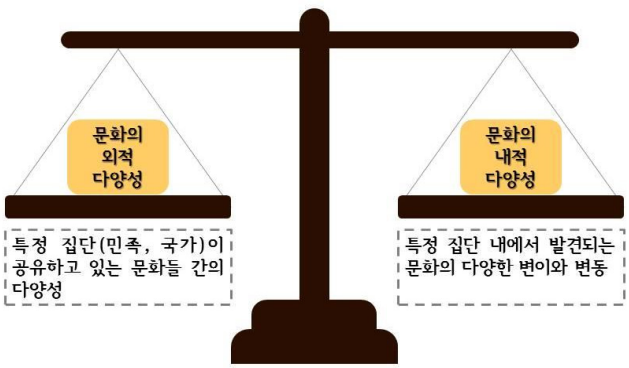

[그림 2-3] 균형잡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문화다양성 정책은 소수자의 문화권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 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이며 서로의 타자성을 인정하는 상호이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16]

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개발을 위한 지침서, 요약본, p.35.
16) 한건수 외(2015),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p.79.

다.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제영역

문화다양성 정책은 주로 다문화이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왔기에, 민족이나 인종과 같은 다문화지표 항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문화다양성은 낯선 소수문화에 국한시켜 온 시혜적 다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사회 내부 속에서 젠더, 장애, 세대, 종교, 계급의 차이를 아우르는 문화정책으로 대상을 확장시켜왔다. 구성원의 생활양식에 따라서 종교, 혼인, 소득, 지역, 전통 및 예술 취향으로 파생된 다양한 문화적 갈등을 극복하며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2-4] 문화다양성 정책대상의 범주

문화다양성 정책은 우리사회에 내재되어있는 이질적 문화의 권리증진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건강한 공존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폐쇄성을 제거하고 관용과 다름을 용인하며 수용하는 개방적 환경은 모든 구성원들이 열린 사고 하에 활동할 수 있고 한국문화를 풍부하고 역동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미래성장 동력인 창의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2절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의미

1. 소수자 문제의 쟁점과 과제

가. 사회의 다원화 문제와 문화적 공존

우리사회는 시민사회가 확장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성격도 매우 다원화되어왔다. 이전에도 사회 내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은 일부 존재했었고 사람들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강력한 단일성에 대한 사회적 압박은 다양한 양식의 이질성을 쉽게 용인하지 않았다.

헌법전문은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명시하였고,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듯이, 우리사회는 민족에 기반 하는 집단정체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지난 역사에서도 민족주의가 크게 영향을 미쳐 왔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한민족을 통합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는 해방의 무기로 작용했다. 당시 민족성은 일본에 맞서는 저항으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고 강력한 연대감정을 고취하고자 하는 가장 효과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역할을 하였다. 민족주의를 토대로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리’라는 공동체 집단의식은 다른 가치와 지향, 정서를 가진 개별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억압하였고 단일성을 계속 강화시켜 왔다. 하나의 집단정체성과 동일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과대한 평가는 소수자의 문화에 대해 내부적으로 일탈적인 문화라는 편견을 갖게 하였다.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을 전제하였고 상이한 문화나 낯선 취향을 가진 개인은 집단 속에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 버렸다.

최근에도 한국사회는 단일한 가치와 도덕적 질서를 강요하고 상이한 문화특성을 가진 사람을 부적합한 것으로 구분하거나 배제하려 한다. 사람과 사람, 집단과 집단 사이의 차이를 무시하고 개인에게 정형화된 통일성을 강요하는 태도는 적대감과 차별만을 양산할 뿐이다. 문화일원론적 사고체계를 벗어나 다양성을 수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 정책은 불평등과 억압, 차별과 배제에 대해 사회적으로 대응해야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감과 배려의 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다중적 정체성과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진 다양한 주체를 인지하고 서로의 타자성을 인정할 때 동질화의 폭력을 벗어나 평화적인 소통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 국내 소수자문제와 사회적 약자의 분류

이제 국내 소수자의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수자들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들에게서 차별을 받아왔다.[17] 한국사회에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수자 집단들은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소수자는 통상 다수 사회구성원들에 비하여 수적으로 작은 범주를 지닌다.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로 "큰 사회 안에서 문화적·민족적·인종적으로 구별되는 특수집단. 한 사회 안에서 지배집단에 종속해 있는 집단을 가리키며 그 규모보다는 종속성이라는 성격이 소수집단"(브리태니커 온라인사전)으로 규정하듯이, 남아프리카에서 흑인은 다수이지만 소수자이며,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수가 많지만 여전히 소수자로 분류된다.

소수자는 민족,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세대, 장애와 같은 선천적 요인에 의한, 즉 태생적 성격을 갖는다. 반면 사회적 약자는 종교, 혼인, 소득,

17) Feagin(1984)은 소수자의 특징으로 ①차별과 종속의 경험, ②신체적 혹은 문화적 특징으로 분리, ③집단정체성, ④소수자를 구분짓는 사회적 규율, ⑤그룹 내 혼인경향을 꼽았다. https://en.wikipedia.org/wiki/Minority_group

전통, 지역, 예술취향 등 그 특성이 후천적 요인에 의해 스스로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표 2-10〉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항 목	성격과 특징	사회적 범주 유형
소수자	영구성, 특수성, 집단의식, 선천성	민족,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세대, 장애
사회적 약자	한시적 요소, 환경요인, 이탈가능성, 선택성	종교, 소득, 혼인, 지역, 전통, 예술

예를 들어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이나 일시적인 신체의 부상은 사회적 약자일 뿐 소수자는 아니다. 반면에 성적 지향, 성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는 개인에 따라 차별받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반면에 소수자는 자신들의 의지에 따른다고 해도 사회적 소수자 위치를 변화시킬 수 없다.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은 그들의 노력여하에 상관없이 소수자의 지위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소수자는 반복적인 차별적인 관행으로 받기에 구성원들 간 같은 집단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집단 내에서 교류를 한정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사회적 약자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가지며 집단에 속한다는 의식은 있으나 결속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18]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온 소수자에 대한 정책은 사회다수자의 의견을 넘어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인권과 정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를 보여주기에, 문화적 공존을 실천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18) 한건수 외(2015),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p.239.

2. 문화다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

가. 한국문화의 변화와 정체성 문제

현재 한국사회변화의 특징은 국외로 이주한 이산 한민족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내부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소수자들이 과거와 달리 점차 자신의 문제들을 사회 주요 이슈로 제기하며 정책적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기존 우리 사회담론은 공동체 질서를 강조하면서 다른 문화적 양식을 가진 소수집단의 문화표현을 억압하여 왔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소수자의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과거 사회의 단일성에 집중하여 소수자에 대한 문화영역은 물론 인권, 고용, 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적 대책이 미흡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해가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출신 성원들의 민족적 또는 문화적 특징이 점차 관찰되었고, 소수자들이 표현하는 새로운 문화현상에 대하여 주목하는 시선의 전환이 점차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의 문화는 과거 전통적 양식이 전승되는 모습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여 생성된 특유의 문화양식도 한국문화의 구성요소로 포함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은 과거의 정적인 대상이 아닌, 동적인 대상에 대해 새로운 답을 요구한다. 한국문화는 시간과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고정된 문화요소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 내에 문화적 이질성이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가 사회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되는 것처럼, 잔존하는 문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양한 구성원 간의 문화소통과정으로 인식하여 볼 때이다.

따라서 새로운 한국 문화를 지향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다양한 성향으로 갈라진 문화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할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는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이주민, 결혼 이주자,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며 어떻게 기존 문화와 접촉하며 오늘날 어떠한 양식을 이루었는지, 그 사례를 고찰하면서 미래 한국 문화로의 통합 방안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아야 한다.

둘째로 국내에서 문화적 특징 때문에 사회로부터 차별 받는 소수집단들에 대하여 이들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현대사회에 적합한 우리문화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화접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요소를 깊이 있게 고찰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향후 어떻게 새로운 한국의 문화로 나아가야 할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 새로운 한국문화의 창출

해방 이후 권위주의 통치방식의 틀 속에서 산업개발과 성과 이데올로기에 익숙해진 한국사회는 소수자를 배려할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신체적 차이, 문화적 차이, 소득의 차이, 권력의 차이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차별로 이어졌고 사회에서 정책차별이 공공연히 진행됐다.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다민족, 다국적 및 다원화된 문화로 전통사회는 해체되었고 이는 일상의 흐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와 다른 이질적인 사회구성원과 상이한 생활문화와 마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해 구성원 간 갈등의 증폭이나 국민국가의 약화를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를 접하게 되기도 한다. 크라머(D. Kramer)교수는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자세의 형성을 강조한다.

“첫째, 문화다양성은 보편적이며 불가결한 원칙이다. 평화를 이루는 역량은 다양성을 축소시킴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다. 둘째, 한 영토 내

문화다양성은 역사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것이다. 문화와 분리되어 있는 정치권력 혹은 경제적인 측면의 목적을 위해 문화적 특수성이 악용되지 않으면, 다양성은 보다 용이하게 대처되고 전쟁을 부르는 갈등 없이 살 수 있다. 셋째, 세계적으로 보면 문화다양성은 평화를 위한 기회를 향상시킬 수 있다. 문화다양성은 미래역량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미 있는 자원이기 때문이다."[19]

사회 내 구성원들은 다양하고 차별적인 문화양식을 표출하고 있다. 다수 구성원과 다른 집단에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고 타자화하는 대신 다양하게 분화된 문화들에 진정성 있는 소통과 열린 자세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다소 다른 문화양식은 사회의 건강한 창조력을 보여준다. 소수자에게 문화적 동화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대신에 새로운 문화창조의 동력이 생성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다.

획일적 집단정체성에 묶여있는 관습에서 벗어나 사회 내 다양성을 인지하는 자세는 한국사회에 새로운 문화생태학적 풍성함의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이슈로 제기되는 소수자 문제에 대하여 그에 부응하는 정책적 대책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간변화와 사회변동 속에 동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문화의 흐름을 연구하는 질적인 변화가 선택되어야 하며, 기존의 좁은 전통의 틀을 깨는 정책의 확장성이 요구된다.

다. 문화공동체와 문화다원성의 확장

변화된 현실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차이를 인식하고 소수자들의 다른 존재양식을 인정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문화다양성 정책

19) Dieter Kramer(1999), Kulturelle Vielfalt ist eine notwendige Struktur menschlicher Vergemeinschaftung, *Osnabrücker Jahrbuch Frieden und Wissenschaft VI*, p. 143.

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공동체가 현대 환경에서 각 구성원들의 문화창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 가치지향의 확장

세계화 확대, 양극화 심화, 세대 간, 집단 간 문화적 차이가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소수자를 양산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해가는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우리의 정치행정은 소수자운동에 대하여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20] 우리 사회가 과거의 문화원형을 유지하는 공통문화에만 집중하기보다 현대 환경에서 어떠한 형태 변화와 새로운 의미를 갖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방법론에 있어서 과거를 기준점으로 소수자의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문화양식이 어떠한 질적 변화를 겪어 왔고 지금도 변화가 지속되는지 문화양식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과거문화의 원형에 무게중심을 두고 이를 기준으로 낯선 소수자의 문화를 재단하는 일은 생산적이라 할 수 없으며, 변화하면서 적응하는 가운데 새로운 한국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다.

한국문화는 역사적 전통성을 지니면서 현실적응력을 발휘하는 전승문화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문화자산으로서 내일을 설계하는 열린 문화이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창조적 설계는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인 사회주체로서 한국문화의 창조적인 역량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가능한 것이다. 개인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가진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념, 가치, 사고의 측면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

20) 전영평 외, 한국의 소수자 정책 담론과 사례, 서울대출판문화원, p.1-2.

2) 정책범위의 확장

국내체류외국인이 2017년 기준 180만 명을 넘었으며, 이중 장기체류 등록 외국인도 150만 명을 초과해 총인구의 3%에 이르고 있다. 정부수립 이후 2007년까지 외국인 106만 명 시대가 약 60년이 소요되었던 반면에 2014년 179만 명이 되는데 불과 7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까지 한국거주 외국인이 300만 명까지 예상하고 있어 총 전체인구의 8% 수준으로, 주요국의 비율과 비슷할 전망이다.[21)]

한국의 민족주의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시작되어 고유한 민족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적, 배타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었다. 우리사회는 이후에도 강력한 민족이데올로기와 순수한 단일혈통을 토대로 민족고유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한민족의 문화는 더 이상 자폐적인 민족주의를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문화 간 접촉과 교류가 심화되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필요할 때이다.

현재 낯선 이주민들이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 유입되고 이국적 인 문화요소들이 전통적인 한국식 문화정체성에 추가되어 새로운 문화형성에 공헌하며 우리문화를 풍부하게 발전시켜가고 있다. 한국 사회는 비교문화적 관점을 발전시켜 새로운 구성원들의 문화적 실체를 인정하고 타문화권의 다양한 정체성에 열려져 있어야 한다.

특히 국내로 유입된 이주민 중 상당수는 혈연적으로 중국,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로 떠나 가야했던 한인 동포의 후속세대이다. 이들은 한 세기 전 한반도를 떠나 타지에서 흩어지고 각자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탈냉전 이후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정착과정에서 조상의 고향은 낯선 곳이 되었고 이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처럼 생소하게 느껴지는 아픔을 겪고 있다. 이들의 낯선 문화양식과 상이한 생활취향은

21) 자료: 머니투데이(2016.01.04.), "2020년 이민자 300만 시대...'이민'개념도 아직 없다"

사회의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로 이주해 온 조선족, 고려인, 재일조선인에 대해서 재외한인들의 사회적 취향과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공통된 미래를 함께 지향하는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문화정책의 범주를 한반도에 제한할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국경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시각을 갖춰서 문화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정책대상의 확장

다원화시대를 맞아 한국 사회 안에서 여러 방식으로 살아가는 소수자들에 대한 배타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을 중요시하며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소수자의 문화는 주류문화에서 소외되고 일탈적인 문화로 취급되어왔지만, 사회는 이질성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통합문제는 다양한 소수집단이 많아서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 있다. 전통질서와 단일한 집단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에 일정한 의미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창조력과 풍요로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민속학자 비겔만 교수는 "문화시스템과 환경"이론을 통하여 민중문화를 사회 내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에 있는 하나의 체계(Systeme)로 보는 시각을 제시하였다.[22] 그는 루만(N. Luhmann)의 시스템 이론을 도입하였다. 사회 내 다양한 요소들의 유입은 단지 요소들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문화요소들 사이에서 상호문화접변을 일으키고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문화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문화정책은 정태적인 이념의 틀로부터 벗어나서 동시대 사회 조건 속

22) Günter Wiegelmann(1991), *Theoretische Konzepte der europäischen Ethnologie; Diskussionen um Regeln und Modelle,* Münster, p. 70.

에서 문화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게 생성, 대체하고 끊임없이 지속하는 문화의 생산력을 주목하는 정책적 안목이 요구되는 것이다.

문화다양성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수용하고 문화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차이를 만드는 주요요인으로 민족,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세대 같은 사회문화적 범주와 함께 종교, 소득, 혼인, 전통, 지역, 예술취향에 따른 다양한 소수자의 특성을 대상으로 문화정책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보다 제고시키는 정책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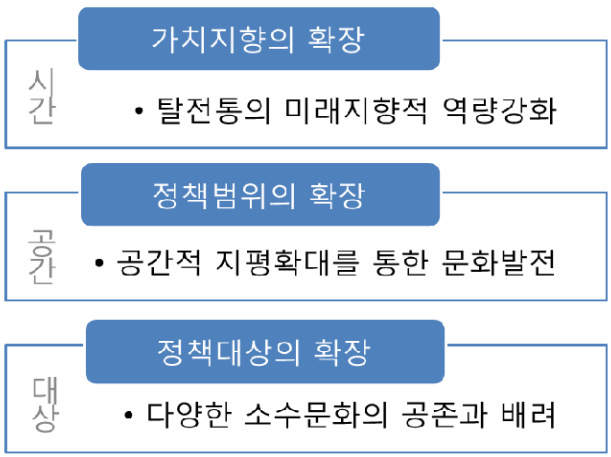

[그림 2-5] 문화다양성 정책의 확장

〈표 2-11〉 문화다양성 분류체계(Dimensions of Cultural Diversity) 및 내용구성

구분	분류영역	내용구성
기본 영역 (1차적 범주)	민족(Ethnicity; Race)	한국사회에 이주한 타민족, 타인종 집단으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귀화자 및 결혼 이주자 등
	국적(Nationality)	국내 이주한 집단으로 타국적 소지자로, 외국인 外 외국적 동포, 북한에서 이탈한 새터민 포함
	성별(Gender)	성별에 따라 집단별로 공유되고, 창조되는 문화
	장애문화 (Disability)	신체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활동에 결함이 있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성적취향 (Sexual Orientation)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성적 정체성이 다른 집단으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등 포함
	세대(Age)	연령에 따라 세대별로 형성하는 집단문화로, 아동문화, 청소년문화, 노인문화 등
환경 영역 (2차적 범주)	종교(Religion)	다양한 신앙, 교리 및 영적 생활을 수행하는 집단들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원불교 등 포함
	소득(Income)	가계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상대적 소득수준의 격차와 분포에 따라 형성된 생활문화양식
	혼인(Marital Status)	남녀 간 혼인을 이루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독립가구를 이루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임
	전통(Tradition)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민족의 고유문화
	지역(Geographic Location)	각 지역이 가진 특색 있는 고유성을 가진 문화
	예술취향(Arts)	기존 문화예술 장르 및 주류예술을 벗어나 다양한 예술형태와 취향을 표현하며, 순수문화, 대안문화, 독립문화, 인디문화 등 포함

제3절

문화다양성 관련 국제환경 분석

전지구화로 인한 국제환경의 변화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계질서를 재편하고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는 국민국가의 역할과 주권에 변화를 가져왔고, 국제기구나 국가 간 협정의 영향력이 높아졌다. 경제적으로는 무역협정을 재편하면서 자본과 상품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만들고 있다. 정보와 지식도 무선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을 통해 국경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검색되고 흐르게 되었다.

문화의 영역에서 전지구화는 '세계문화'로 불리는 획일적 서구 문화를 전 세계로 확산시킬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심화시켰다. 문화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문화다양성의 증진에 대한 관심은 인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제까지 인류 사회는 제도를 통해 통일성과 동질성을 확장시키는데 주력해 왔다. 다양성이라는 용어는 '갈등과 대결의 맥락'에서 사용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임현묵 2015: 99). 다양성은 혼돈과 무질서, 분열을 의미한 반면에 동질성은 통일과 발전을 의미했다. 집단의 결속과 공동체의 형성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동질성을 토대로 한 통일과 연대의 강화를 강조했다.

다양성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다윈(Charles Darwin)이 『종의 기원(1859)』에서 생물학적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했고, 밀(J. S. Mill)이 『자유론(1859)』에서 서구는 중국과 달리 다양성을 기반으로 발전을 이루었다고 강조한바 있다(임현묵 2015: 99-100).

다양성이 오늘날 주목받게 된 데는 유네스코의 역할과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유네스코는 창립 이래 평화의 문화 구축을 사명으로 제시해 왔다.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풍요로운 문화적 다양

성'의 유지와 확대를 강조해 온 것이다. 실제 유네스코는 헌장 1조 3항에 회원국 별로 각기 '풍요로운 다양성(fruitful diversity)[23]'을 유지하고 각국이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이해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한건수 2015: 164).

1. 문화다양성 개념의 발전과 확산: 유네스코와 소수자 문화권 운동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발전해 온 과정에는 유네스코의 활동과 이민자를 비롯한 소수자 민권 운동의 역할과 공헌이 있었다. 먼저 소수자 민권운동의 흐름을 보면,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 인종 혹은 종족적 소수자 집단의 권리 보호 운동 발전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민권운동은 인종차별에 대한 오랜 저항과 비판을 넘어서 흑인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로 문제의식을 넓혀 왔다. 캐나다나 호주가 다문화주의를 천명하면서 인종적, 종족적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문화권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다문화주의가 인종이나 종족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문화적 소수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면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했다.

둘째는 유네스코의 오랜 노력이다. 유네스코는 창립 이래 문화다양성에 대한 강조를 지속해 왔고, '풍요로운 다양성'의 확보를 헌장에 명시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 논의에서 문화의 개념 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발전시켜왔다. 유네스코는 2007년 본부 담당관이 작성한 문서를 통해 문화개념의 확장을 5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했다(Stenou 2007: 75-77).

스테누(2007)의 보고서를 토대로 정리한 선행 연구(한건수 2015)는 1982년 '멕시코시티 세계문화정책회의'에서 논의된 문화 개념이 문화다양

23) 유네스코 헌장의 한국어 번역문은 이 표현을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다. '풍요로운 다양성'(한건수 2015), '유익한 다양성'(임현묵 2015), '결실이 많은 다양성'(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이 있다.

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 회의에서 문화정책 전문가들은 문화를 "예술과 문학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의 생활양식과 기본적인 권리들을 포함하여 한 사회나 사회집단을 설명해 주는 독특한 정신적, 지적, 정서적 특질들의 복합체 전체"(UNESCO 2009:3; 한건수 2015:169에서 재인용)로 정의했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개념을 이해할 때는 문화 개념을 협의의 문화가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광의의 문화개념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이전까지 주로 통용되던 협의의 문화 개념 즉 예술이나 문학과 같은 제한된 범주로 문화를 국한시키지 않음으로써 문화다양성의 의미는 물론 문화정책의 폭과 깊이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의 확장을 통해 이후 유네스코는 문화와 정체성, 문화와 발전, 문화와 인권 및 민주주의 등 다양한 의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유네스코가 문화다양성 개념을 강조하면서 다양성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하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자료가 바로 1995년 세계문화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1995)이라는 연구 보고서이다. 다양성이야 말로 인류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온 핵심적 자원이며 앞으로도 인류의 발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1998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에 관한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한 권고안은 문화다양성 개념을 전면에 등장시키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을 유네스코의 사명으로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개념을 이해하려면 '문화다양성 협약' 보다는 유네스코가 2001년 제31회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라는 좁은 맥락에서만 이해하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다양성 선언은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다양성을 인류의 공동유산, 인권, 문화 교류, 국제사회의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선언은 이후 선언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로 발전했다.

2.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문화다양성 협약[24)]

문화다양성 협약은 문화다양성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 구속력을 가진 협정으로 발전시키려는 다양한 민간단체의 노력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캐나다의 국제무역자문그룹(Canadian Sectoral Advisory Group on International Trade)과 INCD, 그리고 INCP 등의 기관이 초안을 만들면서 실제 협약을 이행하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과 범위를 조정해 나갔다. 이 시기에 국제사회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던 때여서 이들 단체나 기구 모두 문화다양성 논의를 무역협정과 연관시켜 진행했다(Obulgen 2006: 29-30).

문화다양성 협약의 초안 작성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무역협정에서 문화상품과 문화 서비스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문화다양성 협약이 다른 무역협정이나 국가 간 협약에 비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었다(Obulgen 2006: 31-32).

세 차례의 정부 간 협상을 거치면서 초안에 찬성하는 국가들은 주로 캐나다, 유럽연합, 스위스,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를 대표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베냉 등이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완전한 자유무역을 주장하며 문화의 예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Obulgen 2006: 33-34).

24) 이 절의 내용은 한건수(2015: 178-181)의 내용을 보완 수정한 것임.

칠레, 뉴질랜드, 멕시코 등이 조정을 시도했고, 인도, 태국, 필리핀, 한국 등이 문구 수정에 참여했다. 결국 2005년 제33회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 회원국 191개국 중 154개국이 투표에 참여하여 148개국이 찬성하고 2개국이 반대, 그리고 4개국이 기권함으로 채택되었다(한건수 2015: 180).

협약 제정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문화다양성의 의미나 원칙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문화산업을 분야의 소비와 유통 정책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의 의미는 문화다양성 선언에서 제시된 문화다양성 가치의 증진을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진 협약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3.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의 의무 규정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9조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매 4년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해당국에서 취한 조치를 유네스코에 보고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당사국과 공유하고 정책과 관련된 정보도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 보고서 제출기한이었던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76개국이 4년 주기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사국 중 일부는 2번째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때가 되었으며 한국도 2018년에 두 번째 국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네스코 본부는 제출된 국가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국가보고서들의 내용은 유네스코 본부가 제시하는 구조에 따라 관련 주제를 정리해야 한다. 유네스코 본부가 제시한 정책 추진 사례 항목은 문화다양성 관련 문화예술 정책, 문화다양성 관련 국제협력 정책, 지속가능발전에서 문화의 도입, 위기에 처한 문화적 표현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질문하고 있다.

당사국별 국가보고서를 분석한 선행연구(김규원 2014)에 따르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정도, 해당 국가별 정책 환경 등에 따라 국가보고서의 내용과 수준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유네스코 본부는 자체적으로 국가보고서를 분석한 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추천할만한 정책을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유네스코 본부는 2017년 현재 혁신적인 정책 사례로 81개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25].

혁신적 정책 사례들은 문화다양성 선언이나 협약에서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반영하는 정책들이다. 문화와 지속가능발전의 영역에서 16개 정책 사례, 문화정책에서 11개 정책, 공영방송 관련 3개 정책사례, 디지털 기술 5개 사례, 국제협력 분야 10개 사례, 시민사회 참여 부분에서 15개 정책, 우선지원정책 9개 사례이다.

유네스코 국가보고서는 정해진 항목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문화다양성 정책 전반을 살피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국가별로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요 정책 대상이 다르고, 맥락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네스코 국가보고서가 설명하는 정책이외에 소수자나 이주민의 문화를 지원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정책 사례를 문화다양성 정책 사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이민자 대상의 정책과 도시 빈민 정책이 별개로 진행될 필요가 없다는 인식하에 이민자가 대상에 포함되는 정책들이라도 저소득층 대상 정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정책 사례를 집계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상황과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25) http://en.unesco.org/creativity/monitoring-reporting/periodic-reports/innovative-examples

제4절

주요 국가별 정책 현황분석

본 절에서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을 대상으로 각국의 문화다양성 정책사례를 심도 있게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주요국은 사회적 환경, 정치 역학적 구조 및 시민사회의 역량 등 환경적 맥락에서 우리와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문화다양성 정책을 살피는 것은 오랜 정책시행과정을 거친 정책성과 및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취할 수 있고 이를 향후 우리의 문화정책 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도적인 주요국가의 사회통합사례와 정책분석을 통해 국제적인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의 적용방안을 의미 있게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국외 주요국 정책종합분석

가. 독일

1) 환경 분석

독일연방정부는 유럽국가 소수자보호를 위한 협약을 비준하였고, 1998년 2월 위원회에 가입했다. 독일정책은 크게 자국 내 소수민족과 이주민 소수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독일 내 소수민족으로는 데인족, 프리슬란트족, 소르브족과, “로마니(Romani)와 신티(Sinti)”라 불리는 집시족이 있다. 소르브족은 6만 명, 집시족은 7만 명, 데인족은 5만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제정지원을 받고 있다. 독일 내

이주민은 2014년 전체 인구의 20%인 1,64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56%는 독일인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2011년에 비하여 150만 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주민들은 독일 자국민들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지녔지만, 학교, 거주지와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종종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1990년 '외국인 거류자 법', 2000년 '시민권', 2005년 '이민법'의 개혁을 통해 이민국가로서 정치적 조치를 시행하였다.

독일정부 및 민간부문에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을 대상으로 시기별로 다양한 문화정책 및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시대변천에 따라 이주민의 형태가 많이 달라져 왔기 때문이다. 시기별 첫 단계로 전후 50년대 동유럽지역에 살던 수백만 명의 독일계 주민들이 독일로 대거 이주하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새로 유입된 **독일계 실향민**들은 상이한 생활문화와 사회적 관습의 격차로 기존 주민들과 문화갈등을 표출하였다. 세계대전 이후 50, 60년대 내부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과정에서 당시 독일이주동포의 사회문화 통합문제가 정책적 이슈화되었다.

1990년 통일 이후 **동독 주민**의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다루어야 했는데, 냉전시기 동·서독은 독자적으로 이념적 기반을 세우고 대립된 체제 하에서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제도를 전개시켰다. 분단은 사회체계뿐 아니라 생활양식 및 가치관까지 양분하였고 양독 국민의 정서, 가치 및 역사의식도 다르게 나타났다. 통일이후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생활문화차원의 통합을 정책적으로 펼쳐야 했다.

세 번째 단계는 국제경제시장과 노동력의 필요성으로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독일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던 상황을 주목할 수 있다. 낯선 민족과 인종의 이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정착하면서 독일은 단일 민족에서 다문화 인종이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루게 되었다. 독일정부는 폭넓은 시각과 유연한 사고를 확대하고 내적 통합을 위해 매개적 역할을 수행 했다.

2) 사회통합 정책방향

주정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과 재정투입을 통해 문화다양성정책을 이끌고 있으며, 소수자그룹의 참여와 독자적인 조직운영 같은 문화권리를 행사하도록 한다. 연방수상은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과 2012년부터 매년 베를린에서 사회통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첫 회의는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통합 국가 계획수립에 관한 합의를 이끌었고, 2012년부터 사회통합 국가실행계획을 도입하였다. 2013년 봄 6번째 사회통합 수뇌회담에선 연방 사회통합계획이 작성되었다. 중심주제는 '일자리', '고용시장', '자격증'과 '언어'였으며, 2014년 11월 8번째 메인테마는 '이주민사회의 건강권'이었다.

사회통합 수뇌회담에서 문화다양성 전국연방위원회(Bundesweiter Ratschlag fuer Kulturelle Vielfalt)는 '상호문화대화와 다양성'에 관한 연속 회의를 주재하였다. 다른 실행기관은 독일 사회통합과 이주를 위한 전문가회의(Sachverstaendigenrat Deutscher Stiftungen fuer Integration und Migration)로,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독립기구로서 7개 재단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기관은 많은 보고서를 출간했는데 문화다양성과 관련 "도시 내 문화다양성"(2004), "슈튜트가르트 문화다양성 촉진활동"(2006), "연방차원 국가 사회통합 계획"(2007), "큇른 매력"(2008), "상호문화 통합 레포트. 뮌헨의 다양성 삶"(2010), "상호문화활동"(2011), "국가 사회통합 활동계획"(2012)등이 있다.

2005년부터 연방정부내각에 이주, 피난과 사회통합분야 장관직을 두고 있다. 주요한 통합계획에는 학교와 취학 전 아동에 대해 상호문화관련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7개 항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소수자그룹의 문화 권리증진을 위해서 연방차원에서 후원하는 상호문화 예술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되고 있다. 과거 상이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전통적 교육제도는 수정, 보완되었다.

3) 구동독지역 문화증진방안과 국제교류활동

두개 국가, 두개의 정치체제로 40년 간 분단되었던 동서독은 정치적 통일이후 커다란 사회문화적 격차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는 내적통합을 이루고자 했다. 연방정부의 문화다양성 핵심과제 중 하나는 구동독 신연방주 지역의 문화예술저변확대 정책을 들 수 있다. 연방정부는 통일이후 동부와 서부지역 간 편차를 없애기 위해 2005년 한해 총7,500만 유로를 지원했고,[26] 문화인프라 및 예술정책의 지원을 통해 상호공존을 추구하였다. 대표적 사업은 '**문화의 등대**'(Leuchttürme der Kultur)프로그램인데, 프로이센재단, 드레스덴 국립예술관, 바이마르 고전재단, 쉬베린 국립박물관, 데사우 뵐리처 정원, 할레 문화재단, 독일 해양박물관(쉬트랄준트), 드레스덴 독일 보건위생박물관, 데사우 바우하우스 등 23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구동독지역 문화유산복원 및 문화진흥책을 추진, 문화적 수준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27]

또한 문화미디어행정부(BKM)와 주(州)문화부장관상설회의는 문화간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문화교류프로그램 "문화가 세계를 열다"(Kultur öffnet Welten)를 통해서 문화다양성의 폭을 넓히는 문화예술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BKM 산하 **세계문화의 집**은 관련 사업을 총괄홍

구동독 작센지역 드레스덴 페기다 시위대

"나 역시 통일의 산물이다. 그 전에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개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고, 그 사람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메르켈 독일총리

26) 통일연구원(2006), 2005 독일통일백서, p.133.
27) 김면(2016), '독일문화예술정책', 『주요국 문화예술정책 최근 동향과 행정체계 분석연구: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최보연 외), p.129.

보하고 있으며 2016년 4월 총150개 사업이 신청되었다. 베를린에 위치한 전시관인 세계문화의 집은 유럽을 제외한 지역, 주로 비유럽권 제3 세계의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곳이다. 다양한 문화권과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센터 역할을 하면서 국제문화 협력강화 및 비서구권 소수민족들의 이질적 타문화 체험을 통해 자국민들에게 문화다양성 의식을 증진시키고 기반조성에 기여하고 있다.[28)]

〈표 2-12〉 독일 정책사례

배경	정책의 성격	특징	정책추진기관
①전후독일계 실향민대량 이주 ②1990년 동서독 통일 ③외국인 노동자 유입 ④국내 소르보, 집시, 데인족 소수민족보호	· 초청노동자, 독일실향민, 난민들의 이주민이 전체국민의 약 20% · 동서독통일이후 내적통합정책 에 대한 정책지원 · 혈통주의, 자민족 우선 vs 다문화 정책논쟁	· 사회통합정책의 변천흐름 ①1990년 외국인 거류자 법, ②2000년 시민권, ③2005년 이민법의 개혁이 시도됨 · 연방 및 주정부 내 부처 간 협력과 재정투입을 통한 문화다양성 정책운영 · 구동독 연방지역의 문화통합을 위한 문화등대 운영 · BKM산하 세계문화의 집을 통한 국제문화교류활동	· 연방정부가 각 부처에 다양성 정책역할분담, 주정부 실무운영 - 전국연방 문화다양성 위원회 - 연방이주·난민청(BAMF) -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청소년대상 이주민통합정책수행 - 연방교육학술부·이주민취업, 직업훈련교육지원 · 신연방지역 문화지원정책을 통한 문화소외해소 및 내적통합

나. 프랑스

1) 환경 분석

프랑스는 미국주도의 세계화와 경제자본에 의해 다른 문화를 지배하는 문화 획일화 가능성에 맞서 "문화적 예외" 개념을 대두시킨 선두주자이다. 국제사회의 문화다양성 논의 과정에서도 각 국가의 문화정체성 및 고유한 특수성을 주장하며 자주적 생존권과 문화주권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프랑스가 처음 자국영상산업 보호를 위해

28) 같은 책, p.130.

주장했던 문화적 예외 개념은 문화정체성과 국제 문화산업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으로 이어진다.

프랑스 문화부의 목표는 "문화활동을 포함한 문화적인 것들에 대하여 지역적, 거리, 사회경제적 빈곤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접근성의 불평등을 개선하여 국민의 문화다양성을 확대하고 모든 분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예술 교육,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문화예술의 창작이라는 세 가지 큰 축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29]고 규정되어있듯이,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문화다양성의 방향성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전통적으로 다양한 예술창작자 지원에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여왔고, 2005년 길거리예술을 지원하는 국가단위 센터(Centres nationaux des arts de la rue)를 개소하기도 했다. 기존의 예술 장르에 포함되지 않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예술창작을 지원하고, 수도 파리에만 문화시설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분권화를 통한 지역문화발전을 장려하며, 자국민의 문화향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30] 프랑스의 문화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외에 알리앙스 프랑세즈와 프랑스문화진흥원을 통해 국제적 행사를 진행하며 문화예술정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밖에 문화통신부 및 지역문화사업국(Direction re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은 2010년 6월 법령에 따라 각종문화유산 보존, 문화 창작 및 전파지원, 문화예술교육, 문화다양성 장려 및 문화향유자 증대를 담당하고 있다.

2) 사회통합 정책방향: 문화예술정책을 통한 사회통합

자국의 문화산업 보호, 문화 분야의 국제통상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도 문화다양성 협약과 연계하여 다문화 사

29) http://www.culture.gouv.fr
30) 김현경(2016), '프랑스문화예술정책', 『주요국 문화예술정책 최근 동향과 행정체계 분석연구::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최보연 외), p.69

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 활용하고 있다.[31]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는 이민자는 대략 400만 명으로 여전히 OECD국가 중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는 국가에 속한다.[32] 정부는 다문화사회를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유럽계 이민자와 달리 아프리카계 무슬림 이민자들은 쉽게 수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5년 샤를리 에브도 사건 이후 사회문제 극복을 위하여 프랑스는 문화적 유대감 강화를 내세우며 문화다양성 실현을 화두로 단일문화에 근거한 정체성이 아니라 다양성에 근거한 정체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2015년 문화부는 '창작의 자유, 문화재, 건축법'을 통하여 프랑스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부분인 문화로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프랑스가 하나의 문화공동체로서 존립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33]

프랑스 오페라 예술교육프로그램

"빈민가 길거리에 내버려졌다 평범한 가정에 입양된 아이가 문화부 장관에까지 이를 나라는 흔치 않습니다"

- 펠르렝 프랑스 전 문화부 장관 (한국 입양아 출신)

프랑스 정부는 비차별의 법제화와 정책기구의 강화로 소수자 차별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차별의 문제를 개선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회균등법 제정'. '통합과 차별퇴치지원기금 조성' 등의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대통령 산하에 '차별퇴치평등고용청'

31) 이산호(2009),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과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프랑스문화예술연구』, 프랑스문화예술학회 제28집, p.290

32) 1872년부터 프랑스는 인구조사에서 거주자들의 종교와 인종적 기원을 조사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를 인종, 종교 등으로 분류한 공식적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음. 대부분의 통계는 인구학자들의 표본조사를 통해서 작성된 것임. 박단(2006),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와 무슬림 이민자 통합문제", 『프랑스사연구』 1호, 한국프랑스사학회, p.233

33) 김현경(2016), 같은 책, p.94.

을 설치하여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였다. 문화기반시설과 관련하여 '국립 이민역사관'을 설립하였고, "서로의 차이를 부정하지 않고, 이 차이를 부각시키거나 고양함이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닮아가게 하며 하나로 뭉치게끔 하기 위한 통합"이라는 프랑스 이민자 정책의 대전제 아래 실무사업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프랑스는 국내 법제화를 계기로 주류 집단의 소수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공교육기관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 프랑스 교육계는 문화 간 교육과 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문화적 민감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도시 외곽지역 혹은 교육 소외 지역을 지구 단위로 묶어 교원 및 교육보조 인력을 확충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는 등 교육 활성화 정책인 '교육투자 우선 지구' 교육제도를 만들어 외국 학생들의 언어 교육과 문화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표 2-13〉 프랑스 정책사례

배경	정책의 성격	특징	정책추진기관
· 미국주도 세계화와 문화 획일화에 맞선 '문화적 예외' 정책 제시 · 전통적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자 증대를 지향 문화부정책과 연계됨 · 유럽계와 아프리카계 주민갈등문제에 대응필요	· 문화부 목표: 문화예술교육, 문화유산보존, 문화창작 지원, 문화다양성 확산 · 70년대 중반 낮은 출산율, 노동력 부족, 이민이 사회적문제로 부각 · 문화예술정책을 통한 사회통합 추구	· 프랑스 사회통합계약-프랑스정부의 능동적 대처로 동화주의 추구하되 폐쇄적 단일문화국가가 아닌 역동적 통합 문화창조 · 창작자유, 문화재,건축법을 통한 문화공동체 추구(2015) · 차별퇴치평등고용청 · 공교육기관 문화다양성 교육강화를 통한 문화민감성증대, 시민성 함양 추구	· 문화통신부와 지역문화사업국(DRAC) - 문화다양성 장려, 문화향유 지증대, 문화 창작지원 정책 총괄 · 알리앙스 프랑세즈와 프랑스 문화진흥원을 통한 국제교류 진행 ·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처(2006)-도시정책 및 이민자 통합정책관련 재정문제 총괄

다. 캐나다

1) 환경 분석

캐나다는 다양한 이민자의 나라로 20세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개방적 정책을 수립하고 협의주의전략의 문화다양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는 북아메리카 인디안 원주민의 땅으로, 수백 년 전 11개 언어와 600부족이 있는 소수민족의 다문화국가였다. 현재 캐나다의 소수민족 분포를 보면 원주민비율이 인구의 2%, 60만 명으로 조사된다. 16~18세기 프랑스계, 영국계, 독일계, 네덜란드계 이민 수용 이후 19세기 유럽 전 지역 등으로부터 이민자들을 수용하여[34]이들이 현재 인구의 54%을 차지하는 주류사회를 형성하였고, 2차 대전이후 유럽계 주민 10%와 1967년 이민법 개정이후 유입된 아시아주민들 13%를 차지하고 있다. 1971년 다문화주의 의의와 지향을 발표하며 영어와 불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였으며, 1988년 '다문화주의법' 제정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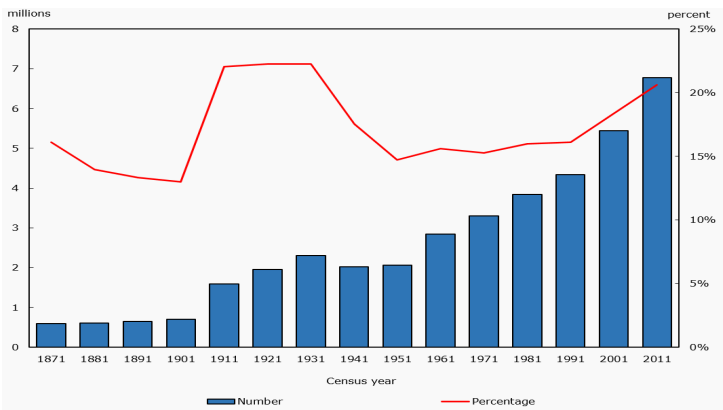

자료: Statistics Canada(http://www.statcan.gc.ca/)

[그림 2-6] 외국 태생 캐나다 이주민들의 인구 수 및 비율

34)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책임: 류정아)

〈표 2-14〉 캐나다 다문화정책의 시기별 변화

구분	인종다문화주의 (1970년대)	공평다문화주의 (1980년대)	시민다문화주의 (1990년대)	통합다문화주의 (2000년대)
정책초점	다양성 기념	다양성 관리	건설적 포용	포괄적시민권
기준	문화	구조	사회 건설	캐나다정체성
의무	인종	인종관계	시티즌십	통합
범위	개인적 조정	수용	참여	권리와 책임
도전	편견	구조적차별	배제	불평등 접근 문화 충돌
해결책	문화적 감수성	고용평등	포괄	대화/상호이해
은유	문화모자이크	공평한 경장의 장	소속감	하모니-재즈

자료: Fleras, Augie and Jean Kunz. 2001. Media and Minorities: Representing Diversity in a Multicultural Canada. Thompson Education Publishing; Government of Canada, 2009, p24에서 재인용, CIC, 2009:11을 재구성

1963년 3월 과격 독립단체 FLQ(퀘백 해방 전선)가 캐나다 내에서 퀘백 주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폭탄테러를 감행한 후 '이중 언어, 이중문화에 대한 왕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캐나다의 다문화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또한 프랑스어의 공용어 인정 및 프랑스계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고, 캐나다를 하나의 연방국가로 유지하기 위한 목표를 지향하였다.

1971년 당시 피에르 트루도(Pierre Trudeau) 총리의 영향으로 '이중 언어, 이중문화에 대한 왕립위원회' 정책 권고를 받아들여 다문화주의 지향점을 발표하며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였다. 그 후 1988년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법을 제정하며 안정적인 다문화주의 국가로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35] 소수민족의 문화적 정체성 및 자신감 배양을 목표로 소수민족집단 간 교류를 강조하고, 이중 언어 교육에 중점을 두는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1991년 다문화주의 법 관장 기구를 설립하여 시민권과 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였다.

문화다양성 연합은 문화관련 연합단체(출판업, 미디어, 공연 및 예술,

35) 박진경(2012), "다문화주의와 거버넌스 사회통합 전략 - 캐나다 경험과 한국적 모형 모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6권 1호, 한국정책과학학회, p.30

음악 등)로 2천여 개의 비영리 단체 및 약 18만 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포럼 형태로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협약과 원칙을 지키고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자 구성되었으며, 콘텐츠 할당제와 지속가능한 교육 및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캐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이에 관한 전략적인 계획과 문화 정책을 채택해 왔다. 이들은 효율적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기관(재정지원 기관, 공영 방송사, 예술위원회 등)을 설립하였으며 다양한 기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사회통합 정책방향: 상호 문화교류증진

캐나다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초기부터 다문화정책에 근거한 개방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과거 인디안 원주민 차별정책에 대한 금지와 다양한 이주민과 선주민의 갈등해소 같은 상호문화적 환경조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프랑스인의 비율이 높은 퀘벡주 공존정책 및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아시아 신규이주민의 사회적 포용정책 등이 현재 추진되었다. 문화다양성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이주민들에게 출신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며, 소수그룹들의 통합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존과 상생이 가능하도록 추구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부 순회회견

"총리가 동성애자 퍼레이드에 참여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로 여겨져선 안 된다"

- 트뤼도 캐나다 총리

또한 퀘벡 주정부는 "문화 아젠다 21"정책을 통해 문화다양성 통합정책

을 이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헌법 '권리와 자유 헌장'을 채택하여 다문화 유산을 규정하였고, '다문화주의법'을 통해 헌법에서 명시한 다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에 대한 실행 법률을 제정하였다.

캐나다 예술위원회는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해외 예술인들의 캐나다 방문 및 자국 예술인들의 해외교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연방정부와 지자체, NGO단체 간의 연계로 캐나다 전역에 고르게 정책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방정부의 예산만 보아도 2010년 결산서에서 통합프로그램이 전체 소비액의 6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연방정부의 주력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6)]

〈표 2-15〉 캐나다 정책사례

배경	정책의 성격	특징	정책추진기관
· 인디언 원주민 소수 2% · 이민자와 연방제의 국가 · 영국계와 프랑스계 주류사회 · 공업국으로 전환, 노동력 필요에 의한 경제이민 활성화	· 다인종 다민족 문화, 이민자에 대한 평등한 대우 추구 · 공존과 조화를 기반 · 이주정책에서 다문화주의정책 선택 - 노동력 확보 - 유색인종 아시아계 이민자 증가 - 영·불 이중언어정책	· 백인위주 동화정책에서 이민자 고유 민족성과 다양성 인정 · 상호문화 교류증진정책 · 다문화사회의 모범국 · 연방정부의 확고한 정책방향제시와 기금지원 · 퀘벡 문화아젠다 21정책 · 시민단체의 문화다양성 활동	· 1988 다문화주의법 제정, 이민부로 변경 ·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협력, 실행기관인 시민단체의 협업 - 공공부문과 시민단체의 거버넌스 체제 ·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영향 - 국가·시민단체·기업 거버넌스 체제로 재편

라. 네덜란드

1) 환경 분석

네덜란드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이주민의 문화권리 증진정책에서 출발한다. 현재 이주민은 전인구의 22%인 1,700만 명으로,[37)]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노동을 위해 타국의 이주민들을 정책적으로 수용하였으며

36) CIC(2011), Departmental Performane Report 2009-2010
37) 네덜란드 통계청(http://statline.cbs.nl/)

문화정체성의 유지를 보장해주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이주민의 사회갈등 문제로 사회통합정책의 기본방향은 소수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통합을 이루는 원칙을 추진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이주민들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동화주의적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38)]

정부는 다양한 소수자그룹의 문화예술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문화봉사활동 실천플랜'을 기획하고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2% 재정확보를 추진하였다. 특히 피닉스재단은 이주예술가와 이들 단체의 지원을 담당하였으며, 문화재단과 비영리단체를 위한 아타나(Atana)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현재 네덜란드의 문화정책은 다문화정책을 줄이고 사회통합 및 상호문화증진정책으로의 방향전환에 역점을 두고 있다.

2) 사회통합 정책방향: 성소수자의 권리 증진과 이주민지원책

동성 결혼 법 집회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질문이 나온다. 이러한 교육 방침은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부추기는 것 같다"

- 마크루터 네덜란드 총리

네덜란드는 성소수자에 대한 문화다양성 정책의 모범적인 국가로, 국민의 90%이상이 동성결혼에 찬성할 만큼 문화적으로 가장 개방적이다. 특히 암스테르담은 성소수자 친화적인 문화도시이다. 전쟁 중 박해받고 살해된 성소수자들을 기념하는 동성애자 기념비(Homomonument)가 세워졌으며, 1973년 군대 내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생겼다. 1994년 성평등법(Equal Rights Act)이 제정되어 취업, 주거, 공공시설 등에서 성 정체성으로 인한 개인차별을 금지하였다. 1998년에는 동성애

38) 이현아(2013), "다문화시대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방향에 대한 일고찰 - 네덜란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인간·환경·미래』 제10권, p.158.

커플에 부부로서의 혜택을 부여했고, 2001년 동성 간 결혼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합법화하였다. 2001~2011년까지 14,813쌍의 동성커플이 결혼하였고, 이 중 7,522쌍은 여성커플, 7,291쌍은 남성커플이다. 같은 기간 동안 이성 결혼은 761,010건으로 집계되어, 전체 결혼 중 동성결혼의 비율은 1.95%이른다. 또한 동성부부가 입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으며, 2014년부터는 수술 없는 성전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39)]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서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시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 중앙정부는 신규이주민통합법을 근거로 내무·왕국관계부 산하 이민· 귀화청 에서 주요 실무를 담당한다. 관련 사업을 시가 운영하는 대신 민간기관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편화되어있으며, 시당국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거나 활동계획을 가진 이주민 자조집단을 선정하여 활동예산을 지원한다.

이주민 사회통합 관련 업무는 내무·왕국관계부와 이민·귀화청이 법무부, 보건·복지·스포츠부, 사회·고용부, 교육·문화·과학부, 외무부 등과 협조 관계를 이루며, 외국인의 입국 관리, 불법체류자 단속과 강제 퇴거 업무는 법무부에서 담당한다. 외무부는 사증업무, 보건·복지·스포츠부는 복지정책과 가족정책, 사회·고용부는 노동시장 정책, 교육·문화·과학부는 교육정책을 다룬다.

〈표 2-16〉 네덜란드 정책사례

배경	정책의 성격	특징	정책추진기관
· 전체인구 중 22% 이주민 1,700만명으로 대표적 다문화국가 · 1970년대부터 터키, 모로코, 인도네시아 등 이주 본격화	· 네덜란드식 다문화주의(서구인/비서구인 구분) · 이주민들 중심 집단적 거주지역 용인 · 80년대 다문화주의적 소수자 정책에서 이후	· 진정한 다문화주의- 다양한 문화공존 속에서 서로의 다양성 인정 추구함 · 현재 정부는 공동의 언어와 가치를 갖는 시민공동체를 추구하고,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을 특별정책에서 일반	· 사회문화부(1978)-ACOM설립(문화적 소수단체 연구에 대한 자문위원회) · 교육과학부- 다민족사회연구를 위한 학술기관설립(1983)

39) https://en.wikipedia.org/wiki/LGBT_rights_in_the_Netherlands

배경	정책의 성격	특징	정책추진기관
· 암스테르담 50% 이상이주민구성 · 국민90%이상 동성결혼찬성 및 성소수자친화성	현재 동화주의로 선회 · 성소수자 권리증진 · 성평등법 제정,시행 · 최초 동성결혼합법화(2001)	정책으로 분류 · 성소수자 친화적 정책운영 · 동성부부권라, 성전환권리 합법화	· 정부·공동가치 강조정책수립

마. 스웨덴

1) 환경 분석

스웨덴은 유럽에서 다문화주의정책을 채택한 첫 번째 나라이다. 1950년대 이후 대규모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었으며, 초기 대부분 스칸디나비아 국가 출신들이었다. 이후 북유럽 국가들 뿐 만 아니라 터키, 이란, 인도 등 중동, 아시아 국가이주민들이 다수 유입되어 거주하고 있다. 1975년 5월 의회는 다문화이주민과 소수자정책 관련법을 제정하여 소수자그룹관련 민족적 다양성과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고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는 다문화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사회구성원 모두 공공정책을 통해 고용, 사회복지, 주택 등의 일반 사회제도에서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비시민의 투표권, 학교 모국어강좌, 이주민을 위한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1975년부터 정책과 관련하여 3가지 기본 원칙인 '평등(equality)',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 '협력(cooperation)'을 실시하고 있는데, 평등(equality)의 원칙은 사회구성원 모두 동일한 법적 권리 및 의무를 지니며, 제도상 차별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선택의 자유(freedom of choice)는 인종적·문화적 소수자들이 그들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주류문화를 강제하는 동화정책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협력(cooperation)의 원칙은 소수자집단과 다수자 간에 의사소통 및 교류를 확보하고 문화 간 격차를 줄임으로써 다른 문화

에 대한 배타성을 넘어 포용과 관용을 통해 차이를 이해하고 협력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처럼 국가차원에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40]

2) 사회통합 정책방향: 양성평등 정책지원

스웨덴은 세계경제포럼(WEF) 성 격차지수에서 2~4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는 성 평등의 최상위국가로 평가된다. 국회의원 과반수가 여성이며, 스웨덴회사 25%의 오너가 여성이다. 보편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은 성역할의 가부장적 이념과 직장 내 강한 경쟁문화로 인해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 정부는 사회 내 '노동'과 '여가'의 균형을 중요시하여 1984년 평등기회법령을 발표하고 "공평한 기회", "공평한 임금", "공평한 교육"을 모토로 여성인력의 사회적 참여활동을 높였다. 가사부담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를 통해 출산율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공식적 부모육아휴직제도(480일 제공)를 도입해 여성인력의 육아부담을 덜게 하였다. 나아가 기존 가족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성 증가에 대해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스웨덴 의회 여성의 방

"여성의 권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떠맡아야 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로 얻어지는 결과는, 국가와 사회, 국민에게 모두 이익이 된다"

- 옐름발렌 스웨덴 전 부총리

40) 곽원섭(2007), "이주민 통합 전략의 국가 간 다양성 비교–프랑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0–22, 장석인·김광수·Le Quang Canh·Le Doan Hoai, "서유럽 국가의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을 중심으로", 『경영컨설팅』 제4권 제2호, KNU기업경영연구소, p.82

또한 스웨덴 정부는 이주민정책에서 출신 및 종족별로 스스로 공동체 또는 조합 형태를 조직하는 것을 장려하고, 각 소수자를 대표하는 조직들을 정부관련 정책에 대화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적 의사결정구조 또는 정치적 대표(representation)체제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조합주의(corporatism)의 논리가 이주민에게도 적용된 것으로,[41] 이는 소수집단의 권리가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며 집단 간 정체성 유지와 다양성을 확보하여 이주민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표 2-17〉 스웨덴 정책사례

배경	정책의 성격	특징	정책추진기관
· 1975년 의회 다원, 다문화 사회통합법, 정책 제정 · WEF 세계 성격차지수 최상위권 지위 유지 · 1980~2006 이주민 100만명 유입	· 보편주의 복지혜택모델 · 여성인력의 사회참여유도 및 '노동과 여가'의 균등 정책 추구 · 가족구성의 다양성 대책 · 외국이주민에게 내국민과 동일한 복지혜택 제공 · 소수자 교육, 고용, 소득면에서 격차 시 정부의 적극적 개입 · 소수자 단체의 독자성과 문화활동지원	· 외국인노동자는 스웨덴 노동시장의 중요한 요소 · 1988년 양성평등기회진흥 5개년 계획수립으로 여성노동자 가치를 높임 · 학교 내 문화다양성 인식 교육확산 노력 · 극우 성향 특정 그룹(이슬람인, 유태인, 아프리카인, 집시 등) 적대 성향 퇴치 노력	· 사회서비스법 제정(1980) · 외국인관련 기초자치단체 책임을 명확히 한 특별법공포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여성 및 소수자 취업지원-고용법 제정 · 이주민 총연맹에 재정적 지원

2. 정책적 함의

사회통합의 정책적 활용방안과 유용성 제고를 위해 독일,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을 중심으로 주요선진국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였다.

주요국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근본적으로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는 동의하고 있지만, 자국 내 소수민 현황 및 정책 환경으로 인해

41) 신정완(2016), "스웨덴 거주 이주민의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원인", 『산업노동연구』 20권 2호, 한국산업노동학회, p.306

초래되는 사회적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이 문화다양성 정책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접근하는 정책들은 향후 문화다양성 정책추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성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주요국은 정책사례에서 각 국가특성에 따라 새로운 사회구성원의 통합정책을 개발하고 정책대상 집단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며 사회갈등 문제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독일은 통일 후 문화등대사업을 통해 동·서부 지역 간 내적통합을 도모하였고, 캐나다는 원주민과 이주민, 영국계와 프랑스계 주민 간 소수민족집단 교류를 추진하였다. 네덜란드는 비서구인 주민의 소수문화 권리증진을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이주민 정책관련 소수자집단별 특성과 제약요인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정책안과 시행과정에서 정책대상 집단으로 부터 피드백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개방적인 전달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정책대상자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성소수자의 권리증진을 위해 성평등법 및 동성결혼을 법제화 하였고, 스웨덴의 경우 성평등 정책과 가족의 다양성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랑스는 다양한 독립예술가를 지원하고자 국가단위센터를 개소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소수자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화적 차이를 유발하는 모든 범주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해갈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가 정책을 주도하고,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주요국은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단체의 네트워크 구축 및 소수자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2천개 문화관련 연합단체가 문화다양성 연대에 참여,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연방위원회가 문화다양성 정책을 총괄하여 주관하며 지역전체에 효과적 확산을 위해 지역문화재단을 기반으로 문화단체 간 협력을 도모한다. 네덜란드는 피닉스재단을 중심으로 이주예술자의

지원을 담당하고, 아타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추진주체를 조직하여 상호문화적 환경조성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 내 민간자원의 역량과 지역사회의 연계망 등 환경적 맥락이 정책시행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주요국은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및 문화관련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문화미디어부(BMK)가 주축이 되어 세계문화의 집과 괴테문화원을 통해 문화교류프로그램을 활성화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알리앙스 프랑세즈와 프랑스문화진흥원을 통해 국제적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교류망을 확대하고 있다. 캐나다 예술위원회는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해외 예술인들의 캐나다 방문 및 자국 예술인들의 해외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요국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미디어콘텐츠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매체종사자들의 다문화의식증진 교육방안 및 소수집단 미디어에 대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향후 정책방안을 기획함에 있어 의미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제3장

정책 현황분석

제1절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전개과정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또는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문화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한 사회의 문화가 획일화되거나 목적에 의해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다양한 가치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되는 문화의 공존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은 2010년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하면서 협약 당사국으로서 이행을 위해 문화다양성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다. 2014년 5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에 시행하였다. 동 법에서 정의하는 문화다양성의 정의는 유네스코 협약서와 맥을 같이한다.

〈표 3-1〉 국내 문화다양성 법률과 유네스코 협약에서 문화다양성 정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과 사회의 내부에서 그리고 집단과 사회 사이에서 전승된다. •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문화유산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표현되고, 증대되며, 전승되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용된 방법과 기술에 관계없이 다양한 양식의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1. 문화다양성 정책의 유형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소수 집단의 문화적 충돌에 대응한 사회통합적 접근과 시장경제에서 문화적 획일성 우려에 대응한 문화적 예외 차원의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 통합적 접근은 한 사회 안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부류의 소수자 문제들을 다룬다. 일찍이 사무엘 헌팅턴(1996)의 '문명의 충돌'에서는 세계 정치의 핵심적 갈등요인이 민족, 언어, 종교 등 문화적 갈등이라고 지적하였는데,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과 이질적 문화적 특성간의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세계화, 이동성의 증가 등으로 인해 한 사회 안에서 다양한 소수자(다인종, 다민족)가 모여 살게 되면서 집단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역사가 짧지만, 이민 역사가 긴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다문화 정책을 중심으로 개인과 지역사회 간의 상호교류, 다인종·다민족 간의 사회 융화와 적극적인 역할을 장려하여 왔다.

둘째, 문화적 예외 차원의 접근은 국가, 사회, 문화 간에 문화다양성 문제를 다룬다. 주로 자본 독점으로 인한 국가 간, 사회 간, 문화 간의 소외에 대한 문제인데, 본래 국제사회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는 시장경제에 의해 잠식되는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적 예외성 주장에서 촉발되었다. 이 접근방식은 국가 간, 문화 간에 문화상품 및 서비스에 있어서 문화독재를 견제하고, 다양한 기초예술, 순수예술, 독립예술 등을 시장의 경제논리에서 보호·육성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2000년 중반 들어 독립영화 및 음악, 콘텐츠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문화 종의 다양성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2.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요 특징 및 변화

정책으로서 문화다양성은 과거 다문화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 유입으로 급속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외국인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에 관심을 두던 다문화정책이 사회구성원간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적 접근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각기 다른 민족,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민과 사회적 소수자들이 동등하게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한 사회 내에서 공존하고 표현의 다양성 인정이 중요해지면서 다문화 정책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발전 국면을 살펴보면 크게 3단계의 변곡점이 있었다. 2005년 한·미 FTA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로 문화산업 영역에서의 문화적 예외 논의 발생, 2010년 문화다양성협약 비준국으로서 다문화 정책을 문화다양성 측면으로 접근, 2014년 문화다양성 법률 마련으로 소수에 대한 문화권 보장 및 사회갈등 해소로 정책영역 확대 및 구체화이다.

〈표 3-2〉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정책 발전 국면

2005년-2009년	2010년-2013년	2014년-현재
• 한·미 FTA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로 문화산업 영역에서의 문화적 예외 논의 발생 • 문화산업영역에서의 시장개방과 관련한 논의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기는 하였으나 정책적인 구상은 구체적이지 않았음	• 2010년 한국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110번째 비준국이 되면서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다문화 정책을 논의 • 기존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철학을 정착에서 공존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계층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데 집중 다양한 논의를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론화한 점에 의의	• 2014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소수에 대한 문화권 보장 및 사회갈등 해소로 영역 확대 • 그간 소수 특히 이주민에 대한 복지 차원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 제고로 정책방향을 전환

가. 2005년~ : 문화산업 영역에서 문화적 예외 논의

한국 사회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5년 전후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과정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협상이 논의되면서부터이다. 2005년 10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총회에서 미국, 이스라엘 제외한 148개 회원국 찬성으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이 통과된 상황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가 진행되면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유네스코는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발표한 후, 이에 기반하여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면서 국제사회가 문화의 다양한 형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에서 문화를 경제논리에 적용하는 미국과 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서유럽 및 개발도상국 간의 대안 모색 과정에서 채택된 협약이다. 동 협약이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작되면서 프랑스가 문화적 예외를 주장한 이후 1998년 OECD 국가들이 추진했던 다자간투자협정(MAI)이 문화 다양성을 이유로 결렬되면서 문화다양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촉발된 배경으로 볼 때 스크린쿼터 축소는 문화다양성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에서 미국의 요구와 이에 대응하는 영화계 시민단체의 입장이 대립되면서 사회 전면에 문화다양성 논의가 대두되었으나, 결국 2006년 7월 스크린쿼터는 종전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결정을 내렸다.

이 시기의 문화다양성 개념은 문화다양성 협약의 기본 정신이었던 자본주의에서 문화계의 표준화 및 획일화에 대항하는 논리로 접근되었다. 문화산업영역에서의 시장개방과 관련한 논의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기는 하였으나 정책적인 구상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나. 2010년~ : 다문화 정책에 대한 문화다양성 측면의 접근

본래 다문화 정책은 2000년대 들어서 외국인 이주민(노동이주민 및 결혼이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문화(multiculture)가 부상하면서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동화정책으로 출발하였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2007년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2008년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지원법'등의 법적기반을 마련하였고, 정책의 내용은 이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집중되었다.

〈표 3-3〉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유

법령명	제정이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2007.5.17.)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고, 대한민국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08.9.22.)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 · 부부교육 ·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

자료 : 법제처(www.law.go.kr)

이들 법률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외국인노동자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와 시혜 관점에서 처우개선과 한국사회의 정착을 지원하다보니, 내국인의 다문화에 수용성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주민 역사가 짧고 단일민족주의가 강한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다문화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와 차이에 대한 인정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즉 자국민 중심으로 특정 대상과 분야별 지원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의식을 개선하는 다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와 맞물려 2010년 한국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

약」 110번째 비준국이 되면서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다문화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기 위해 그간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의 정착지원 중심의 다문화 정책에서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표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으로의 전환을 표방하였다.

2012년 발표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그간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화적응 중점지원 및 시혜적 지원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존중 문화와 사회분위기 조성하고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대한 기본 관점을 재정립하였다. 특히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강조하며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의 목표 하에 86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동 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교과부 등 범부처가 합동 추진한다.

〈표 3-4〉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교(1차, 2차)

구분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비전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목표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추진 과제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 전 검증시스템 강화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 정책추진체계 정비

다문화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는 매우 다양한데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능력을 높이는데 방점을 두기 시작한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능력을 높여 문화의 융합과 창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수자 문화의 공존과 이주민, 내국인간의 문화적 소통에 초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3년 박근혜정부는 문화융성 3대 전략 및 10대 과제 중 하나로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 협력 확대를 설정하고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이주민 등 국내 소수자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지개다리'사업으로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들의 자국문화 표현 및 교류기회 마련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무지개다리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지역 내 소수문화, 세대문화, 지역문화, 다문화 등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문화예술교류 및 소통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또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일반국민의 다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를 설정하고, 대상별 다문화 이해교육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별 문화예술 기반 체험 중심의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를 통해 사회 전반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인식 개선하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도서·영상 등 콘텐츠 개발 지원을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문화예술 콘텐츠에서의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하는 것이다.

이 시기는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기존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철학을 정착에서 공존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계층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데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인종과 소수는 정책수혜 대상으로 인식되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수준의 문화다양성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다만 다양한 논의를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론화한 점에 의의가 있다.

다. 2014년~ : 소수에 대한 문화권 보장 및 사회갈등 해소로 영역 확대

〈표 3-5〉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1조	이 법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기법에 상관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등의 양식에서의 다양성을 포함
제4조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다른 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제6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3년마다 문화다양성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제7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행 평가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둠
제10조	정부는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 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도록 함
제11조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하고, 문화다양성의 날부터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함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문화시설을 조성 또는 지원할 수 있음
제1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자료 : 법제처(www.law.go.kr)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4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상하게 되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총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유네스코 협약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의 정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작성과 제출, 문화

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문화다양성 논의가 본래 문화권 보장에서 기초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표현하고 감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역점을 두었다. 문화다양성 정책의 영역이 그간 이주민 지원정책인 다문화에 국한된 인식이 강하였으나 탈북자, 여성, 장애인 및 노인, 청소년 등 사회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집단을 포괄하도록 하고, 소수자 표현 증진 및 문화적 접근성 기회 제공에 방점을 두고 있다. 동 법률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에서는 '소수문화 계층에 대한 문화적 소통 강화'를 주요 업무로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직속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조사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문화다양성의 날'(5.21, UN 총회 지정) 및 문화다양성 주간(다문화 영화제, 축제 등)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선주민 간 문화교류 및 소통 확대, 이주민, 국내 체류 외국인 등 다국어사전·한국어 교재 지원, 한국어⇌외국어 쌍방향 소통을 위한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추진도 있다.

실제로 2002년 UN 총회에서 5월 21일을 '세계문화 다양성의 날'로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국으로써 문화다양성법에 근거하여 '문화다양성 주간'을 2015년부터 지정, 운영하고 있다. 매년 5월 21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며, 국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전시, 공연, 학술행사, 캠페인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전국에서 펼쳐진다.

2016년 업무계획에서는 보다 사회수용성 제고에 집중하여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및 문화적 공존 실천'을 주요 업무로 보고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문화다양성의 날(5.21) 및 문화다양성 주간을 운영하고 대상별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였다. 특히 무지개다리

사업을 확대하여 소수문화·세대문화·다문화 등 지역 내 다양한 문화주체 간 문화예술교류 및 소통 증진 프로그램 지원(23개 지역)하고, 문화다양성 관련 대상자 범위를 확대시켜, 청소년·예술인·일반인 등 대상 통일문화 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정책사업으로는 '무지개다리사업','문화예술교육정책 및 사업','장애인 문화·체육 활동 지원사업', '독립 영화 및 음악 산업 지원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국내 비준에 대한 후속조치로 '문화다양성 법' 뿐만 아니라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의 제정으로 법적근거를 정비하였다.

〈표 3-6〉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법적근거 정비 내용

법령명	제정이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2014.5.28., 제정)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기본법 (2013.12.30. 제정)	현행 문화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교육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치우쳐 있어,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는바,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지역문화진흥법 (2014.1.28., 제정)	현행법 체계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 · 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함

자료 : 법제처(www.law.go.kr)

그간 소수 특히 이주민에 대한 복지 차원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 제고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다양한 삶의 방식과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나, 문화다양성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장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책 실천단계에서 다소 추상적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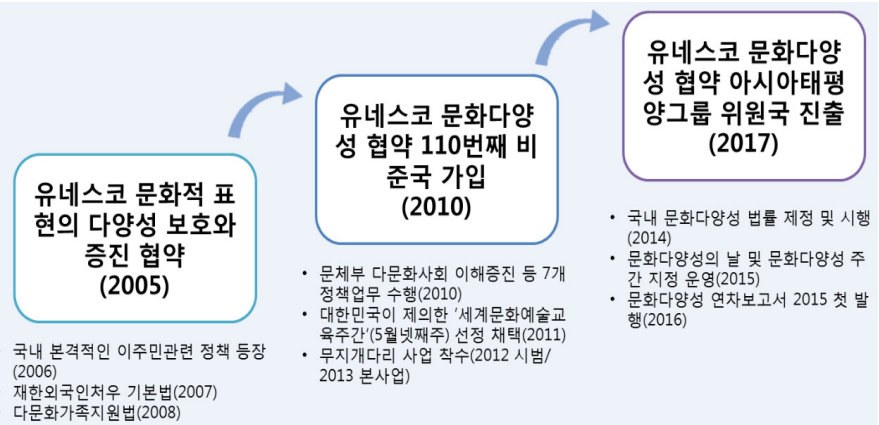

[그림 3-1]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과정

우리나라는 제6차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 당사국 총회(2017. 6. 12.~15. 파리 유네스코 본부) 기간 중에 시행된 2017~21년 임기의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 간 위원회 선거에서 위원국으로 선출되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은 145개국인데, 이 중 위원회는 24개 국으로 구성되며 위원국들은 대륙별로 6개 그룹으로 활동하는데, 향후 중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그룹 위원국으로서 국제사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서 선도적인 역할이 부여되었다. 이에 문화다양성 협약의 적용 및 이행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문화다양성 협약의 목적 및 원칙 달성을 위한 절차와 협의 체계를 발굴하는 등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노력이 보다 요구된다.

제2절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1.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정책

정부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 자료제출을 요청한 결과 총 11개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6년 문화다양성 사업성과를 제출하였다.

〈표 3-7〉 2016년 중앙부처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정부부처	분류별 사업 수								문화다양성 사업 예산 (백만원)	부처 예산 규모* (백만원)	전체 예산대비문화다양성 사업 예산 (%)
	① 가치확산	② 문화기본권신장	③ 공감대형성및갈등해소	④ 정책추진체계구축	⑤ 정책개발	⑥ 국제문화교류	⑦ 기타	계			
문화체육 관광부	22	57	17	1	3	55	3	158	527,282	5,494,800	9.59
교육부	7							7	17,114	55,745,917	0.03
법무부	2							2	337	3,046,273	0.01
농림축산 식품부	1							1	500	14,288,300	0.003
고용노동부	1							1	504	17,292,000	0.003
여성가족부	1	2				1		4	45,425	649,122	6.99
보건복지부							1	1	348	55,843,600	0.0006
외교부						2		2	400	2,171,300	0.018
행정자치부		3						3	1,657	36,883,400	0.004
통일부	3	1	3			1		8	1,849	14,927,000	0.012
방송통신위원회						1		1	34,650	2,273,000	1.52
계	**37**	**63**	**20**	**1**	**3**	**60**	**4**	**188**	**630,066**	**208,614,712**	**0.30**

중앙부처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많은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기본권 신장', '국제문화교류', '가치확산',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정책개발', '정책추진체계 구축' 순으로 정책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사업의 수는 121개(2015년)에서 158개(2016년)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제문화교류 유형의 사업이 21개(2015년)에서 55개(2016년)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에서 예산이 증액된 대표적인 사업은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민의 문화향유 시설 접근성을 확대하고 문화양극화를 해소하고 있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 있다. 80억에서 150억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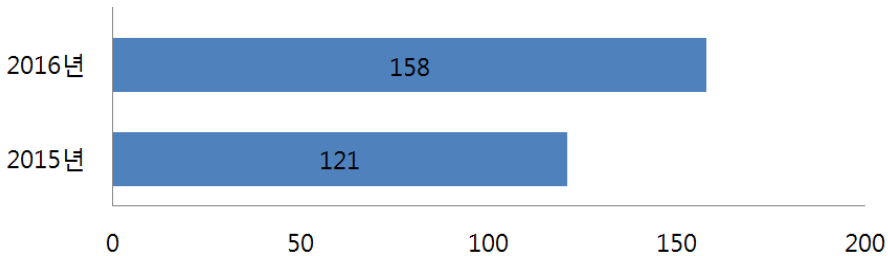

[그림 3-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수(2015년과 2016년 비교)

그 밖에 문화가 있는 날 운영사업과 전통문화 진흥사업, 한스타일 육성지원사업,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사업,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확대사업, 인생나눔교실 사업 등이 확대되었다.

중앙정부는 각 부처별로 소수문화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사업들을 추진하며 문화기본권을 신장하고 있다. 주요부처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교과 집필진,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을 위해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정책 사업으로 세계시민교육 확산사업,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등이 있다.

법무부는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이민정책 이해과정을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축산, 농촌개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특성에 맞게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으로 농촌축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익증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다문화가족 지원 등 문화다양성협약과 관련한 정책을 이행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국민다문화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청소년 국제교류를 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 복지, 사회보장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로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보건의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국제문화교류를 중점으로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퀴즈 온 코리아, 2016 지구촌 한국의 맛 콘테스트 사업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북5도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연령과 정착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사회활동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세부정책 사업으로는 한국문화정서과정, 이북전통문화 계승과정 운영 등이 있다.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홍보 등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남북교류협력 정책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으로 아리랑 국제방송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을 6가지 유형으로 봤을 때, 문화기본권 신장 유형과 국제문화교류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가치확산 유형과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유형 또한 다수 추진되었다. 이에 반해 정책 개발 사업은 3건,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은 1건으로 현저히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8〉 중앙부처 문화기본권 신장 유형 정책 사업 수

구분	다문화 이주민	북한 이탈 주민	여성	성 소수자	장애인	어린이 및 청소년	노인	지역·전통 문화	사회 취약 계층	문화 소외 계층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7	1	1	1	18	9	9	4	7	12	5
기타 중앙부처	2	4	–	–	–	–	–	–	–	–	–
합계	**9**	**5**	**1**	**1**	**18**	**9**	**9**	**4**	**7**	**12**	**5**

소수자 대상별로 문화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한 정책 사업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다수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함께 누리 지원 사업, 장애청소년 국악강좌, 장애인 대상 미술관 교육, 장애인체육 인식개선 프로그램,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개선 사업 등이 있었다. 타 중앙부처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업이 4건, 다문화이주민 사업 2건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에서는 성소수자나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위한 사업이 다른 소수문화를 위한 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정책

〈표 3-9〉 2016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현황

연번	지방자치단체	분류별 사업 수								문화다양성 사업 예산 * (백만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 (백만원)	전체 예산대비문화다양성 사업 예산 (%)
		① 가치확산	② 문화기본권 신장	③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④ 정책추진체계 구축	⑤ 정책개발	⑥ 국제문화교류	⑦ 기타	계			
1	서울특별시	35	94	18	3	6	10		166	223,268.15	29,272,794	0.76
2	부산광역시	53	172	58	30	6	31	21	371	59,747.04	11,147,652	0.53
3	대구광역시	50	37	20	1		8	9	125	25,691.1	7,222,588	0.35
4	인천광역시	47	62	12	6	4	9		140	58,140.6	8,531,672	0.68
5	대전광역시	4	16	7	4	3	4		38	5,678.85	4,312,802	0.13
6	울산광역시	2	84	16	1		5	3	111	3,429.6	3,397,293	0.1
7	광주광역시	14	48	7	2	1	3		75	6,455.95	5,917,300	0.1
8	세종특별자치시	1	12	1			1		15	1,188	1,194,523	0.1
9	경기도	27	48	22	5	2	8	6	113	35,247.08	20,818,803	0.17
10	충청북도	20	48	13	8		12	1	102	16,836.991	4,190,340	0.40
11	충청남도	33	43	22	2	1	5	1	111 (중복4)	5,601.27	6,001,370	0.09
12	전라북도	15	36	12	2		3		68	7,677.4	5,636,160	0.13
13	전라남도	9	39	11	3	5	3	1	71	6,782.3	6,884,895	0.09
14	경상북도	7	25	5			10		47	5,831.7	8,529,708	0.07
15	경상남도	10	13	11	3		2		39	2,121.561	7,542,890	0.03
16	강원도	6	6	2	2		6		22	5,889	5,871,775	0.1
17	제주도		3						3	2,127	4,606,950	0.04
	계	**334**	**786**	**238**	**73**	**28**	**121**	**37**	**1617 (중복4)**	**471,713.59**	**135,084,146**	**0.35**

위의 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유형별 문화다양성 정책 수 및 예산을 정리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 정도와 참여 의지에 따라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제출한 자료는 부산시가 3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시가 166건, 인천시가 140건으로 많았다. 그리고 제주도가 3건으로 가장 적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문화 기본권 신장 유형의 사업이 786건으로 타 유형의 사업들에 비해 가장 많이 추진되었다. 이를 소수자 대상별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 다문화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방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콘텐츠를 발굴·개발하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사업들을 펼친 것을 알 수 있다. 뒤 이어 성소수자 대상 사업은 0건, 북한이탈주민 대상 사업은 18건순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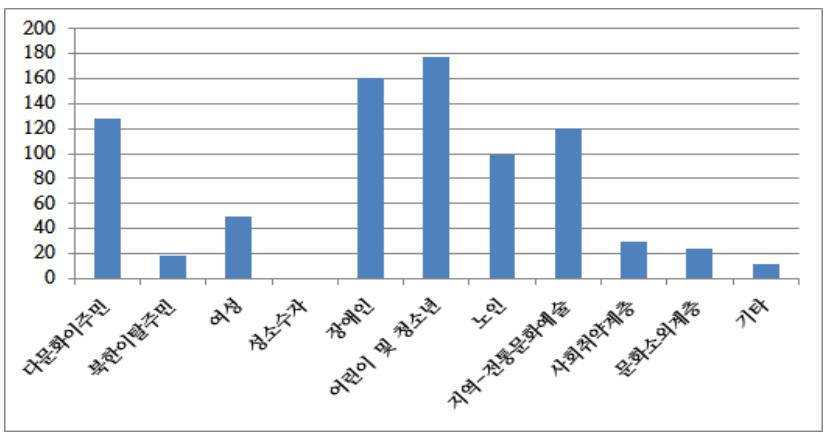

[그림 3-3] 지방자치단체 문화기본권 신장사업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사업이 총 334건으로 문화 기본권 신장 사업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추진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역축제나 문화예술교육·체험 행사를 다수 추진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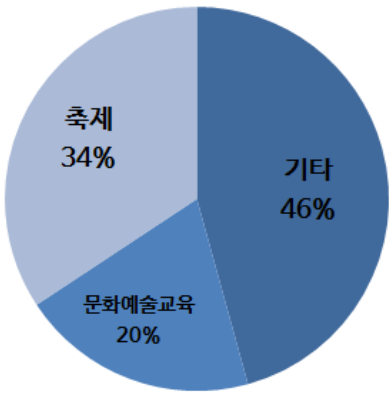

[그림 3-4] 서울특별시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사업 성격에 따른 분류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사업의 경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균 14건 정도를 추진했지만 부산시에서 58건, 충청남도에서 23건을 추진하여 총 합계는 238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국제 문화교류 사업의 경우 부산시에서 가장 많이 추진하여 31건이 추진되었고 충청북도에서 12건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며 총 121건이 추진되었다. 이어서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은 73건, 정책개발 사업은 28건으로 가장 적게 추진되었다.

이처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 기본권 신장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했으며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사업도 다수 추진되었다. 반면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 정책개발 사업 정책의 추진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사업의 유형 구분은 자료를 제출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제출한 것이다. 그러한 예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은 충청북도·강원도는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사업, 부산시·대전시·세종시는 문화 기본권 신장 사업, 서울시·경상남도는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사업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표 3-10〉 문화다양성 담당자들의 상이한 사업 분류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3	2	–	2	–	2
통합문화이용권지원	2	1	3	2	2	2

1: 인식개선 및 가치확산 사업 / 2: 문화 기본권 신장 사업 / 3: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사업

그리고 사업 내용의 특성을 판단하는 개별 기준이 모호한 사업의 경우에는 제출 이후 사업의 유형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서 담당자의 사업 분류 모호성으로 인해 기타 사업으로 제출된 자료 중 전라남도의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보면,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 기본권을 신장시키므로 문화 기본권 신장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우선적으로 제출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에서 자료를 취합할 수 있었다.

3. 문화다양성 사업의 성과와 진단

가. 중앙 및 지자체 사업 운영체계 상 효율성 제고

문화다양성 사업은 중앙 내 10여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으며 17개 지자체에서도 지역사업을 운영 중이다. 따라서 정책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문화다양성 법률에 따르면 문화다양성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나 현재 여건상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정점으로 하여 유관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중심적 실행부처이다. 이들 부처는 각각 위원회와 법률(출입국관리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외국인근로자 고용법률 등)을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수혜대상이 제한적이기에 중복수혜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러 부처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중복과 유사사업추진을 최소화하고 부처 간의 정보공유 및 사업연계 등 긴밀한 네트워킹이 필요하며, '중복사업 간 개선조정', '사업기능통합', '사업대상 조정을 통한 사업통합' 그리고 '공통사업 간 연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사업도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을 전제로 하기에, 지역의 자율성이 약하고 중앙정부와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추진사업에서 유사성 및 중복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앙부처 간의 조정기능을 마련하고 운영방안을 살펴야 한다.

문화다양성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내 통합운영과 함께 광역지자체의 재정과 역량에 비추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문화다양성 사업 초기과정이기에 중앙정부의 일정한 정책적 영향력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기존 사업의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지역실정이 고려되는 추진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과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모색

대다수 사업에서 자체 내 모니터링이 수행되고 있지만, 행정위주의 운영으로 실질적인 피드백 역할을 하기에는 제한적인 한계점을 보인다. 문화다양성 사업의 질적 제고를 위해 다양한 관련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세미나, 워크숍 등의 방식을 지양하고, 각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지표를 마련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따라 소수민의 현황은 상이하고, 운영시스템과 지역여건이 차이가 있기에, 지방자치단체 마다 지역특성이 반영된 소수자그룹에 대한 나름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문화다양성 정책은 관련 추진조직의 구조와 협력체계가 지역의 여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

는 자체적으로 적절한 사업개념을 구상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부처 중심의 운영은 개별적인 지역적 특성에 맞춘 정책개발을 하기에는 어렵고 오히려 획일화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사업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다양성 사업은 지역 차원에서 운영뿐만이 아니라 연구기관과의 협력 하에 연구기획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다. 문화다양성 수행 기관 간의 조정 및 연계 강화문제

문화다양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정 및 연계에 있어서 문화다양성 지역위원회 및 운영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과정상의 합의 도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 관련 센터에서는 관련 교육훈련 등을 일원화하는 것을 모색하여 사업업무의 허브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행정업무 중에서 외국인 이주민 대상사업은 주요한 분야이나 이를 넘어 문화 내 다양성 측면으로 확대를 추진하여야 한다. 외국인 이주민 사업의 경우 다수 부처 간의 융합행정체제로 조직의 통합운영이 필요한 영역이다. 반면에 국내 소수문화의 증진과 관련 된 경우 문화체육부로서 전담부서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행정업무는 연관업무 담당기관 간의 협력네트워킹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운영이 필수적이다. 국내사회의 다문화 추세에 따른 다원화현상은 부서 간 정보교환 및 협력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중앙 차원에서는 기획과 조정을 담당할 범부처적 상설조직단위가 필요하다. 지역 차원에서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수평적으로, 상하조직 간에 수직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협력을 끌어내고 이를 조직화하는 연계기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라. 정책 내 시혜성, 일회성 성격 사업조정 방안

관련 중앙 및 지자체 내 사업조사에서 현재까지의 문화다양성 업무는 소수자 그룹에서 특히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지원과 시혜성 사업이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 사업은 이전 다문화가족 지원의 연장성 안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전의 다문화 사업과 차별성 없이 외국인 이주민정책으로 고정됨으로써 우리 사회 내 다양한 소수민의 문화증진 및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그 가능성을 발굴하고 촉진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표 3-11〉 지방자치단체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유사 사례

	인천시	대구시	경기도	전라남도
사업유형	공감대 형성 및 갈등 해소 사업	공감대 형성 및 갈등 해소 사업	문화 기본권 신장 사업	공감대 형성 및 갈등 해소 사업
사업명	다문화가족 전통문화 체험	장 담그기 좋은날	우리교실 "우리가족 건강밥상 만들기"	다문화 음식체험전 및 가족사랑 캠페인
사업대상	다문화이주민	다문화이주민	다문화이주민	지역주민
사업내용	전통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문화의 이해도를 높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전통문화체험의 기회를 통해 한국문화 이해하게 함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음식을 직접 만들게 하여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문화 음식 체험 및 문화체험으로 다양한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이해하고 편견을 해소, 공동체 의식 고취

특히 현재 운영 중인 문화다양성 사업에서 일회성, 시혜성 사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1~3년 단기사업으로 추진되어 성과축적의 어려움이 노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원사업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어 선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중앙 및 지자체 문화다양성사업관련 평가체제를 통해 현황파악과 개선의견을 수렴, 제도화하는 과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다양성사업 평가를 통해 점차적으로 시혜성 및 일회성 사업수행을 줄이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2〉 전라남도 문화다양성 신규사업 수(3년 이내)

사 례	
유형	3년 이내 신규사업 수
가치확산	3
문화기본권 신장	6
공감대 및 갈등해소	2
정책 추진체계 구축	–
정책 개발 사업	5
국제문화교류	2
합 계	**18**

자료: 전라남도 내부자료

마. 중장기적 관점에 기반한 목표 설정 및 예산운영

문화다양성 사업운영 시 사업의 특성상 중장기적 목표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초기 단계부터 사업 진행을 반영한 지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이후 사업추진의 본격적인 안정화단계에서 질적 효과를 반영한 성과지표를 균형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표 3-13〉 2016년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자료에 따른 문화다양성 정책 예산 현황

분류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수	문화다양성 정책 소요 예산(백만원)	전체 예산 규모 (백만원)	전체 예산대비문화다양성 사업 예산 (%)
문화체육관광부	158	572,659.79	5,494,800	10.42
기타 중앙부처	30	102,784	203,119,912	0.05
지방자치단체	1,629	471,166.78	135,084,146	0.35

문화다양성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설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부처별 정책 환경의 변화 및 정책대상의 수요, 소수문화의 접근성 및 국민수용성 등 다양한 요인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다양성 이해제고 및 가치관 조성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에, 사업의 수행단계별 특성 및 성과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망하고 합리적, 체계적으로 성과지표를 구상하고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다양성의 정책대상은 특정한 소수집단의 지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공동체 전체관점에서 지원 및 비용지출의 합리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소수자 그룹에 대한 시혜적 조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소수그룹이 사는 지역과 그 곳의 사회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개입은 최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바.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의 정립 모색

문화다양성사업은 기존 다문화정책의 틀 내에서 많은 사업이 수행되고 있기에, 동화지향적 정책을 전환하고 사업의 중복 및 분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수행 기관 간에서도 사업의 기능과 역할이 다소 차별적이기는 하나 사업 취지와 운영에서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업대상자들이 공통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수행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연계 등 긴밀한 네트워킹이 요구된다.

사회 내 다문화 환경변화에 따라서 향후 문화다양성 정책대상을 포함하여 정책범위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확산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다문화가정과 같은 소수집단지원으로 역차별과 특혜성 논란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정책대상에서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노동자 중심의 복지정책 뿐만이 아니라 국내 다양한 소수집단에 대한 정책방향의 전환과 이들의 활동증진에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제3절

관련 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인식조사

1. 문화다양성 정책운영 평가

가. 설문조사 개요

문화다양성 정책이 지역사회에 안착하고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담당공무원과 사업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조사는 문화다양성 관련 공무원 및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사업 현황 및 기초정보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문항은 이들의 문화다양성 인식수준, 기존 문화다양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 문화다양성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과 개선사항 등 4쪽으로 구성되었고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는 지역별 공무원과 사업담당자 55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조사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4〉 문화다양성 설문조사 개요

항목	설문 내용
목적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대상	지역별 관련 공무원 및 무지개다리사업 담당자
기간	2017년 7월 1일~9월 15일
내용	문화다양성 사업 평가 및 추진방향 •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인식 (3문항) • 기존 정책 · 사업 평가 (13문항) • 향후 정책 · 사업 추진방향 (7문항)
방법	이메일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	55명

나. 설문 분석 결과

1) 문화다양성 정책관련 인식수준 (3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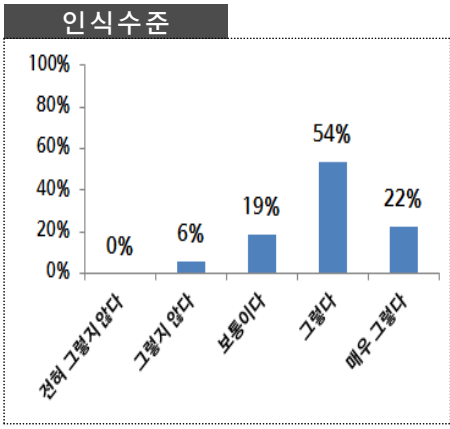

[그림 3-5] (중요성)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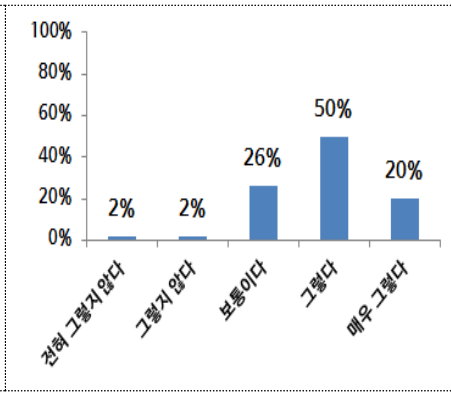

[그림 3-6] (가능성) 문화다양성 정책적 노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대한 응답

① [문항] 문화다양성 정책은 타 문화정책이나 복지사업에 비해 더욱 본질적이고 시급한 분야이다.

응답자 중 76%는 문화다양성 사업이 타문화정책과 복지사업에 비해 본질적이고 시급한 분야라고 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견해는 6%에 불과하였다.

② [문항] 정책적 노력으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없는 상생사회 구현이 가능하리라 본다.

응답자들 70%는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없는 상생사회 구현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 반면 4%는 정책적 노력으로 상생사회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③ [문항] 현재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기존의 다문화 정책과 분명히 구분된다.

현재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설문에서 44%의 응답자가 기존 다문화 정책과 차이가 있다고 보았으며, 반면 정책적 차별성이 없다는 의견이 17%로 조사되었다. 설문 의견 중에는 "초기에는 다문화 사업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정책목표와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제 막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담당자들은 다문화 정책과 혼동하거나 정책 목표에 대해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하였다. 그 외에 향후 문화다양성의 차별화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개선에 보다 치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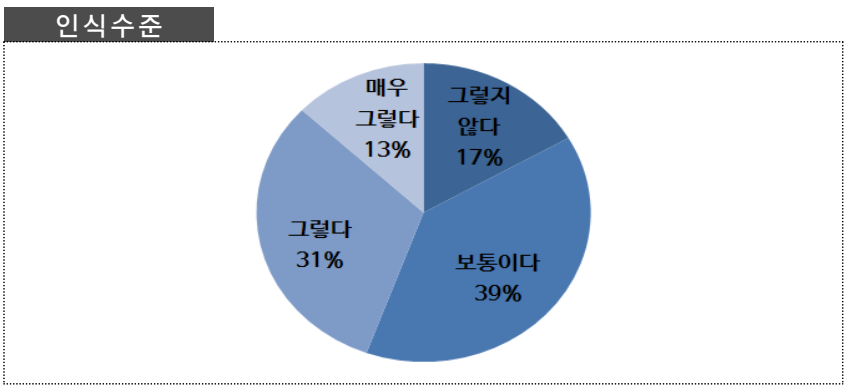

[그림 3-7] (차별성) 현재의 문화다양성 정책과 기존 다문화 정책 차이의 인지도

2) 문화다양성 기존 정책 사업 평가 -정책 정합성(4문항)

① [문항] 각 사업과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 정책목표에 충분히 부합한다.

문화다양성의 주요 정책목표와 세부사업 내용이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응답자 56%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고, 4%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했다. 부합한다는 이유로는 "소수자들의 인권신장 및 일반국민들의 인식 개선 등에 맞게끔 이뤄짐", "무지개다리사업이 가치지향적이고

네트워크중심으로 구성됨",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정책적 방향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음"이라고 답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은 "기존 정책과 프로그램 간 유사성을 띄는 경우가 있음",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음", "각 사업과 프로그램이 현장성이 반영되지 않고 기획자에 의해 생산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그림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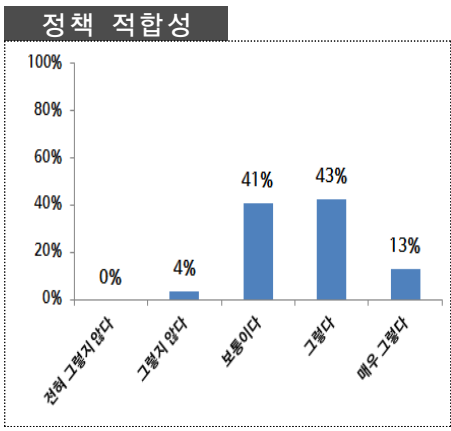

[그림 3-8] (목표) 각 사업 및 프로그램 세부 내용이 정책목표에 부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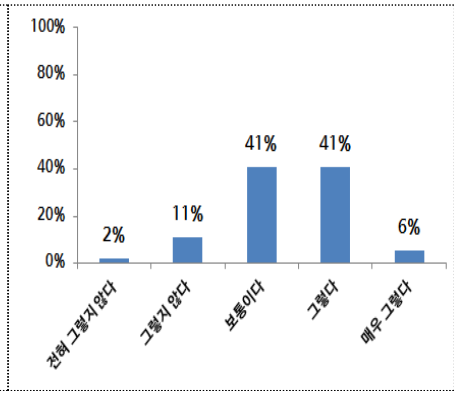

[그림 3-9] (가능성) 문화다양성 정책적 노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대한 응답

② [문항] 각 소수자별 상황과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

소수자별 상황과 특성의 반영과 관련하여 응답자 중 47%는 그렇다는 답변을 주었고, 부정적인 답변은 13%였다. 설문조사에서 "소수자의 특성을 다양성 사업에 반영하고자 면담과 조사를 실시함",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함", "소수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추구하고 있음"이란 의견이 있었고, "사전조사와 인터뷰만으로 한계가 있음", "소수자 대상으로 사업하기가 어려운 조건들이 많아 중앙에서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함", "문화소수자에 대한 현황파악이 미비함"이라고 적은 답변도 있었다([그림 3-9]).

정책 적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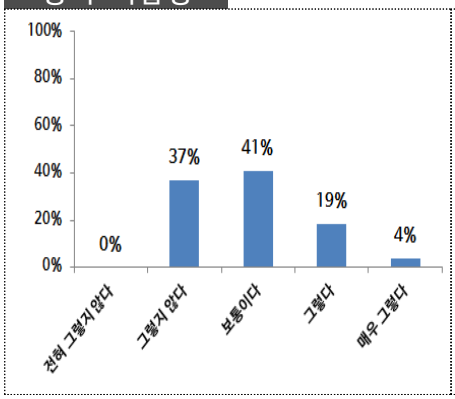

[그림 3-10] (균형) 특정 소수자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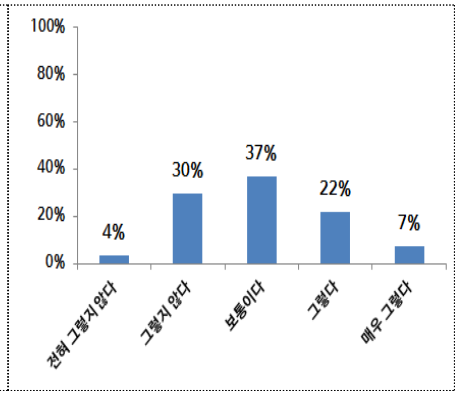

[그림 3-11] (체계) 사업 추진조직과 담당자가 적절하게 구성 및 배치

③ [문항] 특정 소수자에 대한 편중 없이 균형 잡힌 사업이 추진되었다.

특정소수자에 대한 편중 없는 정책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응답자 23%만이 긍정적으로 보았고, 37%의 응답자는 부정적인 답변을 주었다. 많은 응답자들은 사업추진이 특정소수자인 결혼여성 혹은 다문화가정, 이주민, 장애인에 편중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성소수자 및 일부 소외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보충 의견으로 각 대상별 소수자의 실태를 현실적으로 파악해야하는 점과 소수자들과 상호소통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사업 추진을 조언하기도 하였다.([그림 3-10])

④ [문항] 사업 추진조직과 담당자가 적절하게 구성 및 배치되었다.

사업추진조직과 담당자의 적절한 구성 및 배치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긍정적인 답변(29%)보다 부정적인 답변(34%)을 하였다. 무엇보다 다양성업무 담당직원수의 부족, 사업조직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추진 내 전담

인력 배치의 문제도 언급됐다.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담당자의 순환보직, 계약직의 짧은 근무기간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문제로 제시했다. 또한 다양성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업무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업무분야 지식 및 정보습득을 위한 교육제공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일부 의견에서 문체부와 문화예술위원회, 광역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및 기초문화재단 간 문화다양성 사업추진조직의 명확한 구성과 배치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사업인력에 다수를 차지하는 파견직 및 계약직 배치는 사업리스크를 갖는 요소로, 사업처간 역할,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시급하다는 견해가 있었다.([그림 3-11])

3) 문화다양성 정책 연계성(2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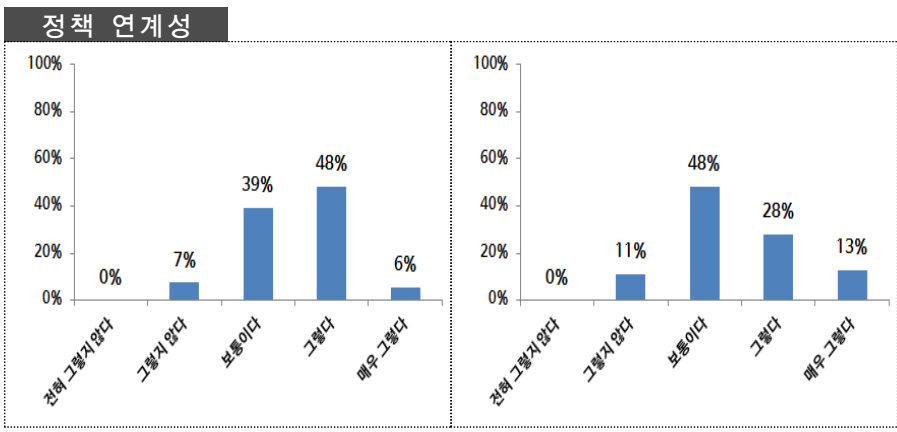

[그림 3-12] (주체)사업 추진기관(혹은 조직) 간 충분한 연계·협력

[그림 3-13] (사업)개별 사업끼리 긴밀하게 연계·추진

① [문항] 사업 추진기관(조직) 간 충분한 연계·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 추진 기관 간 연계 협력에 대하여 응답자 54%는 긍정적인 답변

을, 7%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조사에서 무지개다리사업이 기관과의 관계 맺기 등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별 사업기관 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점, 특히 문체부, 예술위, 기관담당자들 간 소통 및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수의견으로는 "권역별 광역단위 추가적인 협력체계 구축", "중앙과 지자체 간 공무원 담당자의 소통창구가 필요함", "문체부-여가부-통일부-교육부 등 정부 부처 간 통합조정 및 총괄협력이 필요함" 등이 있었다.([그림 3-12])

② [문항] 개별 사업끼리 긴밀히 연계·추진되고 있다.

개별 사업 간 연계추진의 문항에서 응답자 41%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고 11%는 그렇지 않다는 답을 주었다. 무지개다리사업의 경우 자문위-실행위-라운드테이블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호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간행사,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개별사업 및 담당자 간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고 답했다. 반면에 부처 간 소통이 미흡한 점, 지역특성에 맞게 통합적인 정책개발 및 전략수립 측면이 부족한 점, 사업성격에 따라 인력・예산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해 추진 애로가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림 3-13])

4) 문화다양성 정책 지속성, 실효성 (6문항)

① [문항] 각각의 사업이 중장기 비전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장기 비전 아래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 44%가 그렇다고 답했고, 15%는 부정적 평가로 나타났다. 무지개다리사업의 경우 2016년부터 3년 다년 지원으로 변경한 점, 문화다양성 연구학교의 경우 2년 지원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 단계적으로 절차별 프로그램의 구성기획과 진행추진은 중장기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에 반해 담당인력의 인사이동,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 부족, 공모사업의 한계, 외부환경요인, 현장의 애로점 등으로 중장기적 사업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그림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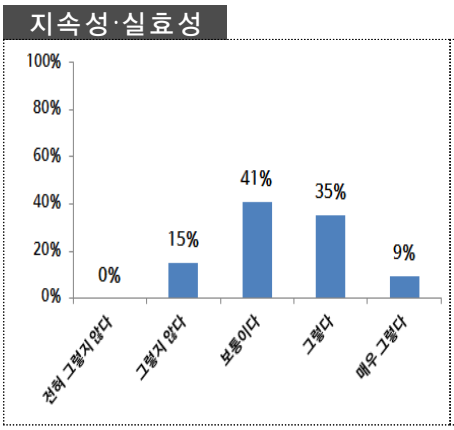

[그림 3-14] (계획)각각의 사업이 중장기 비전 아래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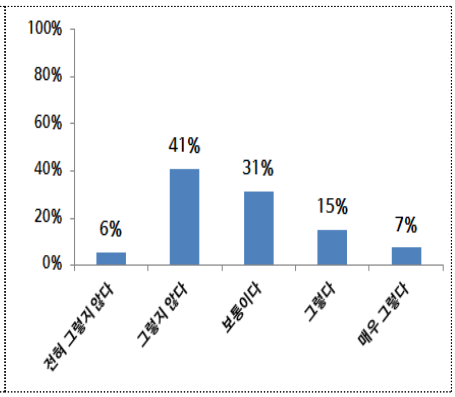

[그림 3-15] (예산)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② [문항]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다.

사업 추진 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답변(22%)보다 부정적인 평가(47%)가 높게 나타났다. 의견조사에서 무지개다리사업주관(문화예술위원회, 광역시도 지역문화재단 및 기초문화재단)재원의 경우 중앙정부의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매년 기관지정 및 심의를 통하여 선발하게 됨에 따라 전년도에 예산계획을 책정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각 사업주최는 무지개다리 사업 심의 결과 발표 후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한 예비비 또는 추경을 통하여 사업예산(자부담)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며, 중앙정부의 민간경상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의 특성에 따라 매년 삭감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가다보니 매년 재원확보와 기획에 대한 심사를 받고 사업을 하기에 재원확보에 대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문제점, 그리고 심사의

특성상 기획의 참신성을 계속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주체와 사업의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쉽지 않음을 언급했다. 따라서 소수자 대상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함이 요구되었다. ([그림3-15])

지속성·실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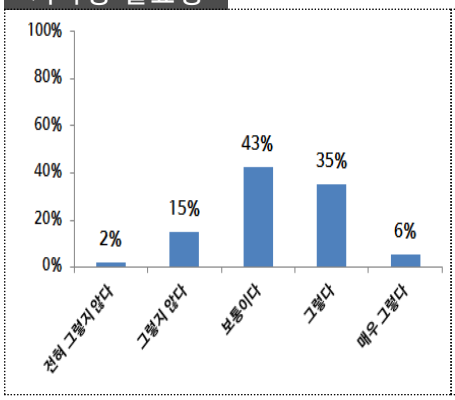

[그림 3-16] (이해)사업 추진 결과
소수자 집단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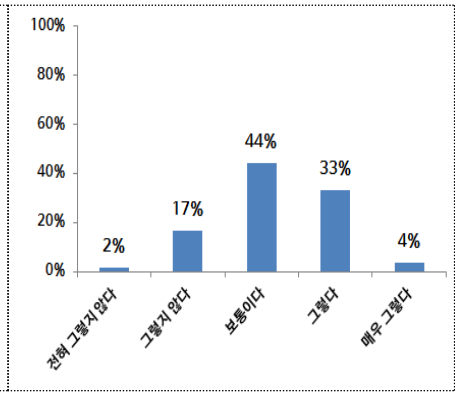

[그림 3-17] (소통)사업 추진 결과
소수자와 다수자 간 소통기회 확대

③ [문항] 사업 추진 결과 소수자 집단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한층 증진되었다.

소수자집단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41%,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17%로 조사되었다. 아직까지 전 국민적으로 이해도가 확산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정책추진자와 언론 등에 의해 과거보다는 전반적으로 증진되었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 캠페인, 체험 및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 소수자 이해에 발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자체평가와 함께, 다수자에 대한 소수자의 인식개선 프로그램 보다는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고, 소수단체 간 네트워크 참여도가 높은 편이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그림 3-16])

④ [문항] 사업 추진 결과 소수자와 다수자 간 소통기회가 충분히 확대되었다.

소수자와 다수자 간 소통기회가 확대되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중 37%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19%로 나타났다. 무지개다리사업 및 유럽단편영화제, 세계음식축제 같은 행사를 계기로 소통기회가 보다 마련되고 귀촌예술인과 지역주민 간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요청되는 등 프로그램이 다채로워지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벤트성 행사추진보다는 상호간 편견 및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점진적인 접근성이 필요하다는 점, 소통이라기보다는 아직은 이해증진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 아직까지는 다수자들이 소수자들을 찾아가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림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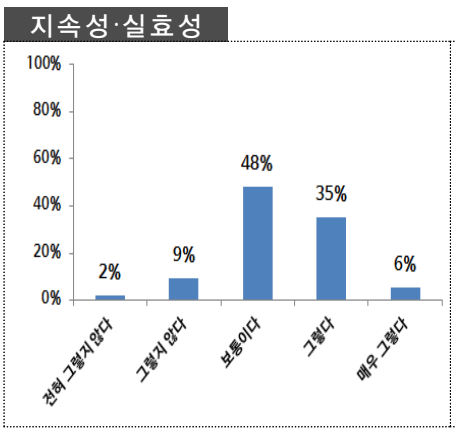

[그림 3-18] (인식)사업 추진 결과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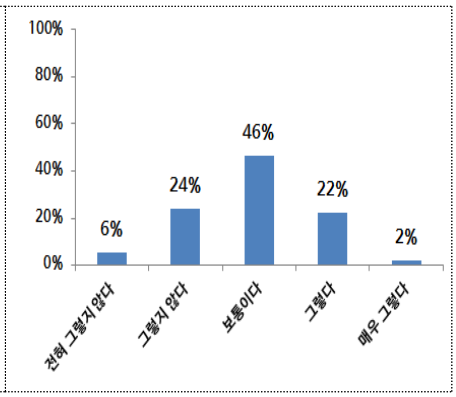

[그림 3-19] (활동)사업 추진 결과 소수자의 사회적 영향력 증진

⑤ [문항] 사업 추진 결과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이 제고되었다.

사업추진으로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이 제고되었다는 설문에 응답자들의 41%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11%가 부정적인 평가

를 내놓았다.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및 521한가지약속캠페인, 문화다양성교육, 무지개다리사업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사업 등을 통해 가치에 동감하고 인식하는 사람은 늘었지만, 전 국민적으로 인식이 제고되었다고 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사업 참여자가 한정되어 있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알리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하고, 인식개선을 넘어 구체적 실천의 현실적인 과제가 남아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그림 3-18])

⑥ [문항] 사업 추진 결과 소수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충분히 증진되었다.

소수자의 사회적 영향력 증진과 관련하여 긍정적 답변(24%)보다는 응답자들 중 30%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퀴어 문화축제와 같이 소수자들의 축제나 사회에서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일정부분 커졌음을 알 수 있지만, 소수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제도적 여건이 부족한 점, 소수자 연대가 제약된 환경에서 사회전반에 걸쳐 영향력이 증진되는 결과를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표명했다. 또한 현재의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비판과 소수자의 성향에 따라 편차가 큰 점도 향후 보완할 점임을 지적하였다. ([그림 3-19])

5) 정책 평가수치

〈표 3-15〉 기존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

기존 정책사업 평가수치

항목	응답
1점	0
2점	7
3점	56
4점	33
5점	4
평균	**3.3점**

① [문항] 기존 정책·사업을 총평한다면 5점 만점에 ( )점 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들 중 56%가 3점을 주었고, 33%가 4점, 7%가 2점으로 각각 답하고 있다. 5점을 기준으로 3.3점으로, 이는 100점으로 환산 시 평균 점수 “66점”으로 평가된다.

6) 문화다양성 향후 정책, 사업 추진방향 (5문항, 복수응답)

① [문항]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은 차별과 배제를 당한다고 생각되는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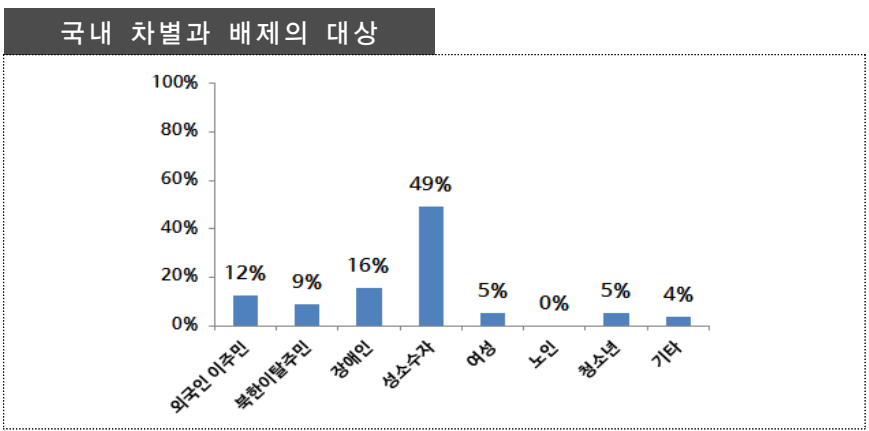

[그림 3-20] (가치)국내 차별과 배제의 대상

② [문항] 현재 문화다양성 사업이 가장 불충분하게 추진되고 있는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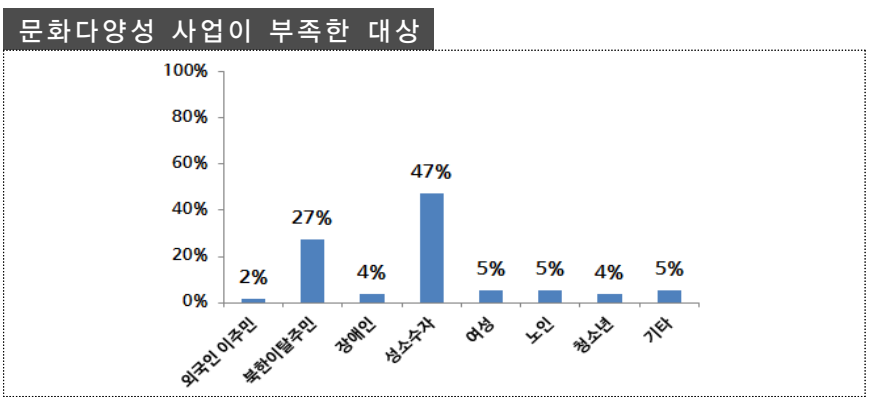

[그림 3-21] (현실)문화다양성 사업이 부족한 대상

국내에서 가장 많은 차별과 배제를 당한다는 소수자를 순위별 비중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성소수자'(49%), '장애인'(16%), '외국인 이주민'(12%), '북한이탈주민'(9%)순으로 평가하였다. 기존 사업의 정책대상에서 부족한 소수자를 살펴보면 '성소수자'(47%), '북한이탈주민' (27%)순으로 뽑았으며, 차별·배제를 당한다는 조사항목에선 '노인'(5%), '여성'(5%), '청소년'(4%)이 낮게 나왔다.

'성소수자'의 경우 차별을 당한다는 항목이나 정책지원측면에서 타 대상에 비해 모두 소외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향후 이들에 대한 대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사업추진에서 주요한 지원대상자로 '외국인 이주민', '장애인', '청소년'이 조사되었고 이들에 다소 편중되어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③ [문항] 한국사회가 문화다양성 구현을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

국내 문화다양성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집중해야할 분야로 응답자들은 국민 이해도 증진(39%)을 뽑았고, 다음으로 소수자문화에 대한 인정과 수용확산(26%)을 선택하였다. 상호간의 소통기회확대(19%), 인권증진과 평등의식 함양(17%)이 그 뒤를 이었다.([그림 3-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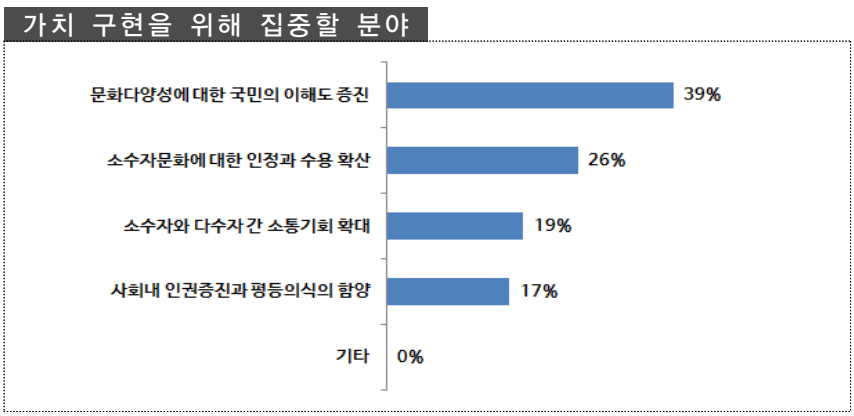

[그림 3-22] (가치)문화다양성 가치 구현을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

④ [문항] 기존의 문화다양성 사업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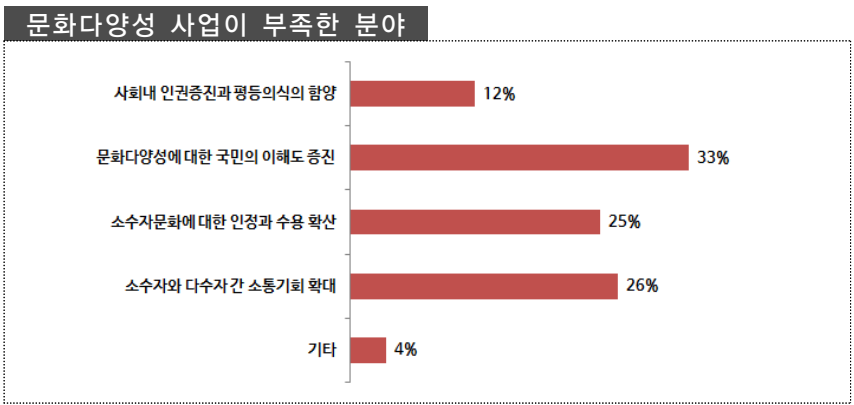

[그림 3-23] (현실)기존의 문화다양성 사업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야

그리고 기존사업에서 가장 부족한 분야로는 문화다양성 구현을 위해 가장 집중해야할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민 이해도 증진(33%)이 선택되었고 이어서 상호간 소통기회확대(26%), 소수자문화에 대한 인정과 수용확산(25%)를 뽑았고, 인권증진과 평등의식 함양(12%)으로 평가했다.([그림 3-23])

⑤ [문항] 기존의 문화다양성 정책 및 사업이 지닌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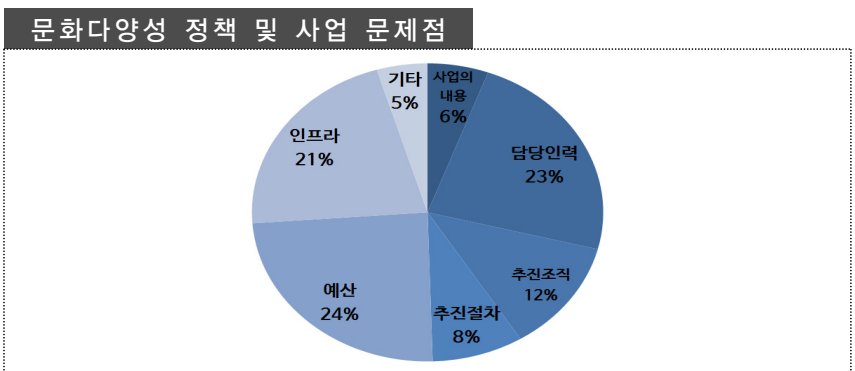

[그림 3-24] 기존의 문화다양성 정책 및 사업이 지닌 문제점

기존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항목에서 응답자들의 24%는 예산부족을 선택했고, 23%는 사업관련 담당인력의 부족, 21%는 인프라 부족으로 답해 비슷한 편차를 보였다. 이들은 문화다양성사업에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와 담당인력, 인프라와 추진조직의 역할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보았다.

7) 문화다양성 향후 주안점 (서술식)

문항	응답 결과
(대안) 21번에서 선택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대안	
향후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추가 의견	

문화다양성 정책의 향후 주안점에 대해서 서술식으로 답변을 받아보았고, 이를 정책 주안점에서 크게 5가지 범주로 정리하였다.

① 국민 인식 제고 방안

- "문화다양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 활동이 필요하다."
- "중앙 각 부처별 업무 협업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성과를 언론매체를 통해 알리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 "소수자 문화에 대한 연구사업을 통해 국민의 이해도를 증진하고 사업의 방향성 설정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
- "사업의 홍보효과보다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함으로 전반적인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왜 강조되어야 하는 지, 문화역사적 고찰 없이는 어렵다."
- "큰 결과를 얻기보다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점진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들이 진행되고 고안되어야 한다."
- "인성초기부터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인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고, 성인을 대상으로는 언론 미디어를 통해 인식제고 홍보가 필요하다."
- "사회적으로 인권증진과 평등의식이 제고될 수 있는 사업이 더 필요하다."
- "인식변화를 이끌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지원과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다."
- "구체적이고 실생활에 와닿는 홍보전략과 내부자의 관심도 향상도 필요하다."

② 정책전달 체계 개선

- "문체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 및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수립과 추진이 고려되어야 한다."
- "담당인력의 전문화와 지속적인 투자로 문화다양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투자로 소수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 "담당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더 많은 네트워크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 “광역시도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문화다양성 증진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를 조직운영하며, 범정부차원의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 “부처 간 유사사업 정비 및 사업 간 연계추진을 통해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 “각 지자체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사업담당자를 육성하여 문화다양성 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직위가 필요하며, 문화다양성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지역성을 담보해 내고 지역 간 상호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 사업의 실행을 전제로 몇 개 광역이 묶인 기획사업을 도출시키고 권역단위로 실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 “문화다양성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영역이기에 부처 간 협조가 중요하다.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발전시켜야 하는데, 지역재단에서만 운영하는 것보다 공익광고, 홍보영상 제작 등 중앙차원에서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 “네트워크 워크숍 등의 인프라가 더 활성화되고, 온라인을 통해 자료 공유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 “사업담당인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과 연계성이 떨어진다.”
- “사업 실행 전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을 알 수 있는 시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했다.”
-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문화다양성위원회가 정부 조직에 마련되어 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③ 사업 운영방안 정비

- “담당전문관 제도의 구축과 균형 있는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지역문화재단을 통한 문화다양성 사업은 지역성과 장소성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이를 유도해 내는 특별한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소수자 문화에 대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유도하고 통합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기획하는 투 트랙이 필요하다.”
- “지자체의 지원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문화다양성 도시’ 선정에 따른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 “다문화 센터 등 각종센터에서만 교류행사 등이 이루어지기에 서로의 영역을 잘 모른다. 여러 계층 및 기관이 함께 모여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 “교육기관의 경우 행정적으로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프로그램개발과 예산관리 등을 모두 교사가 담당하였기에 수업과 행정업무를 동시에 병행해야 했다.”
- “문화다양성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기관담당자들의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 “전문인력 양성 교육 후 사후 지원을 통한 전문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제도권 내 문화다양성 교육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학교 내 정규프로그램이 집중 시행될 필요가 있다.”
- “공공기관별 문화다양성 대상만이 다른 유사사업이 많아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
- “문화다양성에 대해 심도깊은 교육이나 능력을 함양하고 있는 인력을 구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정책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
- “보다 많은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보다 많은 예산 및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담당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이해시키려는 장기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 “정책적으로 고용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거나, 사업 추진 기관의 담당자가 고용안정화 된 담당자로 구성되어야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
- “문화다양성 위원회가 생긴다면, 사업추진 고정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 “사업 추진 전 사업담당자들이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정립과 방향을 설정하도록 충분한 교육과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 “기초 지자체의 유사기관 혹은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유사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유사사업들과의 차별성을 기르거나 민간 추진조직에서 주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 “문화다양성의 담론은 크고 철학적이라 문화부 뿐 아니라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널리 추진되어져야 한다. 현재는 문화부 추진 사업 중 하나로 전담 추진조직이 없으며, 무지개다리사업의 주관처 역시 매년 공모 방식이라 조직 형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④ 평가체계 운영

- “지자체, 현장 관계자, 공공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정책제안 및 문화다양성 정책 포럼을 통한 문제점 공유 및 방향성 모색이 요구된다.”
- “각 재단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지역화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사업계획 시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
- “정책의 피드백을 통한 끊임없는 개선이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⑤ 정책 예산 확보

-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 양성에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
-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입법부에서의 예산 확보를 이끌어 내야한다.”
- “소수자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선행 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 “예산증액을 통해 추진 조직과 사업 내용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 “문화다양성 인식확산과 중요도를 부각시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문화다양성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지자체 예산 등 다양한 경로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문가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 “지자체에서 예산이나 조직을 지원할 재정, 정책, 인력 및 보상 등 다양한 루트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 “실질적인 상황을 반영한 예산이 책정되면 좋겠다.”
- “고용이 불안정해서 사업비를 통해 구성된 인력이 사업 중간에 나가서 사업 단절 및 예산낭비가 반복된다.”
-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많음”

2. 사업 및 프로그램 담당자 분석

이번 문화다양성 설문조사에 응한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은 문화정책 관련부서 3명(5%), 사회복지과 3명(5%), 생활정책부서 3명(5%), 협력개

발부 4명(7%) 및 인권담당관 1명(2%)이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행정 및 경영부서 11명(20%), 문화정책관련부서 21명(38%), 지역문화팀 4명(7%)이었고, 그 외 다문화센터 및 연구소관련 인원이 4명(7%)이었고 무지개다리사업 참여교사 1명(2%)이 포함되어있다.

담당직무를 살펴보면, 문화정책관련인력이 가장 많은 28명(51%)이었고, 행정관련 공무원은 15명(27%)로 다양성사업이외에 일반 행정, 주민자치행정, 지역행사 및 단체관리의 업무를 함께 맡고 있었다. 사회복지 및 생활관련 부서 공무원은 6명(11%)으로 다양성사업이외에 가족, 지역민복지와 청소년, 저출산대책 등 다양한 업무를 함께 하고 있다.

〈표 3-16〉 설문응답자별 담당 기관(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소속기관분류	인원(명)	비율(%)
문화재단	36	65.5%
공무원	14	25.5%
다문화센터/연구소	4	7.3%
교사	1	1.8%
합계	55	100.0%

3. 의견종합과 시사점

가. 문화다양성 정책관련 인식수준

문화다양성 정책이 타 문화정책이나 복지사업에 비해 더욱 본질적이고 시급한 분야라는 문항에 76% 응답자들이 긍정적 답변을 보였고, 그렇지 않다는 견해는 6%에 불과하였다. 정책적 노력으로 사회적 차별 없는 상생사회 구현이 가능하리라 보는 질문에는 응답자 70%가 그렇다는 의견을 주었고, 4%만이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현재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기존의 다문화 정책과 차별성이 있냐는 문

항에서는 44%가 차이가 있다고 보는 반면에 차별성이 없다는 의견이 17%로 조사되었다. 초기 사업정체성 찾기가 어려웠지만 점차 이를 극복하고 있다는 설문답변이 우세했으며, 보다 차별화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개념 확산과 시민인식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나. 문화다양성 기존 정책 사업에 대한 정합성

문화다양성의 정책목표와 세부사업 내용이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응답자 56%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고, 4%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 했다. 소수자별 상황과 특성 반영과 관련하여 응답자 중 47%는 그렇다는 답변을, 부정적인 답변은 13%였다. 많은 응답에서 정책목표에 부합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수자들의 문화권 신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보다 나은 소수집단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내용에 반영될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특정소수자에 대한 편중 없는 정책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응답자 23%만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반면에 37%는 부정적인 답변을 주었다. 많은 응답자들은 아직까지 문화다양성 정책이 결혼여성 혹은 다문화가정, 이주민 등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았다. 사업추진조직과 담당자의 적절한 구성 및 배치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긍정적인 답변(29%)보다 부정적인 답변(34%)이 많았다. 한 담당직원이 타 업무를 겸직하거나 빈번한 순환보직의 발생이 지적되었고 담당인력의 전문성 부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조사됐다.

다. 문화다양성 정책 연계성

사업 추진 기관 간 연계 협력에 대하여 응답자 54%는 긍정적인 답변을 준 반면에 7%는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별 사업 간 연계추진의 문항에서 응답자 41%는 긍정적인 답변을, 11%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무지개다리사업같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협력이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었지만, 여타 의견으로 정부부처 간 소통이 미흡한 점, 지역 내 소관기관 간 통합적인 사업개발 및 권역별로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되었다.

라. 문화다양성 정책 지속성, 실효성

중장기 비전 아래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물음에서 응답자 44%가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고, 15%는 다소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 단기적인 성과를 내야 차후 예산확보에 유리하지만, 문화다양성 정책의 특성상 프로그램들이 단기적인 성과를 올리기보다는 내실이 있고 장기적인 시계를 가져야 진정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 적시되었다.

사업 추진 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답변(22%)보다 부정적인 평가(47%)가 우세했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정책추진의 어려움 및 담당고정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자체 예산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사업결과 소수자집단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평가항목에서는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41%,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17%로 조사되어, 아직까지 전 국민적으로 이해도가 확산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정책담당자와 언론 등에 의한 홍보로 과거보다는 전반적으로 증진되었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 소수자와 다수자 간 소통기회가 확대되었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응답자들 중 37%가 그렇다고 답했고, 19%는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나타났다.

사업추진으로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이 제고되었다는 설문에 응답자들의 41%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소수자의 사회적 영향력 증진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24%)보다는 부정적 답변이 30%로 높게 나타났다. 여전한 제도적 여건 개선의 필요성, 가시적인 결사체구성의 어려움, 현장성이 부족한 사업추진 및 소수자그룹에 따른 편차가 큰 사회

적 영향력 등이 부정적인 의견을 형성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마. 정책 평가수치

기존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응답자들은 사업 전체 평균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할 경우 "66점"으로 평가했다.

바. 문화다양성 향후 정책, 사업 추진방향

국내에서 가장 많은 차별과 배제를 당한다는 소수자를 순위별 비중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성소수자'(49%), '외국인 이주민'(12%), '장애인'(16%), '북한이탈주민'(9%)순으로 평가하였다. 기존 사업의 정책대상에서 부족한 소수자를 살펴보면 '성소수자'(47%), '북한이탈주민' (27%)순으로 뽑았다. '성소수자'의 경우 차별을 당한다는 항목이나 정책지원에서 타 대상에 비해 확연히 소외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사업추진에서 주요한 지원대상자가 '외국인 이주민', '장애인' 등에 다소 편중되어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내 문화다양성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집중해야할 분야로 응답자들은 국민 이해도 증진(39%)을 뽑았고, 다음으로 소수자문화에 대한 인정과 수용확산(26%), 상호간의 소통기회확대(19%), 인권증진과 평등의식 함양(17%)이 그 뒤를 이었다. 기존사업에서 가장 부족한 분야로는 국민 이해도 증진(33%)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상호간 소통기회확대(26%), 소수자문화에 대한 인정과 수용확산(25%)을 꼽았으며, 인권증진과 평등의식 함양(12%) 순이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사업에서 소수집단을 정책대상으로 한정하여 지원이나 교육을 시행하지 말고, 일반국민들의 인식제고를 통해서 소수자와 다수자 간 사회적 소통이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항목에서는 1순위로 응답자들의 24%가 예산부족을 선택했고, 미비한 차이로 사업관련 담당인력이 부족하다가

23%, 21%는 인프라 부족으로 대답했다. 관련한 설문의견으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입법부에서 예산확보를 이끌어 내야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책의 추진에 장애가 많음”, “소수자와 관련된 인프라구축 선행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 “전문인력 양성에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함”, “전문 인력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 등이 정리되었다.

제4절

전문가 의견조사

1.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 개요

본 설문조사는 문화정책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전략을 수립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는 문화다양성의 발전방안을 위해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질문지는 문화다양성의 목적 및 추진체계, 문화다양성 사업운영평가, 문화다양성 향후 개발전략, 문화다양성의 실행과제 등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문화다양성관련 외부전문가 21명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연구자 20명을 대상으로 2017년 7월1일~7월31일에 걸쳐 조사원의 직접방문 및 이메일 우송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질문에 앞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조사의 목적 및 계기에 대해 안내를 첨부, 제시하였다. 질문지 각 문항은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총 7페이지로 구성하였다. 문항내용은 단일선택형 질문 및 복수응답 문항으로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코자 했다.

〈표 3-17〉 문화다양성 설문조사 개요

항목	내용
목적	문화다양성 정책방안 작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수집
대상	문화다양성 정책관련 전문가
기간	2017년 7월 1일~7월 31일
내용	문화다양성 정책 실태조사 및 추진방향 기획
방법	방문 및 이메일 조사
응답자	41명

나. 설문 분석 결과

1) 국내 문화다양성 수준 및 관련 정책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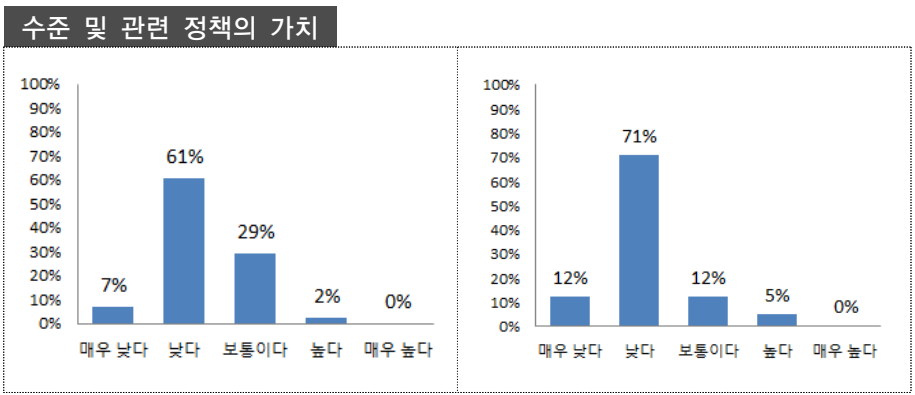

[그림 3-25] 국내 문화다양성 수준 및 관련 정책의 가치에 대한 응답

① [문항]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한 물음은 현재 국내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처한 위치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들 중 상당수(68%)가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으며, 29%는 현 다양성정책이 보통 수준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문화다양성 수준이 높다는 의견은 2%에 불과해 우리나라 문화다양성 수준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문항]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83%는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하여 "국민 관심도가 낮다"이상으로 대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문화다양성 추진정책과 국민 간 괴리가 있으며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이 매우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전문가들 중에 불과 5%만이 국민이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평가하였으며,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보통이라는 견해는 12%로 나타났다.

③ [문항] 아래의 각 사항들이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과 얼마나 관련 있다고 보십니까?

〈표 3-18〉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과 목표

정책의 역할과 목표

항목	전혀 관련 없음 —— 보통 ——— 매우 관련 있음				
소수문화 보호 및 역량 증진	0%	0%	12%(5)	61%(25)	27%(11)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배제 극복	0%	0%	5%(2)	41%(17)	54%(22)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대응	0%	2%	51%(21)	39%(16)	7%(3)
문화적 약자의 활동 지원	0%	5%(2)	24%(10)	46%(19)	24%(10)
미래 성장동력인 창의성과 다양성 확보	0%	5%(2)	12%(5)	44%(18)	39%(16)

문화다양성 정책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역할과 목표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문화다양성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성 정책 영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된 5개 항목과 다양성 정책의 역할 및 목표 간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응답자 중 95%는 다양성 정책목표의 1순위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배제 극복”을 꼽았다. 그리고 “소수문화 보호 및 역량증진”(88%), “미래 성장 동력인 창의성과 다양성 확보”(83%)가 다음을 차지했으며, 문화적 약자의 활동 지원”(70%)이 관련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반면에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응”에 대한 항목과 관련하여 39%만이 정책의 역할과 관련이 있으며 7%는 매우 관련이 있다고 응답, 비교적 낮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④ [문항] 문화다양성 정책이 역점을 두어야 할 궁극적 목표에 V 표시 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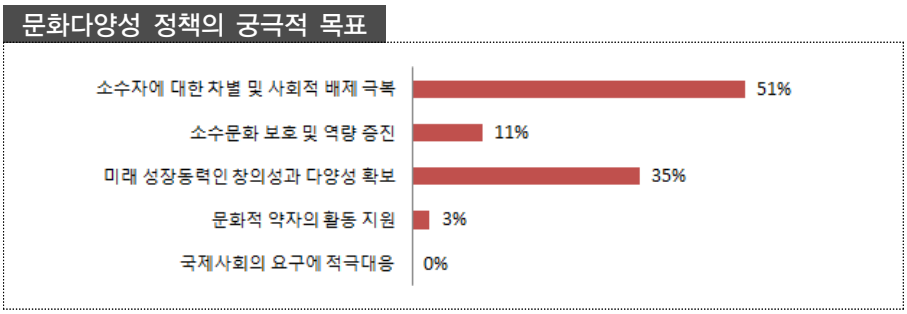

[그림 3-26] 문화다양성 정책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응답

응답자 51%는 문화다양성정책의 궁극적 목표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배제 극복"을 선택했다. 이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막고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는 갖는 것이 추진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미래 성장 동력인 창의성과 다양성 확보"(35%)를 높이는 점을 꼽았다. 응답자들 중 11%는 "소수문화 보호 및 역량 증진"이 다양성정책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했으며, 3%는 "문화적 약자의 사회활동지원"을 언급하였다.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은 소수자의 지원이나 우대보다는 부정적 영향(사회적 갈등, 불평등, 대립 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내 성원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존재에 대한 긍정적 효과(잠재적 능력활용)를 가져오는 정책에 역점을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문항] 아래의 각 주체들이 문화다양성 정책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에 대한 순위별 비중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외국인 이주민"이 적합하다가 93%, "북한이탈주민"(83%)가 뒤를 이었다. "성소수자"는 정책대상으로 매우 적합 34%, 적합37%로 표시하여 전체 71%에 이르렀다. "청소년"은 적합하다고 73%가 평가하였다. "비주류 예술인"도 69%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지만, 반면에 전문가들 중 10%는 이들을

정책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3-19〉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의 적합도와 중요 집단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의 적합도

대 상	매우 부적절함 ——— 보통 ——— 매우 적절함				
외국인 이주민	0%	0%	7%(3)	34%(14)	59%(24)
북한이탈주민	0%	2%(1)	15%(6)	46%(19)	37%(15)
성소수자	2%(1)	10%(4)	17%(7)	37%(15)	34%(14)
여성	2%(1)	15%(6)	27%(11)	32%(13)	32%(13)
노인	2%(1)	15%(6)	29%(12)	32%(13)	22%(9)
청소년	2%(1)	10%(4)	15%(6)	46%(19)	27%(11)
지역문화관련 인력	2%(1)	20%(8)	32%(13)	17%(7)	29%(12)
비주류예술인/예술단체	5%(2)	5%(2)	22%(9)	37%(15)	32%(13)

그리고 정책대상으로 과반수만이 노인(54%), 지역문화인력(46%)을 선택하여 응답자들은 이들을 정책대상자로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다양성 정책에서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순으로 정책대상 1순위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⑥ [문항] 문화다양성 정책이 주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집단 3개에 V 표시 해주십시오.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주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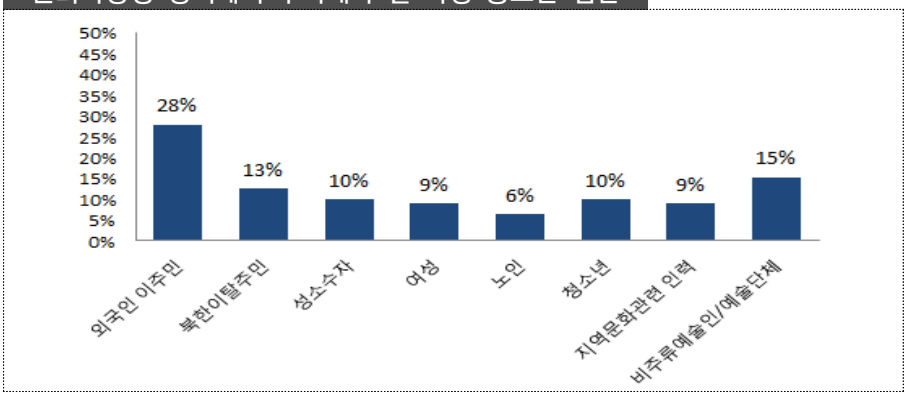

[그림 3-27]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주력해야할 중요 집단

응답자들은 다양성 정책에서 주력해야할 가장 중요한 집단으로 “외국인이주민”(28%)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비주류 예술인 및 예술단체” 15%), “북한이탈주민”(13%)순으로 높았다. “성소수자”와 “청소년”이 정책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답변은 각각 10%를 차지하였으며, 그리고 “여성”과 “지역문화인력”이 다양성 사업의 정책대상으로서 중요하게 고려해야한다고 각각 응답자 9%가 답했다.

⑦ [문항]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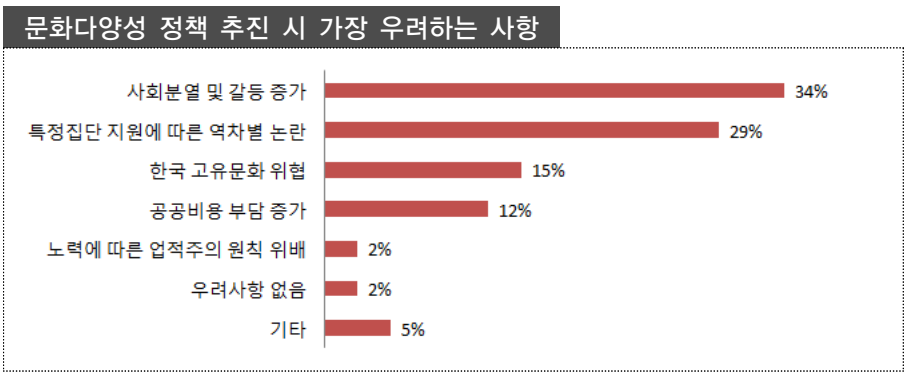

[그림 3-28]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에 따른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

응답자들은 다양성 정책의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사회분열 및 갈등증가”(34%)를 답하였다. 이어서 “특정집단 지원에 따른 역차별 논란”(29%)과 “한국 고유문화 위협”(15%)을 택했다. 정책비용에 따른 “공공비용 부담 증가”라고 답한 이들은 12%였다. 또한 소수의견으로 노력에 의한 업적주의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사회분열증가, 특정집단의 역차별 문제점, 그리고 고유문화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나타냈다.

2)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의 운영방향

① [문항]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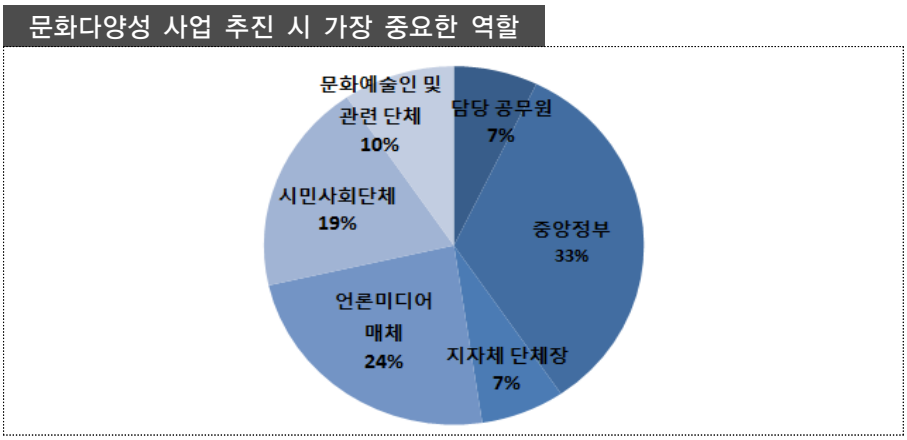

[그림 3-29]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역할

사업추진 시 중요역할에 대한 순위별 비중을 살펴보면, 응답자들의 33%는 "중앙정부"를 1순위로 지적했다. 이것은 문화다양성정책이 국가정책의제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언론미디어매체"(24%)로 정책실효성에 있어 미디어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중요성은 19%, "문화예술인 및 관련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가 10%로 나타났다. 그 외 담당공무원과 지자체 단체장이 정책추진에서 각각 7%를 차지했다.

② [문항] 아래 문항들은 문화다양성 장애요인으로 자주 제기되는 이슈들로서, 이 이슈들이 문화다양성 정책에 얼마나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응답자들 중 88%는 1순위로 "현 국내의 수용성 수준과 문화다양성 정책 간 간극"이 크다고 보았다. "특정 소수자 위주의 편중된 사업추진"은 71%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3순위로 "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66%)라고 응답했다. "부처 간 사업 중복"(39%)과 "소수자 지원에 따른 역차별"(34%) 항목이 뒤를 이었다. 앞서의 항목들과 비교할 때 그 중요성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20〉 문화다양성 장애요인의 문제 정도

문화다양성 정책 장애요인의 문제 정도

장애요인	전혀 문제없음		보통		심각한 문제있음
부처 간 사업 중복	2%(1)	20%(8)	39%(16)	32%(13)	7%(3)
특정 소수자 위주의 편중된 사업 추진	5%(2)	12%(5)	29%(12)	39%(16)	32%(6)
현 한국사회의 수용성 수준과 문화다양성 정책 간 간극	2%(1)	2%(1)	7%(3)	39%(16)	49%(20)
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의 부정적 보도	0%	10%(4)	24%(10)	51%(21)	15%(6)
소수자 지원에 따른 역차별	7%(3)	15%(6)	44%(18)	27%(11)	7%(3)

③ [문항]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슈 1개에 V 표시 해주십시오.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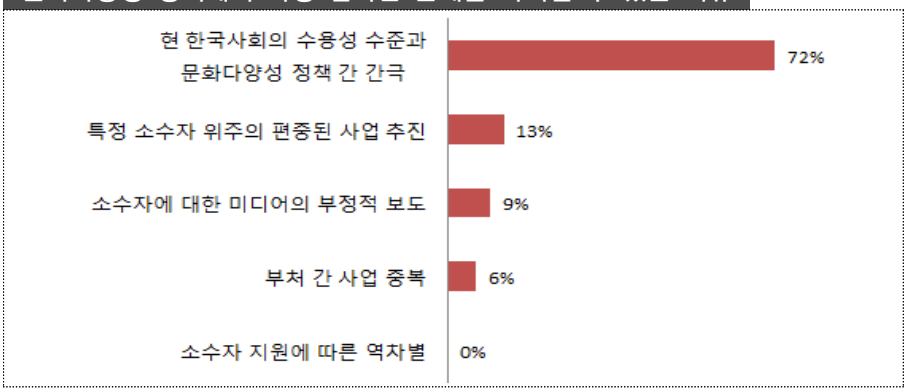

[그림 3-30]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이슈

응답자들의 상당수는 현재 정책현장에서 "한국사회의 수용성 수준과 문화다양성 정책 간 상극"(72%)에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

다. 다음으로 “특정 소수자 위주의 편중된 사업 추진”(13%)이라고 보았다. 문화다양성 정책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의 수용성 수준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사업기획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 운영이 정책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 중 9%는 다양성정책에 있어 “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의 부정적 보도”가 문제점이라고 표명했고, 부처 간 사업 중복이 정책현장에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를 차지했다.

④ [문항]현장에서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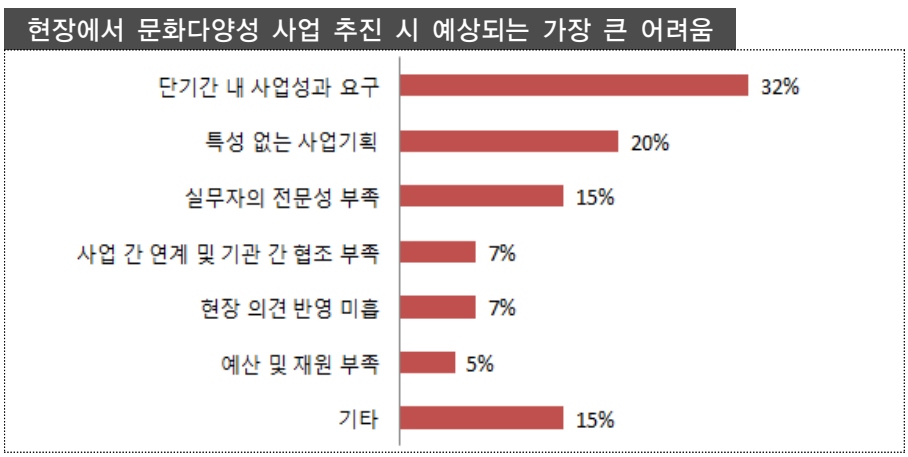

[그림 3-31] 현장에서 문화다양성사업 추진 시 가장 큰 어려움

응답자들은 현장사업 추진과정에서 “단기간 내 사업성과 요구”(32%)를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이는 정책추진에 있어서 보다 장기적인 사업플랜이 필요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특성 없는 사업기획”(20%)을 지적하며 정책방향성에서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다음은 수행 과정에서 “실무자의 전문성 부족”(15%)이 추진 시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했으며, “현장 의견 반영 미흡”(7%) 및 “사업 간 연계 및 협조 부족”(7%)한 점도 지적했다.

⑤ [문항] 기존 다문화사업과 문화다양성 사업이 향후 어떤 관계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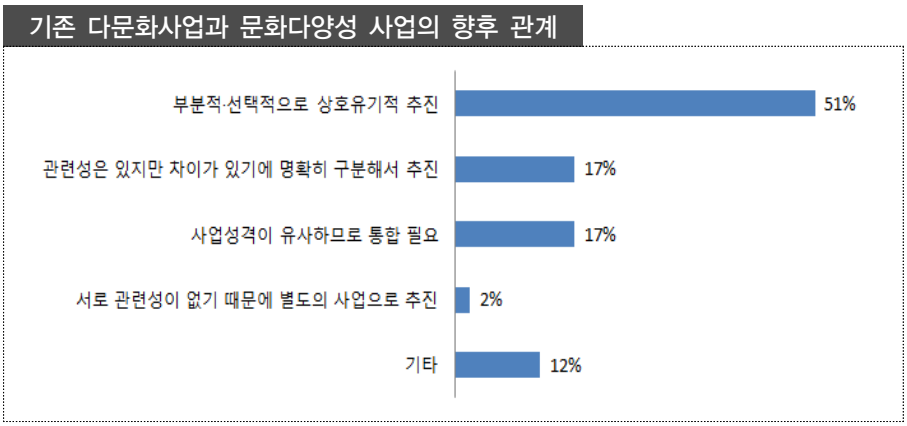

[그림 3-32] 다문화 사업과 문화다양성 사업의 향후 관계

응답자들의 51%는 기존 다문화사업과 문화다양성 사업 간 관계에 대해서 "부분적, 선택적으로 상호 유기적 추진"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다문화사업과 문화다양성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기에 통합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17%를 차지했다. 관련성은 있지만 차이가 있기에 사업을 명확히 구분지어서 추진할 것을 선택한 의견도 17%로 나타났다. 의견조사에서 다문화와 문화다양성 개념을 정확히 확립해야 관련 사업 및 추진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정책 간 융합 및 선택을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견해를 표하기도 했다.

3)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① [문항] 향후 우리사회의 문화정책은 다음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 계승발전	중요척도				외국문화의 수용
	5%	12%	61%	20%	2%

응답자들 다수가 전통 계승과 외국문화 수용측면의 비중을 둘 다 중요하다(61%)고 답하고 있다. 그 외 "외국문화의 수용"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22%였던 반면에 "전통문화의 계승"에 보다 의미성을 두어야 한다는 답변은 1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문화의 세계화	중요척도				지역문화의 발전
	0	0	51%	39%	10%

응답자들 51%는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지역문화의 발전"이 함께 중요하다는 견해를 내었다. 반면 49%는 "지역문화의 발전"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다.

고유문화의 계승	중요척도				타문화의 이해
	0	0	44%	41%	15%

응답자들 44%는 "고유문화의 계승"과 "타문화의 이해"와 관련하여 둘 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렇지만 응답자 중 56%는 "타문화의 이해"를 향후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선택하였다.

이주민의 한국사회 동화추구	중요척도				소수공동체의 전통과 풍습 보존
	2%	20%	27%	32%	20%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52%)는 소수공동체의 문화보존으로 방향성을 지지하였다. 응답자들 27%는 "이주민의 한국사회로 동화추구"와 "소수공동체의 전통과 풍습보존"과 관련 동일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선택하였다. 반면에, 이주민의 한국사회 동화추구를 선택한 응답자는 22%로 비교적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지원 정책추진	중요척도					민간주도 자율적 운영
	2%	10%	39%	41%	7%	

응답자 중 39%가 “정부지원의 정책추진”과 “민간주도의 자율적 추진” 사이에서 같은 비중을 선택하였다. 정부지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은 12%가 택했던 반면에, 민간주도 자율적 운영이라는 정책방향을 48%가 선택함으로써 극명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부지원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아래로부터(Bottom-Up)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책임감 있게 참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로 사료된다.

② [문항] 한국사회가 문화다양성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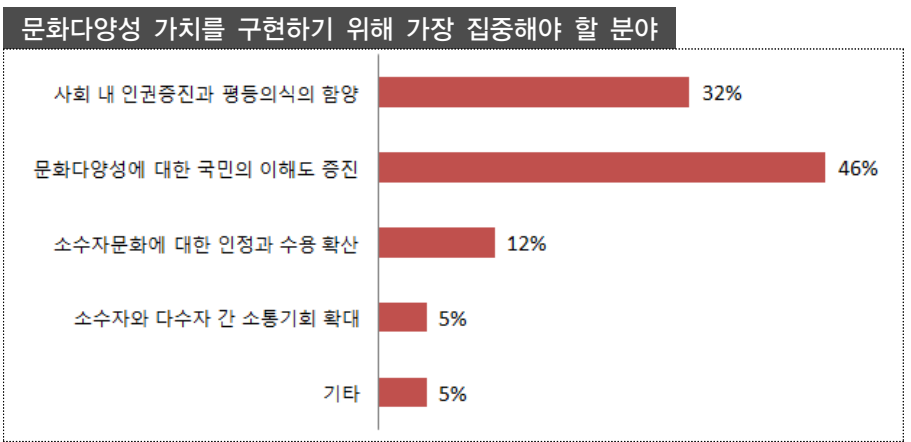

[그림 3-33] 한국사회가 문화다양성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

응답자들 중 46%는 문화다양성 가치구현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이해도 증진”을 가장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서 응답자 32%는 “사회 내 인권증진과 평등의식 함양”이라는 항목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12%는 “소수자문화에 대한 인정과 수용확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외 “소수자와 다수자 간 소통 확대”의 필요함을 5%가 답했다.

4) 문화다양성 정책의 향후 발전과제

① [문항]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해 어떤 활동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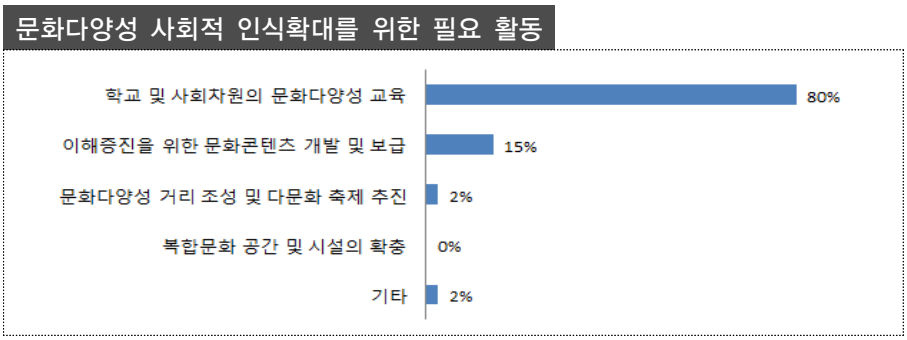

[그림 3-34]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인식확대를 위한 필요한 활동

응답자들 80%에서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인식확산을 위해 “학교 및 사회차원의 문화다양성 교육”이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15%가 답했고, 그 다음으로 “문화다양성 거리 조성 및 다문화 축제 추진”(2%)을 택했다. 반면에 “복합문화 공간 및 시설의 확충”과 같은 하드웨어적 요소는 문사회적 인식확대를 위한 적절한 활동에서 선택되지 못했다.

② [문항] 다음 중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가장 주력해야할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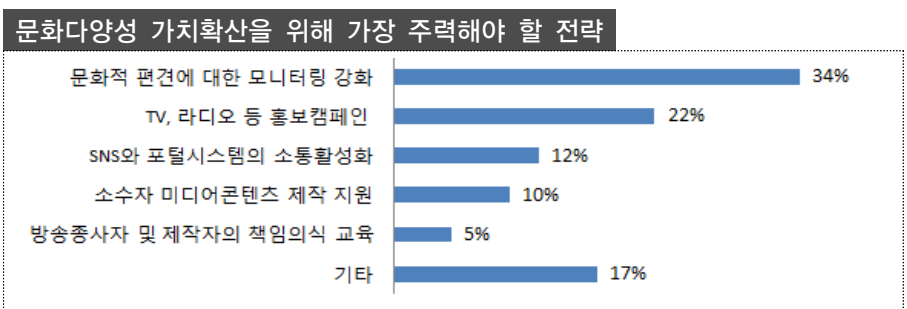

[그림 3-35] 문화다양성 가치확산을 위해 가장 주력해야 할 전략

응답자 34%는 문화다양성 가치의 확산 수단으로 “문화적 편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1순위로 꼽았다. “TV, 라디오, 등 홍보 캠페인”을 22%로 그 뒤를 이었다. 매스미디어를 통한 직간접적 문화다양성 홍보가 시청자들의 문화다양성 인지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수단으로 응답자 12%가 “SNS와 포털시스템의 소통활성화”를 선택했는데, 이는 정보화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소수자 미디어콘텐츠 제작 지원”(10%)도 문화다양성마케팅에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음을 인지한 반면에 “방송종사자 및 제작자의 책임의식 교육”은 5%로 나타나 그 효과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③ [문항] 소수자의 사회적 영향력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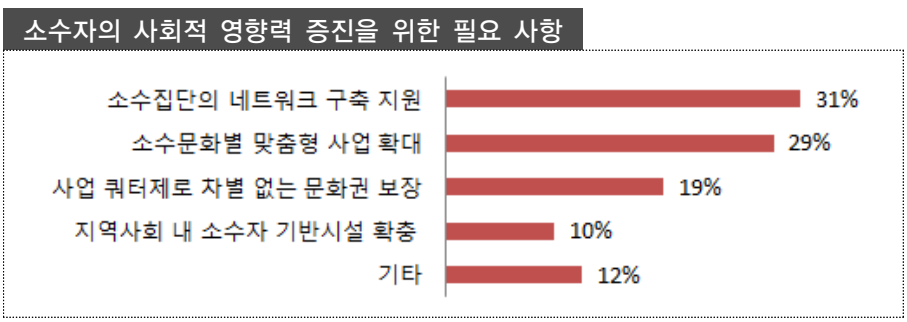

[그림 3-36] 소수자의 사회적 영향력 증진을 위한 필요 사항

소수자의 사회적 영향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을 살펴보면, 1순위로 “소수집단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31%가 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소수문화별 맞춤형 사업 확대”(29%)를 선택했다. 그리고 응답자 중 19%가 “사업 쿼터제로 차별 없는 문화권 보장”을 답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문화다양성정책에서 “지역사회 내 소수자 기반시설 확충 사업”(10%)과 같은 하드웨어적 접근은 그 중요성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보았다.

④ [문항]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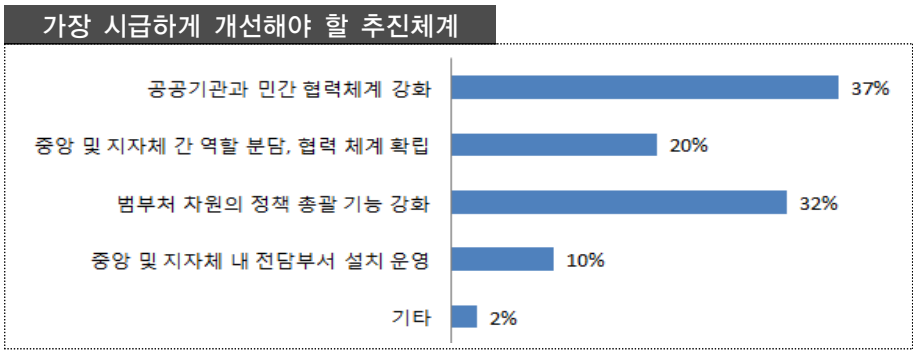

[그림 3-37]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개선해야 할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로 응답자들 중 37%가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적 활동"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정책의 추진체계에서 "범부처 차원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32%가 답했다. 이것은 다양한 부처들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기에 컨트롤타워로서 중심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그 뒤를 이어서 "중앙 및 지자체 간 역할 분담, 협력 체계 확립"이 20%, "중앙 및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운영"이 추진체계에서 필요하다고 10%가 답했다.

⑤ [문항] 문화다양성 인프라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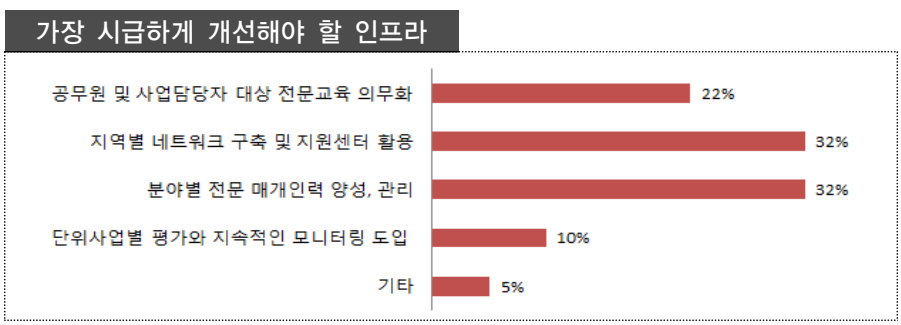

[그림 3-38]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화다양성 인프라

인프라와 관련해 개선해야할 사안으로 응답자 중 32%는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센터 활용”을 꼽았다. 그리고 같은 수의 응답자가 “분야별 전문 매개인력 양성, 관리”를 선택하였다. 뒤를 이어 응답자들 22%가 “공무원 및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의무화”를 응답했고, 10%는 “단위사업별 평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도입”을 지적했다. 기타의견으로 ‘단체들의 미디어채널 확보’ 및 ‘기존 인프라의 수용성 강화’ 의견들이 있었다.

2. 심층인터뷰(FGI)

가. 전문가 조사 개요

문화다양성의 현황파악 및 향후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도출하고자 관련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그룹에는 학계에서 대학교 전공교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지자체 문화다양성관련부서 담당자, 지역문화정책기관 연구원, 문화다양성분야 문화기획가, 현장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3월18일~9월 15일 사이 전문가 면담 조사 및 자문회의를 통해 문화다양성 활성화에 적합한 실행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면담조사 및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다양성의 운영현황, 문화다양성 개선측면, 문화자원을 통한 문화다양성 효과, 문화다양성 발전전략으로서 향후 정책방안 및 고려사항 등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실무자 면담에서는 문화다양성업무를 추진하였던 경험과 사업 추진 시 나타났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 시민단체가 해야 하는 역할 및 정책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 전문가 주요 의견

〈표 3-21〉 전문가 자문조사 개요

항목	내용
목적	문화다양성정책 현황조사 및 향후 추진안 자문
대상	정책관련전문가(교수,정책연구원,문화기획가,공무원,현장전문가)
기간	2017년 3월 18일~9월 15일
내용	문화다양성 평가 및 향후 발전정책안 논의
방법	심층 인터뷰 및 자문회의 (7차)
응답자	28명

〈표 3-22〉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이름	소속	직위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본부장
장현선	장앤파트너스	대표
박은실	추계예술대	교수
김도형	엔아이리서치	수석연구위원
한승준	서울여대	교수
김영태	문화예술위원회	공무원(문화예술위원회)
김수경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옥라	서강대학교	교수
윤광식	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	사무총장
한건수	강원대	교수
오정은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성진	한국문화기획학교	대표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송경희	경희대	연구교수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류민희	희망법	변호사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현	유알아트	대표
이은경	명지전문대	교수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윤광일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교수/ 소장

이름	소속	직위
신혜선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김현숙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윤지영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은	충북대학교	교수
황준석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평창올림픽조직위)
이헌경	동아대학교	교수

1) 문화다양성의 성과와 한계

> I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지만 대부분 이주민, 다문화에 국한된 인식으로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 부족

[성과①] 문화다양성 법률제정·시행 및 유네스코 협약 위원국 진출을 통한 사회적 관심 증가

우리나라는 2010년 7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에 110번째 비준국으로 뒤늦게 합류했지만, 2014년 5월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흥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국내 다양성 정책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2017년 6월 제6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정부 간 위원회 선거를 통해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시아태평아 그룹위원국으로 선출되어 문화다양성 정책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되었다. 무지개다리사업의 확산,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 및 여러 다양성 증진사업들을 통해 그동안 사회내부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소수자들의 문제들이 점차 공론화되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가시켰다.

[한계①] 다문화정책 위주로 문화다양성의 본질적 성찰은 부족

다문화정책이 주로 이민자대상 위주의 문화정책에서 출발하였기에, 문화의 외적다양성과 이주민 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대응정

책의 성격이 강하였다. 많은 사업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가족으로 문화적 차이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여, 추진정책 목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혜대상이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는 다양하고 이질적 부류의 소수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 중심의 획일적 범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수자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제고를 통해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Ⅱ 다양한 정책대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업수와 예산이 늘어났지만 일관적인 기준 없이 부처별 사업이 중복되어 균형 잡힌 정책추진이 미흡

[성과②] 중앙부처 및 지자체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의 확대

급속한 문화적 다양성사회로의 진입과 사회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중앙정부는 부처별로 직접사업을 추진하거나 전담기관을 설치, 산하공공기관을 통해 공모 또는 민관 및 기업과 협력을 통해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체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행자부 등 10여개 부처별 사업추진 및 17개 지자체의 다양한 문화다양성 관련사업이 양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도 정부정책에 의거하여 사업부서별로 정부와 유사한 형태와 경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관련 예산이 2015년 '문체부' 5,445억 원(101개 사업), '기타 중앙부처' 319억 원(13개 사업), '지자체' 2,125억 원(397개 사업)에서 2016년 '문체부' 5,726억 원(158개 사업), '기타 중앙부처' 1,027억 원(30개 사업), '지자체' 4,717억 원(1,617개 사업)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계②] 부처별 사업 경쟁과 분절적 분산추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동일한 대상에 대해 유사 및 중복사업 진행, 사업주관기관의 비전문성

등 문제점이 노정되어, 부처별, 정책 간 연계 부족으로 통합적 운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주여성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정책의 입안과 시행을 이루고 있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좋으나 타 기관·부처 등과의 협력에 적극적이지 못해 사업의 효율성이 제약되고 있다.

기존 정책에서 양적, 경쟁적 사업실적 위주의 운영이 이루어지며 정부기관들 간의 역할 범위 조정과 총괄적인 정책집행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책효율성 및 성과제고를 위해서 정책목표와 수혜대상 간의 적절한 기능배분과 행정체계 및 프로그램 협의 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Ⅲ	소수집단을 수혜대상으로 취급하고 우리와 다름을 인식, 구분하여 정책사업을 추진하기에 상호 소통과 이해 도모 부족

[성과③] 소수집단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를 고려한 정책사업 추진

문화다양성 사업은 관심이 부족했던 다양한 소수자 집단들을 정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지역 등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화다양성 정책은 문화적 차이를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보고 소수자집단들에게 생활전반에 걸쳐서 정책수혜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사회적 통합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세부내용으로 이주민 다문화 행사, 소수집단의 축제, 예술제, 교육프로그램, 교류협력사업 등을 통해 문화 활동을 증진하는 사업이 전개되었다.

[한계③] 문화정책이 아닌 복지정책 접근으로 정책이해도 결여

그동안 정책대상은 이주민에게 주로 한정되었고, 사업은 이들이 소수문화의 자긍심을 갖게 하기 보다는 주류사회로의 문화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동화주의적 접근을 토대로 한 교육훈련, 정착지원,

복지수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관부처는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대신에 사업을 일방적으로 기획하였고, 소수자집단을 분리하여 사회 적응지원에 편중하는 한계를 보였다.

관련 사업이 증가했다고 해도 소수자에 대한 특화된 문화프로그램은 여전히 미흡하다. 소수자 집단이 바라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욕구나 기대수준은 높아졌지만 제공되는 내용은 이전 다문화사업을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지만 획일적인 정책시행으로 자발적인 문화역량이 확대되지 못하고 소수자집단에게도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의 관점에서 소수자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주체를 가지고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이들의 문화권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증진하는 관용성이 필요하다.

Ⅳ	무지개다리 사업의 일정한 성공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틀은 갖추어가나, 정책의 실효성을 장기적으로 담보할 기초적 역량과 법적, 제도적 기반은 미흡

[성과④] 무지개다리사업의 성공으로 문화다양성 정책 기틀 마련

무지개다리사업은 유일한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으로 현장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찾고 이를 정책과 현장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무지개다리사업은 2012년 문화부가 다문화가족 지원중심의 정책에서 문화다양성관점으로 전환하면서 시작되어 2017년 사업운영 6년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그동안 사업의 성격도 발전하여 기존 정책에서 포괄하던 이주민 대상들에서 그 동안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소수문화그룹들을 더해 다양한 사방 방식을 확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3-23〉 무지개다리 사업 성과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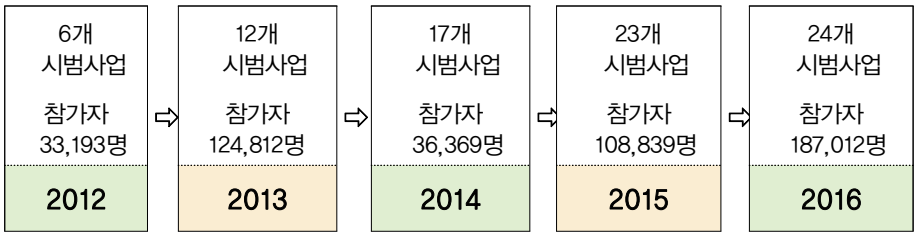

[한계④] 장기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정책기반 구축 요구됨

문체부 내 무지개다리사업과 같이 개별사업의 일정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법적, 제도적 인프라는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부처의 경우 개별 정책대상별로 입법이 되고 각 부처 별로 독자적 정책 영역에 집중하면서 대상별로 사업이 분산되어있다. 이에 정책연계성의 부족으로 통합적 관리에서 오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조례의 미비 및 재정분담 방안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고 법규체계, 행정시스템 및 지역사회의 연결망 등 환경적 요소가 부족하다. 사업시행에서도 1~3년 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치중하고 있어서, 내실이 있고 장기적인 성과를 축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책집행과 관련된 재원의 안정적 확충 및 법적, 제도적 전달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다양성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의견종합과 시사점

문화다양성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고자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서 설문조사 및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 의견들을 종합해 보았다.

가. 설문조사

국내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해 응답자들의 68%는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수준이 낮다”로 보았고 2%만이 높다고 평가했다.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에 대해서 응답자들의 83%는 “국민 관심도가 낮다”라고 대답했으며, 불과 5%만이 “국민이 다양성 사업에 관심이 높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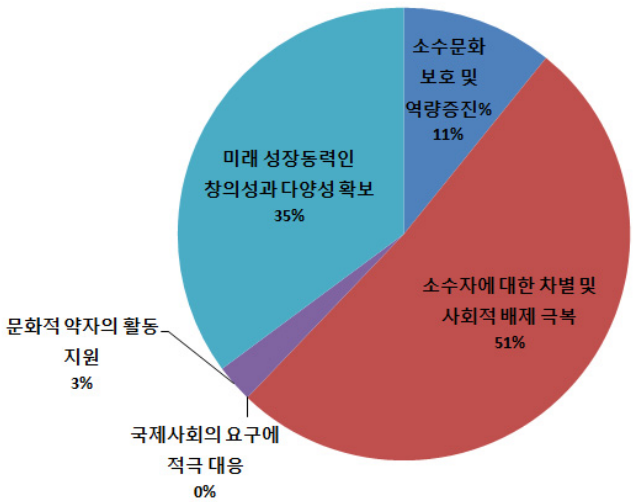

[그림 3-39] 문화다양성 정책의 궁극적 목표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과 목표에 대해서 응답자의 95%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배제극복”을 꼽았다. 이어서 “소수문화 보호 및 역량증진”(88%), “미래 성장 동력인 창의성과 다양성확보”(83%) 순으로 대답했다. 정책의 역점을 두어야 할 궁극적 목표로는 응답자 51%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배제 극복”을 택했다.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인 창의성과 다양성확보”(35%), “소수문화 보호 및 역량증진”(11%), “문화적 약자의 활동 지원” 순으로 평가했다.

문화다양성정책의 적합한 대상에 대하여 응답자 93%는 “외국인 이주민”을 선택했다. 이어서 “북한이탈주민”(83%), “성소수자”(71%), “청소년”

(73%), “비주류 예술인”(69%) 순이었다. 정책에서 주력해야할 가장 중요한 집단으로는 1순위로 “외국인 이주민”(28%)을 꼽았으며 “비주류예술인”(15%), “북한이탈주민”(13%), “성소수자”(10%)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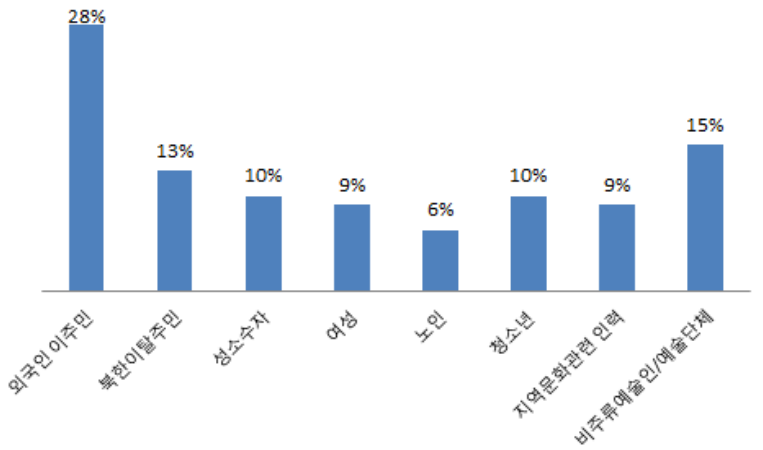

[그림 3-40]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 대상 집단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시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응답자 34%는 “사회분열 및 갈등 증가”를 선택했다. 그리고 “특정집단 지원에 따른 역차별 논란”(29%), “한국 고유문화 위협”(15%), “공공비용 부담 증가”(12%) 순이었다.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 시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응답자 33%는 “중앙정부”를 택했다. 다음으로 “언론 미디어매체”(24%), “시민사회단체”(19%), “문화예술인 및 단체”(10%) 순이었다.

문화다양성 정책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88%가 “현 국내의 수용성 수준과 문화다양성 정책 간 간극”을 꼽았다. 이어서 “특정 소수자 위주의 편중된 사업추진”(71%), “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의 부정적인 보도”(66%), “부처간 사업 중복”(39%) 항목이 뒤를 이었다.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질문에서는 1순위로 “한국사회

의 수용성 수준과 문화다양성 정책 간 상극"(72%)를 택했다. 이어서 "특정 소수자 위주의 편중된 사업 추진"(13%), "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의 부정적 보도"(9%), "부처 간 사업 중복"(6%)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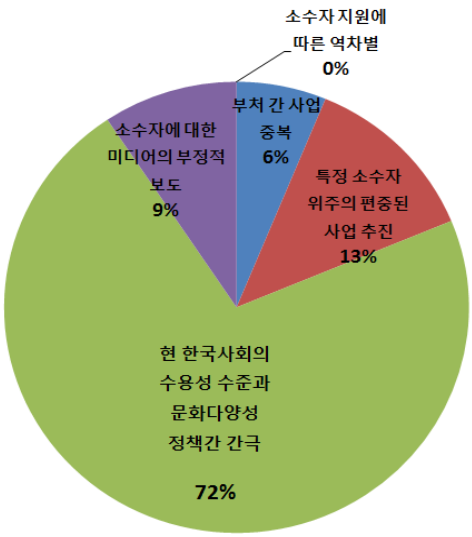

[그림 3-41]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

현장에서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단기간 내 사업성과 요구"(32%)를 답했다. 그리고 "특성 없는 사업기획"(20%), "실무자의 전문성 부족"(15%), "현장 의견 반영 미흡"(7%)이 뒤를 이었다.

기존 다문화사업과 문화다양성 사업 간 향후 관계 설정에 대한 물음에서 응답자들의 51%는 "부분적, 선택적으로 상호 유기적 추진"을 선택하였으며, "성격이 유사하기에 통합 필요"(17%), "관련성은 있지만 차이가 있기에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서 추진"(17%)으로 나타났다.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해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외국문화의 수용"의 비중(61%)이 같았다. "한국문화의 세계화"보다 "지역문화의 발전"(49%)을 선택했다. "고유문화의 계승"보다는 "타문화의 이해"(56%)를 선호했다. 이러한 결과는 외래문화의 수용이나 타문화

의 이해를 강조하면서도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의 발전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주민의 한국사회 동화추구” (22%)보다는 “소수공동체의 전통과 풍습보존”(52%)이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리고 “정부지원 정책추진”(12%)보다는 “민간주도 자율적 운영”(48%)가 압도적으로 선택되었다.

문화다양성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집중해야할 분야로 응답자들 중 46%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이해도 증진”을 꼽았다. “사회 내 인권 증진과 평등의식 함양”(32%), “소수자문화에 대한 인정과 수용확산”(12%)이 뒤를 이었다.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인식확대를 위한 활동으로 응답자들 80%가 “학교 및 사회차원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택했다. 다음은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보급”(15%), “문화다양성 거리 조성 및 다문화 축제 추진”(2%)을 꼽았다. 문화다양성 가치확산을 위해서 가장 주력해야할 전략에 대한 물음에 대해 34%는 문화다양성 가치의 확산 수단으로 “문화적 편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1순위로, 이어서 “TV, 라디오, 등 홍보 캠페인”(22%), “SNS와 포털시스템의 소통활성화”(12%), “소수자 미디어콘텐츠 제작 지원”(10%)을 선택했다.

소수자의 사회적 영향력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소수집단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31%)을 1순위로 답하였고, 다음으로 “소수문화별 맞춤형 사업 확대”(29%), “사업 쿼터제로 차별 없는 문화권 보장”(19%), “지역사회 내 소수자 기반시설 확충 사업”(10%) 순이었다.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한 설문에서 37%가 1순위로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적 활동”을 선택했으며, “범부처 차원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32%), “중앙 및 지자체 간 역할 분담, 협력 체계 확립”(20%), “중앙 및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운영”(10%)을 답했다.

문화다양성 인프라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할 사안에 대

해서 응답자 중 32%는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센터 활용”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같은 수의 응답자가 “분야별 전문 매개인력 양성, 관리”를 선택하였다. 그 뒤를 이어 “공무원 및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의무화”(22%), “단위사업별 평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도입”(10%)을 택했다.

나. 전문가 심층 인터뷰

관련 전문가들의 면담조사의견을 수렴해보면, 사회전반에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지만 대부분 이주민관련 프로그램에 국한되었고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또한 지금까지 문화정책이 특정 소수자를 지원대상으로만 삼았고 실제로는 일반인들과의 교류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전체국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소통과 개방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제고를 통해 국민과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관련 정책대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업수가 늘어났지만 일관적인 기준 없이 프로그램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부처별로 사업이 중복되어 균형 잡힌 정책시행이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 유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잦은 인사이동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직원 교육훈련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담당인력의 전문성이 낮은 것도 문제점으로 언급되었다.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인력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복지과 등에서 소수인원이 타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개별 담당자들이 맡는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사업에 대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다.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소수집단을 수혜대상으로 취급하고 우리와 다름을 인식, 구분하여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에 상호 소통과 이해 도모의 부족함을 개선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사업운영에서 일방적인 소통구조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소수자대상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획일적으로 유사한 수준에서 제공

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세부사업을 통해 소수자 그룹의 자발적인 문화역량이 키워지고 공감대 확산 및 연대의 확대를 통한 선순환 구조의 형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소수자 영향력 증진과 관련하여 맞춤형 사업 개발확대, 운영, 그리고 소수집단의 네트워크 운영 지원을 추천했다.

또한 문화다양성사업이 관련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대상 집단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업무기획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획일적인 정책의 시행으로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참여 지향의 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무지개다리 사업의 일정한 성공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틀은 갖추어가나, 정책의 실효성을 장기적으로 담보할 기초적 역량과 협력체계는 미흡함을 표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각 부처 간 협업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일부 프로그램이 협력 중이나 소관별로 정책대상별 사업을 연계하고 중장기적 안착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업 추진 시 프로그램 연계 강화를 통하거나 이벤트성격의 일회성 사업 폐지의 모색을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다문화사업과 문화다양성 프로그램의 관계에 대해서 두 사업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 방향성에서 명확한 관계설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기도 했다.

제4장

정책 활성화 방안

제1절

분석결과의 종합

앞선 장에서 국내외의 문화다양성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현재의 문화다양성 정책현황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 분석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문화다양성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문화다양성 문제점 진단과 정책 개선방향

	문제점 진단	정책 개선방향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업 평가	– 다양한 부처 개입, 경쟁적 유사사업팽창 – 기존 동화지향적 다문화사업 시각 여전 – 복지, 일회성 사업으로 성과축적난제 – 하향식 사업추진과 일방적 정책공급 – 체계적인 평가체계 부족	– 기관 간 협력강화, 추진체계 효율성 – 실질적 다양성 증진 사업으로 전환, 개선 –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정책운영 체계화 – 지역현장 수요 반영 및 참여 기회 확대 –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과 운영
정책 관련 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인식조사	– 정책사업의미에 대한 낮은 국민인식 – 추진목표에 비하여 수혜대상이 편중됨 – 소수자와 다수자 간 소통 방안 증진 필요 – 조직의 구성문제 및 담당자의 잦은 교체 – 예산 확보와 지역단위 체계구축 시급	– 문화다양성 교육확산, 국민이해도 증진 – 균형적 대상별 사업 추진 필요 – 문화 간 교류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현장인력 전문성 및 이해교육 강화 –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인프라 마련 필요
주요 국가별 정책 분석	– 반이민정서, 외국이주민 제노포피아 – 지역사회로의 정책 확산 필요성 – 다원화된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향발현 – 주류사회와 소수공동체의 분리, 소외	– 시민인식제고, 이주민의 사회활동참여 – 현장중심의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소수민 맞춤형 정책, 자생 활동 역량강화 – 갈등극복을 위한 집단 간 상호교류추구
전문가 의견조사	– 소수자 차별 및 사회적 배제극복 중요성 – 한국사회의 낮은 수용성 수준 – 편중된 대상에 대한 사업집중 – 기존 다문화정책과의 관계설정 필요 - 정책추진 체계의 개선 시급성	– 특화사업에서 시민인식제고로의 전환 – 미디어를 활용한 다양성 가치의 확산 - 다양성 프로그램 및 대상범위 운영 확대 – 중복사업의 유기적인 통합, 신사업 발굴 – 기관 간 연계 및 민간의 협력활동 강화

제2절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본 절에서 문화다양성 정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효과적인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앞서 국내외 문화다양성의 정책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담당자 및 사업실천자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조사를 통해서 현재까지의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포괄적인 현황분석은 실천적인 문화다양성 대응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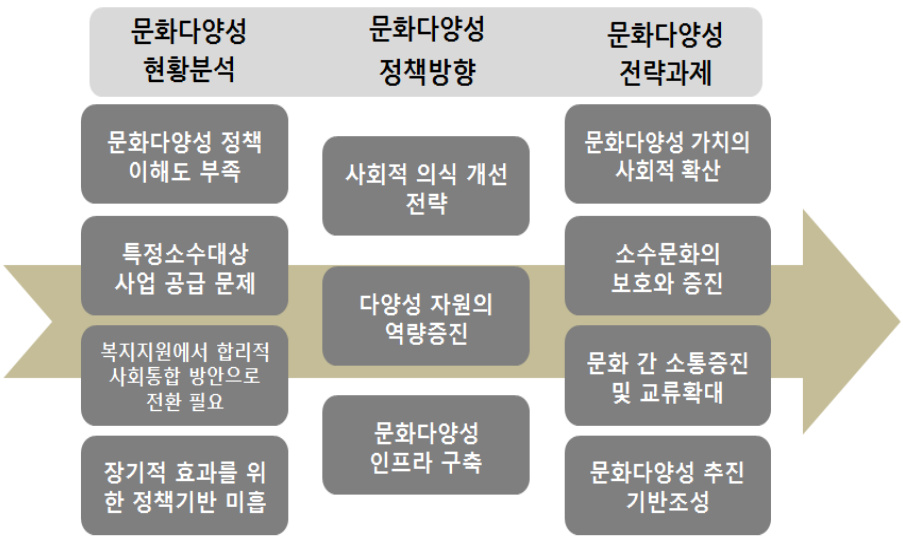

[그림 4-1]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방향

정책방향 1. 사회적 의식개선

다문화사회의 전개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의식개선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가치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문화다양성 사업과 프로그램이 일정부분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반 인식이 낮다는 것은 단기간에 일반인 다수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다양성 정책 패러다임에서 소수자만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경우 사회적인 이해의 확산이 어려워 적지 않은 논란이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책 활동 시 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다수자와 소수자의 구분 없이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 대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차별과 배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문화다양성 정책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하지 않는 규범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에 당당히 맞서는 시민의식을 길러주어야 한다. 기존 정책은 이주민의 증가를 경험하면서 현안 중심으로 대응한 탓에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운영이며, 위로부터 아래로(Top-Down) 절차를 통한 지원이나 교육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문화다양성은 특정한 지원사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개개인의 삶의 의미와 연결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생활 안에서 전체 성원이 함께 평등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실천하게 만드는 활동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화다양성은 사람 간의 문화적 차이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일상에서 다른 가치에 대해 보다 포용적이고 수용적 태도를 갖도록 장려하는 사회적 정책으로서, 모든 활동과 정책에서 기본적이고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정책방향 2. 다양성자원의 역량증진

다문화사회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회주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앞선 역사에선 단일 민족이며 동일한 문화를 갖고 있는 점을 한국사회의 특성으로 강조하여 왔기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를 구성원으로 수용하지 않고 타자화 시켜왔다. 지난 10년간 한국사회에서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고 일정부분 성과가 쌓였지만 소수자들을 현실적으로 사회의 동등한 주체로서 받아들이는 자세는 사회적으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문화다양성의 실현은 주류 혹은 다수자에게 소외되고 억압받는 소수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과 함께 시작되어야 하며, 이들의 문화적 표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인종, 국적, 세대, 종교, 지역, 예술, 성별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소수자에게 다수자 사회에 적응할 것을 강조하는 대신에 소수자를 이해하고 소수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하며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정책이 장려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문화다양성 논의에 있어 사회윤리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문화적 차이의 갈등해소와 평화로운 공존을 언급하여 왔다. 그러나 문화다양성은 실용적으로도 개개인은 물론 공동체 전체에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진작시키는 데 필수적인 바탕인 것이다. 다양성과 차이의 존중은 사회 내 창의성을 진작시키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차이를 개방적인 자세로 수용하고 조화시켜 이를 한국사회의 새로운 풍부한 미래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책방향 3. 제도적 기반마련

기존 다문화정책은 국내에서 증가되어진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출발했지만, 문화다양성 정책은 우리사회에 내재되어있는 이질적 문화의 권리증진을 통하여 한국문화를 풍부하고 역동적인 정책기조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들을 차별 없는 사회주체로 인정하고 다양한 소수문화의 진흥으로 정책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정책초기 국가주도형으로 시행되면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각 부처별로 담당영역에 따라 다양한 소수자 지원활동을 분절적으로 이루어왔다. 그러나 종합적인 전략의 부재와 함께 대상을 분리하여 추진함으로써 수혜집단에게도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다. 문화다양성 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문화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가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중앙부처는 국가 전체 수준에서 통합된 사회를 향한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을 수립・집행함으로써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질 높은 사회통합과 협력적 경험을 넓힐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기관 및 관련 다양한 집단과 협력하여 시너지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 효과적인 정책이 확산되도록 실무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시민 참여를 추진하는 민간단체를 육성지원하고 다양성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문화다양성은 시민적 관용성이 확대된 사회를 목표한다고 볼 수 있기에, 정부주도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의 형성이 중요한 것이다.

정책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앙, 지방정부, 시민단체 간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정책실행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 전문인력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정례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의 보완 및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실효성 있게 문화다양성 정책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3절

문화다양성 정책 단계별 실행 방안 구상

3절에서는 향후 문화다양성의 정책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보다 종합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국민인식 측면, 사업추진 및 운영측면, 제도적 지원측면으로 범주화시켜, 4가지 전략방안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 세부방안들을 구성해보았다. 문화다양성 정책의 전략방안에는 《문화다양성 가치의 사회적 확산》, 《소수문화의 보호와 증진》, 《문화 간 소통 증진 및 교류확대》, 《문화다양성 추진 기반조성》을 포함하며 이를 세분화된 대응과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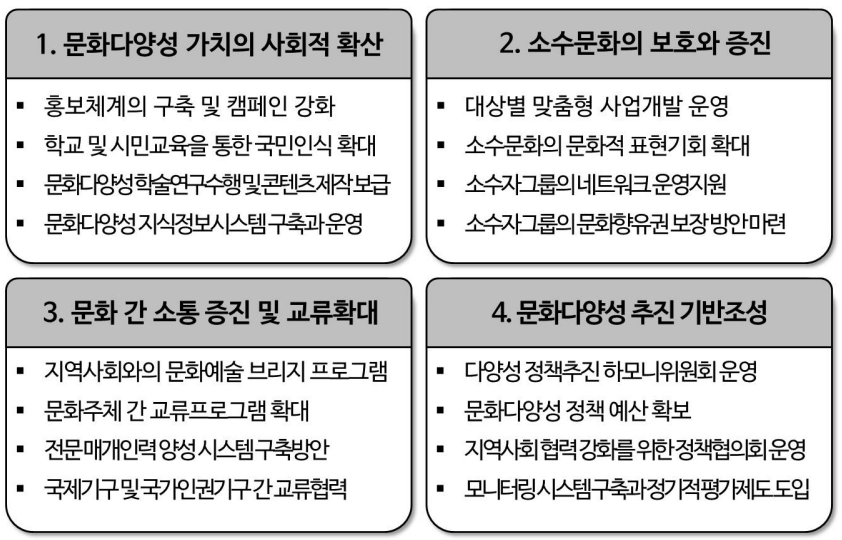

[그림 4-2]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1. 문화다양성 가치의 사회적 확산

가. 홍보체계의 구축 및 캠페인 강화

1) 과제배경

일부 미디어에 의해 '범죄자는 중국동포'라는 짤막한 타이틀이 반복적으로 보도되어, 사회의 선량한 다수 조선족에 대해 기피와 혐오감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미디어관련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다. 구체적 사례로 영화 '청년경찰', '황해', '공모자들', '신세계'는 조선족이 청부살해와 장기매매에 관련 되어있다는 조직폭력배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하였고, 범죄보도기사의 댓글에 다문화이주민 전체를 매도하는 글이 다수 오르기도 하였다. 다양한 소수집단에 대한 선입견 및 편견을 방지하기 위한 미디어의 다양성 보장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 세부내용

대중매체, 인터넷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및 행사를 추진하여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반이주민현상의 표출에 대항하여 이주민과 내국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공동체의 홍보활동을 후원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관행 감시를 위해 민관 모니터링 운영이 제안된다. 미디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상담센터 운영을 통하여 소수자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타문화 존중 및 문화다양성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캠페인 정책이 요구된다. 수집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이를 분석하고 다양성의 문제를 평가하여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문화다양성 미디어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방송, 미디어 및 문화예술 콘텐츠에서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송 및 미디어 관계자와 종사자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전문적인 문화다양성 교육이수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실과 다소 괴리되어 제작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특히, 소수집단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내재된 차별이나 편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관점을 견지토록 해야 한다.

미디어 콘텐츠의 획일화 및 주류 중심의 관점을 반영한 콘텐츠가 지닌 문제점이 시정되도록 하며, 다수자와 소수자의 경계를 허물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표 4-2〉 독일사례: 이주민을 위한 협의회

[주요사례] 이주민을 위한 협의회 ' (Rat für Migration)의 역할 (독일)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과 몰이해의 장벽을 허물고 이들이 지역사회구성원들과 연대감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음. 2012년부터 "통합 미디어봉사단"(Mediendienst Integration)은 미디어의 왜곡된 보도양상이 범죄를 과장하거나 범죄자의 국적만을 강조하여 전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사회 내 나쁜 평판의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 난민에 대한 올바른 언론보도를 위한 홍보봉사단으로 볼 수 있음

3) 기대효과

궁극적으로 사회적 소수단체의 이해와 관심을 반영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 할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 다양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됨으로 인해 방송 종사자들의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의식 신장을 도모할 수 있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문화다양성 정책의 홍보수단을 마련하여 미디어 다양성을 제고시킴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의견과 관점을 반영하는 방송을 제공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회구성원들 간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사회통합에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나. 학교 및 시민교육을 통한 국민인식 확대

1) 과제배경

문화다양성 정책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공공학교 및 지역기관에서 운영하는 시민교육제도 내 프로그램으로의 도입이 필요하다. 후속세대에게는 제도권 교육시스템 안에서 다양한 소수자그룹의 문화를 이해하는 다양성 교육 강좌를 운영하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는 함께 참여하여 건강한 공존을 이루는 다양성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해야 한다.

다양성 교육정책이 사회 내 단계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와 연계된 문화다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메뉴얼을 개발 보급하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성 교양프로그램의 보급이 요구된다.

〈표 4-3〉 문화다양성법 제13조

문화다양성법 제13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세부내용

학교교육의 체계적 운영 안이 마련되어 초·중·고 학교현장에서 성장단계별, 분야별 문화다양성 교육 운영체계와 교육과정 개발이 추진되어야 하며, 체계적 인식개선을 위해 문화예술기관 및 지역문화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공연,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시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반인 대상 맞춤형 문화다양성 교육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 교육가이드 라인이 마련되어야한다.

지역별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해 의제 발굴을 위한 포럼 운영 및 교육기

관과의 업무협약 체결확대 등 내실화를 기하고, 분야별로 교육효과 평가를 위한 체계가 도입되도록 해야 한다.

□ 온라인 문화다양성이해 교육센터 구축

일반국민 대상 문화다양성 증진교육 및 소통기회 마련을 통해 사회전반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편이성 및 대상자 확대가 기대된다.

학습내용과 관련된 활동영역에 소수자단체의 관점을 포함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문화다양성 교육 평가, 문화적 역량을 갖춘 교사, 학습 자료제공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제작 및 진행과정에 소수자단체 소속인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시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기대효과

문화다양성 교육은 소수집단에 포함된 사람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고착화되어선 안 되며, 일반시민에게 그 가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소수자를 위한 특화된 교육구성이 아니라,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정책사업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생활하고 학습하는 제도 안에서 소수자에 대한 조기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 교육은 학교의 교육 과제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학교를 넘어 사회적 통합과제로서 온라인을 통한 교육도 필요하다. 문화다양성 교육의 틀 속에서 상호문화교육은 다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신장시켜야 할 기본적인 교육목표로서 간주되어야 하며, 세계화된 사회에서 요청되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볼 수 있다.

다. 문화다양성 학술연구수행 및 콘텐츠 제작 보급

1) 과제배경

다양한 소수집단이 정책적 지원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각적인 학술연구 및 강의나 토론 등을 통하여 정책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시민적 합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소수자문화의 이해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소수문화 관련 서적을 제작 배포하는 것이 권장되어야한다.

2) 세부내용

지역별로 핵심 거점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학문적 연구와 다양성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무지개다리 사업과 같은 문화다양성 사업 진행시 전문가단을 참여시키는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성화된 다양성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소수자 분야별 전문교재 및 교육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적 콘텐츠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요선진국의 문화다양성 교육 정보수집 및 부합되는 우수사례의 교육콘텐츠 등에 대한 국내 도입이 요구된다.

3) 기대효과

전문학술연구를 추진함으로써 현재 실행되고 있는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보완해 주고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실효적인 정책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문화다양성 지식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1) 과제배경

다양한 소수자그룹과 관련된 문화다양성 정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지식정보시스템 운영이 요구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 문화다양성 아카이브는 다원 문화예술, 커뮤니티 문화예술, 다국적 문화예술과 디아스포라 영화의 4개 범주로 구성되어있기에, 향후 문화다양성 데이터베이스의 수집대상 확대 및 기존 개별운영 사이트의 폭넓은 연계가 요구된다.

2) 세부내용

문화다양성 관련 정보 및 소수자문화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축적,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대상영역으로는 주류문화영역에 속하지 않는 다문화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외국인노동자,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지역전통문화, 비주류 문화예술인 등 문화콘텐츠 자료의 확대 구축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폭넓은 소수자 스펙트럼을 포함한 문화다양성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교류와 소통을 통해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대효과

보다 다양한 소수문화 프로그램 및 주요사업 성과를 접하는 DB시스템의 구축은 상호문화교류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카이빙 사업은 일반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소수문화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와 상호문화교류의 추진은 소수자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사회의 공감대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수문화의 보호와 증진

가. 대상별 맞춤형 사업개발 운영

1) 과제배경

사회적 소수자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분산되어 있는 사업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정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 지표는 초기에는 다문화지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로 다문화이주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개발되었으나, 2015년 문화다양성 지표조사를 통해 그 범위가 확대되어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 청소년, 다원예술인 등 한국사회의 사회적 소수자의 일상적인 삶과 문화예술적 삶의 만족도와 인지도에 대한 조사 및 평가 분석이 이루어졌다.

현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선행된 평가지표의 보완이 요구되기에, 정책대상의 개선을 통해서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고자 한다.

2) 세부내용

문화다양성 정책은 사회구성원들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소수자 집단별 현황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5년 문화다양성 지표의 조사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2014)에서 발행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11개 소수자 집단을 준용해 이들을 3그룹으로 구분하여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소수자**그룹으로 다문화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을, **하위문화** 그룹으로 청소년, 노인, 전통문화, 지방문화를, **비주류문화예술** 그룹으로 독립문화예술과 대안문화예술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2017년 본 연구서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요범위는 **일차적 기본범주**로 민족, 국적, 성별, 신체능력(장애), 성적 지향, 세대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구분하였고, **환경적 범주로** 종교, 혼인, 소득, 전통, 지역, 예술취향에 따른 문화적 갈등으로 구분하여 문화다양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5년

구분	분류영역
소수자	다문화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하위문화	청소년
	노인
	전통문화
	지방문화
비주류 문화예술	독립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

2017년

구분	분류영역
기본 영역 (1차적 범주)	민족
	국적
	성별
	장애문화
	성적지향
	세대
환경 영역 (2차적 범주)	종교
	소득
	혼인
	전통
	지역
	예술취향

[그림 4-3] 문화다양성 정책대상 분류체계 개선(안)

3) 기대효과

문화다양성 정책은 한국 정책의 효과와 수준을 국제사회와 비교 진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야 하며, 대상의 범위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범주에 따라 2017년 문화다양성 정책대상 범주의 개선을 시도하였으며, 향후 정책집행에 있어서도 소수자 그룹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회변화의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나. 소수문화의 문화적 표현기회 확대

1) 과제배경

사회 내 다양한 소수자들이 사회주체로 역량을 갖추고 문화 활동의

자생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일괄적인 지원정책의 비효율적 결과를 지양하고, 소수자의 특성 구분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책지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세부내용

소수자단체의 자생력 강화 및 기반구축을 위해 이들에 대한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단체 관리, 프로그램 기획 운영 노하우 전수, 단체 활동 참여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과 성장할 수 있는 동력원이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소수자단체의 성공모델을 육성하고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및 지원체계의 구축이 모색되어야 한다.

소수자 단체 활동이 다양한 사회영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등록체계 구축 및 협회구성 등의 지원체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체 활동의 선결요건으로 문화교류를 위한 거점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며, 소수자 단체들의 사회활동 관련 TV,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및 행사추진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3) 기대효과

소수자 지원정책은 이들의 사회적 참여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자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능동적인 주체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소수자그룹의 네트워크 운영지원

1) 과제배경

소수자의 문화권 증진과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네트워크 결속이 필요하다. 지역별 소수자단체가 참여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단체 간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고

소수자단체의 정책 지원을 효율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세부내용

문화다양성정책은 개별 대상 집단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유사한 프로그램들 간에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문화다양성정책은 어느 정책영역보다도 통합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공간 내 소수자단체를 위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소수자 집단별 커뮤니티의 현황을 조사하여 커뮤니티 맵 제작 및 네트워크 형성이 추진되어야 한다.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문화정책의 시행과정에서 개입하고 있지만 조정되지 못하고 있어, 권역별 소수문화주체들 간의 연계활동을 통해 협력체계구축이 강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른 지자체 커뮤니티와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 간 네트워크를 형성 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3) 기대효과

네트워크를 통한 조정 및 협의기능은 문화프로그램의 중복지원을 점검하고 유사프로그램의 통폐합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적,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사업의 유용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라. 소수자그룹의 문화향유권 보장 방안 마련

1) 과제배경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소수자에 대한 소외와 구성원 간 갈등이 여성혐오에 따른 살인사건, 성소수자 축제 반대시위, 조선족 기피와 혐오감 확대 등과 같은 혐오범죄로 연결되는 등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소수와 다수, 주류와 비주류간의 문화적 차이가

사회갈등 심화에 따른 정책적 처방이 시급함에도 불구,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수문화 사업 지원에 최소한의 예산을 배정하는 쿼터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세부내용

부처 및 지자체 예산의 일정비율을 소수자 대상 지원사업과 문화다양성 인식제고 사업에 투입하는 최소 향유권 도입이 필요하다.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룰 대상으로 하거나 관련 사업 등에 배정되는 예산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소수자 혹은 소수문화의 범주 안에 부처 및 지자체별 환경과 현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3) 기대효과

차별관행으로 경시되었던 소수자의 사회문화적 권리를 일정부분 보호함으로써 소수자의 잠재력과 역량실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며, 지나친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 집중을 방지하고 소수자의 문화권 보호 및 증진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3. 문화 간 소통 증진 및 교류 확대

가. 지역사회와의 문화예술 브리지 프로그램 개발

1) 과제배경

일반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독립적 문화예술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며,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후원해

야 한다. 비주류문화가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동등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정책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건강한 문화다양성의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의 창조력과 향유권리를 위한 문화정책을 지향해야한다.

2) 세부내용

커뮤니티 간 상호교류 시도 및 비주류예술가들에 대한 활동지원이 요구된다. 기존 문화예술장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독립문화예술(음악, 영화, 미술 등), 다원문화예술(거리예술, 융합예술 등), 커뮤니티 문화예술(예술문화공동체, 공유문화, 메이커 문화 등), 다국적문화예술(공연, 축제, 공간, 음식 등) 비주류 예술가들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비주류 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다양성 증진과 관련하여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시장논리에서 벗어난 대안예술의 전시, 공연 등의 기회 제공 및 활성화 지원이 요구된다.

3) 기대효과

사업시행에 있어 사회적 소수자와 일반시민을 구분지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더 차별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춘 주체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브리지 프로그램은 문화교차환경을 만드는 정책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문화주체 간 교류프로그램 확대

1) 과제배경

사회 내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기회는 많지 않으며, 소수자의 전형화된 선입견은 미디어를 통한 한정된 모습이다. 과거보다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양한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깊이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소수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교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보다 지원되어야 한다.

2) 세부내용

소수자와 일반 시민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역 문화공간시설 내 다양한 소수자를 위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직접적인 경험이 어려운 경우, 소수문화를 담은 미디어의 콘텐츠 제작은 시민들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바꿔나가는 커다란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들의 진솔한 모습을 담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회를 높여야 한다.

지역문화행사 진행 시 다문화사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낯선 문화에 대한 시각적인 전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문화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소수자가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

3) 기대효과

다수자와 소수자가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고,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간 접근성이 용이해져 다양성 이해증진을 위해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다. 전문 매개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방안

1) 과제배경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 전반의 교육 매개인력을 통해 문화다양성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문화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다양성 증진 및 확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적자원 확보 및 관리가 요구된다.

특정대상별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문화다양성 개념이 실효성 있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4-4〉 문화다양성법 제14조

문화다양성법 제14조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세부내용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크게 4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① 기존 인력에 대한 다양성 교육을 통한 활동가 양성

기존 다문화사업 관련 인력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정책 교육연수를 통해서 양성과정을 거친 후, 다양성 사업에 전문 활동가로 투입하여 가치확산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주요한 대상자로 중앙 정부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정부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의 담당인력, 초중고 교직원, 기관종사자, 단체 활동가, 강의인력, 상담인력, 현장지원인력 등이다. 매개인력교육 개발과 운영에서 전담기관과 민간 교육기관 간의 교육 협업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공무원, 교직원 등 공공분야 인력의 문화다양성 이해도를 증진시킴으로써 문화다양성 사업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② 교육콘텐츠의 개발과 전달, 확산

일반시민 및 초·중고 학생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커리큘럼, 콘텐츠 개발 및 교재지침서 제작 보급을 우선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 교재, 교구와 같은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인력에게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이는 빠른 시일 안에 광범위한 인원에게 다양성 교육이 가능하여 사회 내 문화다양성 정책을 확산시킬 수 있으나, 현재까지 문화다양성 콘텐츠 개발 부족으로 다양성의 콘텐츠 내용 전달에만 집중할 수 있고, 다양성 인식확산교육 연수기간이 상당기간 늘어날 수 있다.

③ 각 하위분야의 전문 인력 활용시스템

소수자와 관련하여 인권, 양성평등, 이주민, 노동자, 장애인, 비주류 예술인과 같은 다양성 전문영역에서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존 인력을 문화다양성 교육시스템에 합류시켜 문화다양성 역량을 제고시키는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이룰 수 있다. 각 영역별 기존 문화예술전문가들로 매개인력풀을 확보하여 다양성 정책 네트워크를 만드는 하나의 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각각의 세부분야를 하나의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조합할 수 총괄기획전문가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④ 신규 문화다양성 전문가의 양성

기존 인력과는 별도로 전문 인력들을 새로 선발하여 문화다양성 교육 및 프로그램 전문가로 신규 양성하는 것을 기획할 수 있다. 아울러 문화다양성 매개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를 위한 맞춤형 전문과정을 개설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

3) 기대효과

정책추진 주체의 문화다양성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교육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문화다양성 가치의 효율적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라. 국제기구 및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1) 과제배경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은 개별국가들이 자국 내 다양한 문화지형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문화를 유지함으로써 갈등해소와 평화의 기반을 삼고자 한다. 개별국가 안에서 혹은 국가들 사이에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타문화 수용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문

화정책의 과제로 설정하는 것이다.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은 국제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문화다양성 기류에 어떻게 대응해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이에 따른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4-5〉 문화다양성법 제10조

문화다양성법 제10조(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정부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제9조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유네스코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세부내용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국제협약과 국내법규 이행과의 적합성을 검토하며, 협약이행 관련 선진국의 모니터링 기법 및 모범사례 등에 대한 경험공유와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국제문화교류는 정부차원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가 필요하다. 민간차원에서 국제문화교류를 담당하는 단체 간 협력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협력네트워크를 권장하고 이들이 서로 국제교류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예술활동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소수자 및 비주류 예술문화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대효과

국제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발전시킨 주요선진국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사업을 도입하여 소수자 정책의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소수자 문화예술단체의 문화적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장받음으로써 국내 소수자단체의 사회적 지위를 제고시킬 수 있다.

4. 문화다양성 추진 기반조성

가. 다양성 정책추진 하모니위원회 구성과 협력체계 구축

1) 과제배경

정부 내 총리실 산하 '문화다양성 하모니위원회' 설치 같은 정책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성정책에 대해 부처별로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유사 중복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각 부처는 담당 소수자에 국한된 지원 사업만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부처별 사업이 중복돼 예산집행의 효율이 저하되거나, 부처 간 협력 및 정책 간 연계가 부족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4-6〉 문화다양성법 제7조

문화다양성법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둔다"

2) 세부내용

현재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 어디에도 정책 총괄기구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정책 집행에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문화다양성 정책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련 핵심 정책을 역점 추진하되 관계 부처·기관, 관련 기본계획과 협력하여 시너지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하모니(타워)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다양성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추진전반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플랜: 위원장 1인(국무총리), 중앙부처 10인(기재부, 문

체부, 행자부, 외교부, 법무부, 농림부,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교육부), 전문가 2인을 위촉한다.

문화다양성 위원회 주요업무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본계획 이행 평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차보고서 작성, 관계부처 간 협조 및 업무 조정, 국가 간 협력 사항을 들 수 있다. 위원회의 활동은 부처에서 추진하고 정책 및 사업 중 문화다양성 증진과 상관성이 높은 사업을 연계하여 정책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정책 실효성과 환류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서 종합운영실을 통한 정책 매개전달자 역할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지자체별 문화다양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협업을 도모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 4-7〉 문화다양성 하모니타워의 협력체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중앙 타부처 사업	지자체의 정책사업
• 문화예술위 무지개사업 • 소수문화 영향력 증대사업 • 국제교류협력 사업 外	• 교육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 산하공공기관 사업 外	• 광역자치단체 사업 • 기초지자체 관련 사업 • 기타 사업프로그램 外
▼	▼	▼
문화다양성 위원회의 명확한 정책과제 제시 및 심의 조정기능 수행		

3) 기대효과

소수자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관련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사회적 응집력을 형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통합정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가와 시민, 소수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을 해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다각도의 파트너십은 정책의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문화다양성 정책 예산 확보

1) 과제배경

정부가 추진하는 2016년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예산에서 드러나듯이, 정책의 중요성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관련 정책 사업의 추가확충과 예산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전체 예산규모 대비 10.4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기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문화다양성 정책예산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가족부 6.99%, 교육부 0.03%, 법무부 0.01%, 농림축산식품부 0.003%, 고용노동부 0.003%, 보건복지부 0.0006%, 외교부 0.018%, 행정안전부 0.004%, 통일부 0.012%, 방송통신위원회는 1.52%로 각 부처의 전체 예산규모 대비 문화다양성 관련 예산은 아주 적은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 중 문화다양성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0.76%, 인천광역시 0.68%, 부산광역시 0.53%, 충청북도 0.40% 순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다양성 정책 예산이 전체예산규모대비 1% 이하로 나타난다.

2) 세부내용

각 부처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구체적 규모를 산출한 뒤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각 부처별로 문화다양성 정책예산우선 확보체계를 구축해야하며, 문화다양성 관련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와 타 부처와의 사업별 예산을 분담하기 위한 계획안을 수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중복 사업 방지를 위한 부처 간 협업 TF를 구축하고 부처별로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대상 또는 사업 중복 추진에 대한 정책 검토 및 신규 정책 추진에 대한 부처 간의 협의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기대효과

장기적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확보는 중요하다.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대상에 대한 예산 편성 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재원구조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1) 과제배경

문화다양성은 지역의 인구구성, 시민의식, 시정 우선순위 등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따라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며, 성공적인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해서 현장에서의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의지와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앙(문체부 장관, 문화다양성위원장 등)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정례화 하여 자치단체별 특수한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 구성·운영을 제안한다.

2) 세부내용

문화다양성 인식 확대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별 관련 사업추진 현안 및 애로사항, 관계 부처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협의회에서는 자치단체별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주민,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성소수자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와 관련된 사업 현황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더불어 중앙과 지자체간의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참여 자치단체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과 소수자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단위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정책관련 담당부서 간 정보공유 및 연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소수자 그룹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듯이, 공공부

문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민간부문의 비중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역할 강화와 기업체의 참여 확대 등이 보다 요구된다.

3) 기대효과

국외사례의 경우 민간단체가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역할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비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설계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하여 중앙 중심의 일방적 정책 결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정기적 평가제도 도입

1) 과제배경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활용하고자 한다. 문화다양성 평가 결과는 국민의 문화다양성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2014년 문체부에서 실시한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연구”가 있지만, 조사표본수가 부족하고 지자체의 자료구축수준이 저조하여 향후 지속적 수정보완이 요구된다.

〈표 4-8〉 문화다양성법 제8조

문화다양성법 제8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세부내용

국내 일반국민과 문화소외계층 대상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인식수준을 분석하여 문화다양성 정책 성과평가가 체계화되어야 한다. 문화다양성 현황을 식별하고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소수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진단하기 위한 측정항목 설계 및 사회변화에 따른 주기적인 지표수정·보완이 요구된다.

평가항목에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사회적 소수문화와 비주류문화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일반 수용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소수자문화의 문화향유활동이나 창조활동에 관한 성과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문화다양성 정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3) 기대효과

문화다양성 정책은 실천적인 사업보다는 문화정책 목표로서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왔기에, 실증적인 진단을 기초로 하여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및 범위를 재정립하고, 문화다양성 정책의 대상을 분명히 설정한 정책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문화다양성 관련 제반 사항을 통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재까지 수행된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 설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결론

본 연구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이후 국내 정책의 방향과 문화다양성 상황, 사업의 성격에 대해 조사하였다. 향후 보다나은 문화간 이질감 해소와 문화통합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20세기 중반이후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성장과 더불어 인권 및 다양성 표현에 대한 시민적 욕구가 분출하고 사회내부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소수자들의 문제가 점차 이슈화되었다. 일부는 이들에 대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왔으나 국가의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함께 있어서 수용과 배제가 공존하는 특징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문화다양성의 현황을 통해 관련 정책사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되는지를 고찰하면서, 문화다양성의 정책실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1) 다문화와 문화다양성 간 정책영역 및 문제점 고찰

1990년대 중반이후 아시아지역 국외이민 노동자들의 국가 이동이 증가하면서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외국인 노동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등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이 시작되었고 올림픽 개최와 중국과의 국교수립 등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또한 증가하였다. 2000년대 이후 국내 외국인 입국자는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주유형도 매우 다양화되고 복잡해졌다. 2006년 우리 정부는 한국의 다문화사회 전환을 선언하면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 '혼혈인 및 이주자 지원 방안',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발표하였다. 그 후 1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다문화, 다문화주의, 문화다양성 정책의 개념조차 합의되지 못한 채 우리 사회 내 다양한 소수자들과의 조화로운 공존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진입 초기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과 같은 소수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되었는데 이들과 관련된 출입국관리, 외국인 인력관리 및 이주가정의 안정적 정착차원에서 다문화정책으로 규정되고, 새로운 다양한 사회가치들에 대

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정책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후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다문화정책이 문화다양성 정책으로 전이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사회 내 주류와 비주류 사이에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2) 현장분석을 통한 문화다양성 정책실효성 강화 마련

2005년부터 한국사회의 동화에 초점을 맞춘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착이 시작되었다. 2010년 문화다양성 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된 후 2012년 문화다양성 정책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우리사회 내 다양한 소수자들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의 실현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인종과 민족 같은 다른 배경을 가진 소수집단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비로소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문화다양성 사업현장에서 파악된 정책사업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과 세부사업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현장분석에서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을 발전시키고 정책적 지향점을 찾는 데 있어 문체부의 무지개다리 사업은 기여한 바가 크다. 따라서 관련 사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앞으로 나아가야할 다양성 정책 방향을 살펴보았다. 주류 비주류의 이분법적 개념을 바탕으로 소수민의 활동 방안을 증대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 존중과 협력을 도모하는 질 높은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인식전환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3) 정책의 안정적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향후 방향성 모색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내재되어있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편견과 배타

적 태도를 돌아보고 우리와 다소 다른 이들의 문화고유성을 인정하고 이를 사회 내 풍부한 문화적 자산으로 존중하기 위한 기존 인식의 틀을 확장하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다양성 범주 확장의 필요성은 출신국가, 인종, 민족으로부터 문화적 갈등만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지역 간, 세대 간, 성별 간, 종교 간, 예술의 갈등 등 소위 다수자와는 다른 배경을 가진 소수집단에 대한 배타성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소수자 중심의 수혜정책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인식확산 및 정책가치의 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은 문화적 경계선을 지니고 있으며 불안정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은 우리 사회 내 공존하는 내적인 관계임에도 다른 문화권에 있는 외적인 관계처럼 살고 있다. 이들에게 주류사회의 강요된 양식과 자신들의 정체성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택할 것이냐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들과의 평화로운 문화공존을 위해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차이를 직시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열린 문화다양성 정책을 통해서 문화적 간극과 정서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제안코자 한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7), 「201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분석」

곽원섭(2007), “이주민 통합 전략의 국가 간 다양성 비교-프랑스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0-22.

국가인권위원회, 「2016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김규원(201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김다원(2010), “사회과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문화다양성’수업내용구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2)

김 면(2016), 『한국 속 타인, 타국 속 한인: 포스트 디아스포라시대 민속학 패러다임의 변화』, 서강대출판부

김면(2016), ‘독일문화예술정책’, 『주요국 문화예술정책 최근 동향과 행정체계 분석연구: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최보연 외)

김정규(2016), “외국인, 이주자,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포섭과 배제”, 『사회이론』 봄/여름

김현경(2016), ‘프랑스문화예술정책’, 『주요국 문화예술정책 최근 동향과 행정체계 분석연구: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최보연 외)

김현민(2008),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26

김현숙(2017), 한국의 다문화공존인가? 배제인가?, 문화예술지식DB 문화돋보기 49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효정(2012),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정책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정아(2014),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류정아(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13), 『문화다양성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14),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책임: 류정아)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분석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책임: 노영순)

박단(2006), "2005년 프랑스 '소요사태'와 무슬림 이민자 통합문제", 『프랑스사연구』 1호, 한국프랑스사학회

박선희(2009),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과 프랑스의 전략", 『한국정치학회보』 43(3)

박진경(2012), "다문화주의와 거버넌스 사회통합 전략 - 캐나다 경험과 한국적 모형 모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6권 1호, 한국정책과학학회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2004), 『상상의 공동체』, 나남

사회조사센터(2016),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설규주(2012),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의 방향", 『제1회 문화다양성 교육 심포지움: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향과 가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세계경제포럼(WEF)(2016), 「세계 성격차지수(GGI) 보고서」

신정완(2016), "스웨덴 거주 이주민의 사회적 배제의 실태와 원인", 『산업노동연구』 20권 2호, 한국산업노동학회

양영자(2007), "분단·다문화시대 교육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양립 가능성 모색", 『교육과정연구』 25(3)

오재호(2015), "다문화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이슈&진단』 No.209

오정은(2012), "유럽의 상호문화정책 연구", 『다문화와 평화』, 6(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06), 『2006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포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10), 『유네스코세계보고서: 문화다양성과 문화 간 대화』, 집문당

윤소영(2010), 『문화기반시설 다문화프로그램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인진(2016), "다문화 소수자에 대한 국민인식의 지형과 변화", 『디아스포라연구』

제10권 제1호, p.144,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이동성, 주재홍(2012), “문화다양성 교육추진을 위한 개념과 방향”, 『제2회 문화다양성 교육심포지엄: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향과 가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동연(2013),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이산호(2009), “프랑스의 사회통합정책과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프랑스문화예술연구』, 프랑스문화예술학회 제28집
이현아(2013), “다문화시대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방향에 대한 일고찰 – 네덜란드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인간·환경·미래』 제10권
임학순 외(2013),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시범사업 컨설팅 및 평가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임현묵(2015), “유네스코는 왜 문화다양성과 생물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할까?”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편, 『모두를 위한 국제이해교육』, 서울: 살림터
장석인·김광수·Le Quang Canh·Le Doan Hoai, “서유럽 국가의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영국·프랑스·독일·스웨덴을 중심으로”, 『경영컨설팅』 제4권 제2호, KNU기업경영연구소
전경옥 외(2013),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전영평 외, 한국의 소수자 정책 담론과 사례, 서울대출판문화원
조옥라 외(2013),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전략수립 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조현성(2011), 「이주민 모국문화를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의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차용호(2015),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추미경 외(2015), 『2014년도 문화다양성 연수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계청(2015), 「2015 사회조사결과」
통일연구원(2006), 「2005 독일통일백서」

한건수(2015), “한국사회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과제”『국제이해교육연구』10(2)

한건수 외(2015),「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건수·한경구(2011),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문화다양성과 국제이해교육으로”『국제이해교육연구』6(1)

한건수·김다원·천경효·박애경 (2015),『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큘럼 개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문화다양성 교육의 방향과 가치, 제2회 문화다양성 교육심포지엄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문화다양성교육매뉴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개발을 위한 지침서, 요약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7),「한 눈에 보는 2017 장애인통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청소년의 세대문제인식 실태조사」

한준(2014), “우리나라 문화다양성의 현주소”,『문화다양성 공유공감 포럼집』, 한국예술교육진흥원

행정안전부(2017),「2017 행정자치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정보통계담당관실

홍기원(2006),『한국다문화사회의 특성과 사회적 갈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Banks, J.A.(2006), *Cultural diversity and education: Foundations, curriculum, and teaching(5th ed)*, Boston

Bissondath, Neil(1994), *Selling Illusions: The Cult of Multiculturalism in Canada,* Penguin

CIC(2011),『Departmental Performane Report 2009-2010』

De Beukelaer, Christiaan and Miikka Pyykk nen(2015), “Introduction: UNESCO's "Diversity Convention " - Ten Years on”, *Globalization, Culture, and Development: The UNESCO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Christiaan De Beukelaer, Miikka Pyykkönen and J. P.

Singh (eds.), London: Palgrave.

Dieter Kramer(1999), Kulturelle Vielfalt ist eine notwendige Struktur menschlicher Vergemeinschaftung, Osnabrücker Jahrbuch Frieden und Wissenschaft VI, p. 143.

Eisch, Katharina(2007), Interethnik und interkulturelle Forschung Methodische Zugangsweisen der Europäischen Ethnologie, *Methoden der Volkskunde.* Silke Göttisch u. Albrecht Lehmann(eds.)

Feagin, Joe R.(1984), *Racial and Ethnic Relations (2nd ed.),* Prentice –Hall.

Günter Wiegelmann(1991), Theoretische Konzepte der europäischen Ethnologie; Diskussionen um Regeln und Modelle, Münster

Hahn, C.L., & Alviar-Martin, T.(2009), International Political Socialization Research, in: L.S. Levstik & C.A. Tyson(eds.), *Handbook of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New York

Heitmeyer, Wilhelm(1996), Für türkische Jugendliche in Deutschland spielt der Islam eine wichtige Rolle, *Die Zeit, Online, Nr.35*

Jones, Rachel B(2011), "Intolerable Intolerance: Toxic Xenophobia and Pedagogy of Resistance", *The High School Journal, 95(1).*

Kaschuba, Wolfgang(2007), Ethnische Parallelgesellschaften?, Zur kulturellen Konstruktion des Fremden in der europ ischen Migration, *Zeitschrift für Volkskunde, Heft.1.*

Kymlick, Will(2012), Multiculturalism: Success, Failure and the Furture, Migration Policy Institute Europe.

Kramer, Dieter(1999), Kulturelle Vielfalt ist eine notwendige Struktur menschlicher Vergemeinschaftung, *Osnabrücker Jahrbuch Frieden und Wissenschaft VI.*

Obulgen, Nina(2006), "From Our Creative Diversity to the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Introduction to the Debat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 Making It Work,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2008),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에 이르기까지",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한국위원회

Schenk, Annemie(2001), Interethnische Forschung, *Grundriss der Volkskunde: Einführung in die Forschungsfelder der Europäischen Ethnologie,* Rolf W Brednich(eds.).

UNESCO(1998), *Final Report of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Cultural Policies for Development,* Stockholm, Sweden.

———(1998), *World Culture Report: Culture, Creativity, and Markets,* Paris: UNESCO.

———(2000), *World Culture Report: Cultural Diversity, Conflict, Pluralism,* Paris: UNESCO.

———(2009), *UNESCO World Report: Investing in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 Paris: UNESCO

*V*ertovec, Steven(1995), "Multiculturalism, Culturalism and Public Incorpor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19.*

Wiegelmann, Günter(1991), *Theoretische Konzepte der europäischen Ethnologie: Diskussionen um Regeln und Modelle,* Münster.

Wood, Phil(2009), *Intercultural Cities: Towards a Model for Intercultural Integration,* Council of Europe.

네덜란드 통계청(http://statline.cbs.n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

프랑스문화부(http://www.culture.gouv.fr)

Statistics Canada(http://www.statcan.gc.ca/)

WORLD VALUES SURVEY Wave 6(2010-2014)(www.worldvaluessurvey.org)

http://en.unesco.org/creativity/monitoring-reporting/periodic-reports / innovative-examples

경남일보(2017.02.08.), “민속놀이 원형 지키고 현대적 발전 꾀해야”
머니투데이(2016.01.04), “2020년 이민자 300만 시대 ‘이민’개념도 아직 없다”
제민일보(2015.05.18.), “천년 이어온 제주목축문화 전승 ‘우리 세대의 의무’”
한국일보(2017.05.03), “대선 토론회 ‘동성애’ 이슈 후폭풍”
한라일보(2014.09.18.), “제주 목축문화 소멸위기 보존 필요”

ABSTRACT

The Current State of Policy on Cultural Diversity and its further Development

Myun Kim

Korea has experienced the development of substantial minority communities since the 1990s. As a result, Korea's perception of itself has been changing rapidly in recent years. However, even if ethnic and cultural plurality have been a reality in Korea, the country has not come to terms with this fundamental change from its longstanding image of itself as a homogenous society.

Korea ratified the UNESCO Convention on Cultural Diversity Treaty in the National Assembly in 2010, and enacted the Act of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Cultural Diversity in 2014. Even through the Act has been promulgated for the purpose of social diversity and harmony, the basis for public policy regarding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are not yet fully developed. Especially, the perspectives on the cultural rights of the minorities are unsatisfactory.

This research analyzes and examines the status of multicultural policy with regard to political perspectives and examines the policies with the experts in the field, who promote cultural diversity. Based on this, this paper aims to mak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relevant systems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so that all members of society can facilitate social integration and establish their identity through the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the current stage, various cultures create conflicts and collide with

each other, and prejudice and misunderstanding of the multi-cultural policy might occur. The minority groups undergo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in our society. They live with us, but they live apart like strangers. We must not impose on them the cultural style and value of the mainstream society. Aiming for peaceful coexistence with minority groups, we need to recognize the cultural differences they have.

The core concepts of cultural diversity are coexistence, openness and interculturalism. Therefore, the perspective of treating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as seperate groups must be avoided and the inclusive subject of a cultural diverse society must be identified. And the support for programs promoting intercultural communication must be increased. Cultural diversity can be achieved through continuous cultural interchanges and the progress to protect as well as to raise the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rights of social minorities. So we need to establish a long-term policy system and various more extended support programs for their social integration.

부록

전문가 대상 설문지

문화다양성 정책 · 사업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검토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5.28. 제정)」에 의한 문화다양성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다음은 한국의 문화다양성 수준 및 관련 정책의 가치에 대한 의견조사입니다.

1.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① ---------- 낮다 ② ---------- 보통이다 ③ ---------- 높다 ④ ---------- 매우 높다 ⑤

2.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다 ① ---------- 낮다 ② ---------- 보통이다 ③ ---------- 높다 ④ ---------- 매우 높다 ⑤

3. 아래의 각 사항들이 문화다양성 정책의 역할과 얼마나 관련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문화다양성 정책이 역점을 두어야 할 궁극적 목표에 V 표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관련 없음 ——— 보통 ——— 매우 관련 있음					정책의 궁극적 목표 (1개 V표시)
1	소수문화 보호 및 역량 증진	①	②	③	④	⑤	
2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배제 극복	①	②	③	④	⑤	
3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 대응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적 약자의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5	미래 성장동력인 창의성과 다양성 확보	①	②	③	④	⑤	

4. 아래의 각 주체들이 문화다양성 정책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또한 문화다양성 정책이 주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집단 3개에 V 표시 해주십시오.

문항		매우 부적절함 ------- 보통 ------- 매우 적절함					가장 중요 (3개 V표시)
1	외국인 이주민	①	②	③	④	⑤	
2	북한이탈주민	①	②	③	④	⑤	
3	성소수자	①	②	③	④	⑤	
4	여성	①	②	③	④	⑤	
5	노인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7	지역문화관련 인력	①	②	③	④	⑤	
8	비주류예술인/예술단체	①	②	③	④	⑤	

5.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사회분열 및 갈등 증가
② 공공비용 부담 증가
③ 한국 고유문화 위협
④ 특정집단 지원에 따른 역차별 논란
⑤ 노력에 따른 업적주의 원칙 위배
⑥ 기타 ( )
⑦ 우려사항 없음

◆ 다음은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의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조사입니다.

6.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담당 공무원
② 중앙정부
③ 지자체 단체장
④ 언론미디어 매체
⑤ 시민사회단체
⑥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

7. 아래 문항들은 문화다양성 장애요인으로 자주 제기되는 이슈들입니다. 이 이슈들이 문화다양성 정책에 얼마나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슈 1개에 V 표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문제없음 ---- 보통 ---- 심각한 문제있음					가장심각 (1개V표시)
1	부처 간 사업 중복	①	②	③	④	⑤	
2	특정 소수자 위주의 편중된 사업 추진	①	②	③	④	⑤	
3	현 한국사회의 수용성 수준과 문화다양성 정책 간 간극	①	②	③	④	⑤	
4	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의 부정적 보도	①	②	③	④	⑤	
5	소수자 지원에 따른 역차별	①	②	③	④	⑤	

8. 현장에서 문화다양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장 의견 반영 미흡
② 특성 없는 사업기획
③ 예산 및 재원 부족
④ 단기간 내 사업성과 요구
⑤ 실무자의 전문성 부족
⑥ 사업 간 연계 및 기관 간 협조 부족
⑦ 기타 (　　)

9. 기존 다문화사업과 문화다양성 사업이 향후 어떤 관계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서로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
② 사업성격이 유사하므로 통합 필요
③ 관련성은 있지만 차이가 있기에 명확히 구분해서 추진
④ 부분적·선택적으로 상호유기적 추진
⑤ 기타 (　　)

◆ 다음은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조사입니다.

10. 향후 우리사회의 문화정책은 다음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쪽의 각 항목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항목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 둘 다 중요 ——〉 중요

1	전통문화 계승발전	①	②	③	④	⑤	외국문화의 수용
2	한국문화의 세계화	①	②	③	④	⑤	지역문화의 발전
3	고유문화의 계승	①	②	③	④	⑤	타문화의 이해
4	이주민의 한국사회 동화	①	②	③	④	⑤	소수공동체의 전통과 풍습 보존
5	정부주도 정책추진	①	②	③	④	⑤	민간주도 자율적 운영

11. 한국사회가 문화다양성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증진
② 소수자와 다수자 간 소통기회 확대
③ 소수자문화에 대한 인정과 수용 확산
④ 사회 내 인권증진과 평등의식의 함양
⑤ 기타 ( )

◆ 다음은 문화다양성 정책의 향후 발전과제에 대한 의견조사입니다.

12.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해 어떤 활동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해 증진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보급
② 학교 및 사회 차원의 문화다양성 교육
③ 문화다양성 거리 조성 및 다문화 축제 추진
④ 복합문화공간 및 시설 확충
⑤ 기타 ( )

13. 다음 중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가장 주력해야할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SNS와 포털시스템 소통 활성화
② TV, 라디오 등 통한 홍보캠페인
③ 문화적 편견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④ 소수자 미디어콘텐츠 제작 지원
⑤ 방송종사자 및 제작자의 책임의식 교육
⑥ 기타 ( )

14. 소수자의 사회적 영향력 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소수문화별 맞춤형 사업 확대
② 소수집단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③ 지역사회 내 소수자 기반시설 확충
④ 사업 쿼터제로 차별 없는 문화권 보장
⑤ 기타 ( )

15.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안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① 범부처 차원의 정책 총괄 기능 강화
② 중앙 및 지자체 내 전담부서 설치 운영
③ 중앙-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확립
④ 공공기관과 민간 협력체계 강화
⑤ 기타 ( )

16. 문화다양성 인프라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분야별 전문 매개인력 양성과 관리
②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센터 활용
③ 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의무화
④ 단위사업별 평가체제 및 지속적 모니터링 도입
⑤ 기타 ( )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련 공무원 및 사업 담당자 대상 설문지

문화다양성 정책 · 사업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검토

◆ 다음은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해당하는 정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문화다양성 정책은 타 문화정책이나 복지사업에 비해 더욱 본질적이고 시급한 분야이다.	5	4	3	2	1
2	정책적 노력으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없는 상생사회 구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5	4	3	2	1
3	현재의 문화다양성 정책은 기존의 다문화 정책과 분명히 구분되는 정책이다.	5	4	3	2	1

◆ 다음은 기존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해당하는 정도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각 사업 및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 정책목표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다.	5	4	3	2	1
	(응답이유:)					
5	각 사업에는 사업대상인 소수자의 상황과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5	4	3	2	1
	(응답이유:)					
6	특정 소수자에 대한 편중 없이 전반적으로 균형잡힌 정책이 추진되었다.	5	4	3	2	1
	(응답이유:)					
7	사업 추진조직과 담당자가 적절하게 구성 및 배치되었다.	5	4	3	2	1
	(응답이유:)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	사업 추진기관(혹은 조직) 간 충분한 연계·협력이 이루어졌다.	5	4	3	2	1
	(응답이유:)					
9	개별 사업끼리 긴밀하게 연계·추진되었다.	5	4	3	2	1
	(응답이유:)					
10	각각의 사업이 중장기 비전 아래 단계적·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	5	4	3	2	1
	(응답이유:)					
11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5	4	3	2	1
	(응답이유:)					
12	사업 추진 결과 소수자 집단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한층 증진되었다.	5	4	3	2	1
	(응답이유:)					
13	사업 추진 결과 소수자와 다수자 간 소통기회가 충분히 확대되었다.	5	4	3	2	1
	(응답이유:)					
14	사업 추진 결과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이 제고되었다.	5	4	3	2	1
	(응답이유:)					
15	사업 추진 결과 소수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충분히 증진되었다.	5	4	3	2	1
	(응답이유:)					
16	기존 정책·사업을 총평한다면 5점 만점에 ( ) 점 정도라고 생각한다.	5	4	3	2	1

◆ 다음은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17.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은 차별과 배제를 당한다고 생각되는 소수자가 누구입니까?

① 외국인이주민 ② 북한이탈주민 ③ 장애인 ④ 성소수자
⑤ 여성 ⑥ 노인 ⑦ 청소년 ⑧ 기타 ( )

18. 다음의 소수자들 중 기존의 문화다양성 사업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① 외국인이주민 ② 북한이탈주민 ③ 장애인 ④ 성소수자
⑤ 여성 ⑥ 노인 ⑦ 청소년 ⑧ 기타 ( )

19. 한국사회가 문화다양성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증진
② 소수자와 다수자 간 소통기회 확대
③ 소수자문화에 대한 인정과 수용 확산
④ 사회내 인권증진과 평등의식의 함양
⑤ 기타 ( )

20. 다음 중 기존의 문화다양성 사업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①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증진
② 소수자와 다수자 간 소통기회 확대
③ 소수자문화에 대한 인정과 수용 확산
④ 사회내 인권증진과 평등의식의 함양
⑤ 기타 ( )

21. 기존의 문화다양성 정책 및 사업이 지닌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① 사업의 내용　② 담당인력　③ 추진조직　④ 추진절차
⑤ 예산　⑥ 인프라　⑦기타 ( )

22. 위 21번에서 선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23. 향후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 )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

김　　면(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정 보 람(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한 건 수(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 준 호(경희대 지리학 석사)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발 행 인　김 정 만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17년 10월

발 행 일　2017년 10월

인 쇄 인　더크리홍보 주식회사

ISBN : 978-89-6035-678-8　93300